

20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9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6. 9. 7 (수요일), 14:00 ~ 20:5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최성락, 고혜령, 김권구, 김왕직, 류제헌,
심정보, 이재범, 한필원(이상 8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1	해남 전라우수영 사적 지정	(공 개)
2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건립	(공 개)
3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	(공 개)
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신라호텔 지하주차장 건립	(공 개)
5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내외 올림픽조각공원 경관조명 설치	(공 개)
6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내 사슴 사육시설 설치	(공 개)
7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8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 개)
9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및 삼각산 내 관리 시설물 설치	(공 개)
10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	(공 개)
11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청사관리원실 증축	(공 개)
12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앞 현수막 거치대 설치	(공 개)
13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내 편의시설 설치	(공 개)
14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내 LPG 시설물 및 배관망 설치	(공 개)
15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16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내 영은사 화장실 개축	(공 개)
17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내 관아 담장 및 출입시설 설치	(공 개)
18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퍼블릭골프장 조성	(공 개)
19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 남산 회현자락 산림구간 성곽 보존·정비	(공 개)
20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내 발굴조사지 임시 우회도로 개설	(공 개)
21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진입로 개선	(공 개)
22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저유소 오염토양 정화	(공 개)
23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공 개)

24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내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공 개)
25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내 금석문 이전	(공 개)
26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공 개)
27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농업용 관정 개발	(공 개)
28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발굴조사범위 수목 제거	(공 개)
29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토피어리 식재	(공 개)
30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학교 증축	(공 개)
31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 개)
32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강화역사박물관 야외 전시물 설치	(공 개)
33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 장어 양어장 부지 조성	(공 개)
34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 개)
35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허가사항 변경 허가)	(공 개)
36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 개)
37	사적 제534호 강원 영월부 관아 내외 경관조경 조성	(공 개)
38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내외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 개)
39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원 관로 설치	(공 개)
40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공 개)
41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 조정	(공 개)

【검토사항】

42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3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4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검토	(공 개)
45	파주 덕진산성 사적 지정 검토	(공 개)
46	사적 제124호 덕수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공 개)
47	사적 제124호 덕수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검토	(공 개)
48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관련 사항 검토	(공 개)

49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식생복원 및 구석기 체험 숲 조성 사업 검토	(공 개)
50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보호구역 내 탐방로 및 주차장 정비계획 검토	(공 개)
51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천마총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공 개)
52	사적 제204호 서울 의릉 내 옥외전주 철거 및 개선 공사 검토	(공 개)
53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복원 공사에 따른 주변정비 계획(안) 검토	(공 개)
54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내 옥녀봉성 일대 정비계획 검토	(공 개)
55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진해루 복원공사 검토	(공 개)
56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오류 논란 현관(보선당, 자선당, 융화당) 명칭 검토	(공 개)
57	사적 제123호 창경궁 내 화장실 건립 검토	(공 개)
58	사적 제124호 덕수궁 중명전 조경정비 공사 검토	(공 개)
59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내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 검토	(공 개)
60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사업 검토	(공 개)
【보고사항】		
6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공 개)
6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 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09-001

1. 해남 전라우수영 사적 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해남 전라우수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조선시대 중요 관방시설인 해남 전라우수영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가치 등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함.
- 2016년 사적분과 제7차 위원회(2016.7.13.)의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실시
 - 지정 예고일 : 2016.7.25. (문화재청 공고 제2016-224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간
 - 지정 예고면적 : 385필지 171,804㎡
(문화재구역 59필지 17,740㎡, 보호구역 326필지 154,064㎡)
 - 지정 예고결과 :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서의 지정가치에 대한 이견 없음.
다만, 지정구역 등 토지 매입요청 등 의견 3건 제출
(바-(3) 참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전라우수영성지(全羅右水營城址)/전남 기념물 제139호
(지정일 1992.3.9.)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산1661번지 외
- (3) 지정신청 명칭 :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
-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385필지 171,804㎡
 - 문화재구역 17,740㎡(59필지), 보호구역 154,064㎡(326필지)
 - 본성 : 151,349㎡{지정구역 15,563㎡(54필지), 보호구역 135,786㎡(256필지)}
 - 원문 : 20,455㎡{지정구역 2,177㎡(5필지), 보호구역 18,278㎡(70필지)}

(5) 관리단체(안) : 전라남도 해남군

(6) 신청사유

- 해남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의 결절점에 위치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조선 초기 세종대에 전라수영으로 출발하여 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되었으며, 정유재란 때에는 세계 해전사에 빛나는 명량대첩의 배후기지로 활용되었던 역사적인 유적임(이진진·어란진, 벽파·녹진, 울돌목 등)
-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강강술래의 발상지이며, 노동력의 주대상인 여성들의 노동요와 용줄다리기, 울돌목전설 등 공동체의식의 민속학적 가치가 잘 보존되고 있어 당시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할 수 있음
- 전라우수영은 조선시대 수군체제의 변화와 발전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관방시설로서 군제사, 성곽사 연구 등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라. 지정조사의견('15.07.14/문화재위원 ○○○, 목포대학교박물관연구원

○○○, 전문위원 ○○○)

(1) 문화재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입지현황>

- 전라우수영은 서해와 남해가 갈라지는 결점점(분기점)에 위치하고 있는 해로와 조운로상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음.
- 명량해협으로 부르고 있는 전라우수영 앞 바다는 진도 벽파진과 인근의 오류리 해안의 발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할 때, 고대부터 국제항로뿐만이 아니라 국내항로를 연결하는 해로상의 요충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조운로상의 길목에 해당하는 곳이었음.
- 또한 앞바다는 조류가 빠른 좁은 물목의 명량해협과 그 안쪽에는 양도(洋島)라는 섬이 울돌목의 거센 파도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전라우수영을 가려주는 기능을 함으로서 수군진으로서의 탁월한 방어성을 담보해주는 입지환경을 갖춘 곳임.
- 아울러 전라도 지역의 수군진들이 모두 갯벌 지형을 이루고 있어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선박의 운항과 정박하는데 영향을 받지만, 전라우수영은 갯바위로 되어있어 선박의 정박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

<역사문화환경>

- 문내면은 원래 백제 황술현에 속한 지역으로 통일신라 때는 양무군(강

진)에 딸린 황원현(백제 황술)의 땅이었으며 고려 때에는 영암에 속한 황원군의 땅이었는데 1448년(세종30)에 해남현의 땅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곳에 전라수영이 설치된 것은 1440년(세종22) 일임.

- 1432년(세종14) 대굴포에 있던 처치사영이 현재의 목포로 옮겨지고 목포에 있던 병선들이 황원의 주량(지금의 우수영)에 옮겨지면서 이곳에 목포만호를 두었음. 목포로 옮긴 대굴포수영은 다음해부터 점차 그 본영을 황원으로 이동시키는 가운데 1439년(세종21)에는 목포에 만호진을 개설하고 그 다음해에 본영을 완전히 주량으로 옮김.
- 주량의 전라수영이 우수영(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으로 된 것은 1479년(성종10)부터의 일로 전라도 서남해안의 방어구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취해진 조치로서 현재의 여수에 또 하나의 수영이 개설되어 좌수영이 되었음.
- 문내면의 이름이 처음 보이는 것은 우수영이 혁파된 1895년(고종32)이며 그 이전에는 황일면과 황이면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황일면과 황이면의 일부 지역을 묶어 문내면을 만들었음.
- 문내면이 되면서 같은 해에 해남현에서 해남군이 된 해남군에 편입되었음. 문내면 동리는 모두 34개 동·리였으며, 1914년의 군·면 폐합으로 장서리 방하리 일부를 합하여 12개 리로 개편 관할하기에 이르렀음.
- 문내면은 원래 백제 황술현에 속한 지역으로 통일신라 때는 양무군(강진)에 딸린 황원현에 속했으며, 고려시대에는 영암에 속한 황원군에 속했음. 1448년(세종30)에 해남현에 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1440년(세종22)에는 전라수영이 설치·운영되었고, 1479년(성종10) 지금의 여수에 전라좌수영이 설치되면서 주량의 전라수영이 우수영(전라우도수군절도사영)으로 개편되었음.
- 주요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이순신 장군 사당인 충무사, 명량대첩지인 울돌목 등의 유적지가 있으며 주요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보물 1, 중요무형문화재 1)와 도지정문화재 2개소(기념물 1, 무형문화재 1)가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전라도수군처치사영(全羅道水軍處置使營)은 고려말 전라도 옥구현(沃溝縣. 현 전북 군산)에 처음 설치된 뒤, 조선시대 전라도 무안현(務安縣, 현 전남 함평) 대굴포(大掘浦)와 목포(木浦)를 거쳐 1440년(세종 22)에 현재의 위치인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 황원곶으로 옮겨짐.
- 1465년(세조 11)에는 전라도수군절도사영(全羅道水軍節度使營)으로 명칭

이 바뀌었고, 1479년(성종 10) 전라도 순천부(順天府) 내례포(內禮浦, 현 전남 여수)에 전라좌도 수군절도사영(전라좌수영)이 설치되면서, 전라우도 수군절도사영(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되어 1895년까지 운영됨.

- 전라우수영의 영역은 남북 길이 10리, 동서 너비 5리의 크기였으며, 성벽은 둘레는 3,843척, 높이 11척 규모였음.
- 『전라우수영지』에 의하면 영내에는 민가 620호, 수군 병력 1,085명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함.
- 전라우수영은 바깥쪽은 돌로 쌓고 안쪽은 흙으로 다져 내탁식으로 쌓은 석성으로 평면형태는 배모양에 가까움.
- 임진왜란 때에는 전라우도 연해지역 14관을 관할하였을 만큼 군사적인 규모와 역할이 매우 컸으며,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 때는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장군이 명량대첩에서 승리를 거두는데 배후기지로 활용되었음.
- 능선과 평지를 아우르며 내탁식으로 축조한 전라우수영 성곽은 수군진성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동쪽에는 차단성인 원문(轅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였는데 조선시대 4개의 원문 가운데 현재는 전라우수영의 원문만 남아있어 희소가치가 큼.
- 또한, 십자형의 성내 도로망을 중심으로 객사와 동헌을 비롯한 다양한 관아 건물과 창고, 연못, 우물 등이 분포함.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 명칭(안) :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지정명칭 원칙에 따라 “지역명+본래의 명칭”이 가장 우선시 되는 명칭으로서 “해남 전라우수영(海南 全羅右水營)”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 사적 지정 신청은 385필지(우수영성지 310필지/원문 75필지) 면적:171,804㎡ (우수영성지151,349㎡/원문 20,455㎡)를 신청함.

※ 면적 : 171,804㎡{지정구역 17,740㎡(59필지), 보호구역 154,064㎡(326필지)}

- 전라우수영 본성 : 151,349㎡{지정구역 15,563㎡(54필지), 보호구역 135,786㎡(256필지)}

- 전라우수영 원문 : 20,455㎡{지정구역 2,177㎡(5필지), 보호구역 18,278㎡(70필지)}



전라우수영 및 명랑대첩비
문화재 지정 및 보호 구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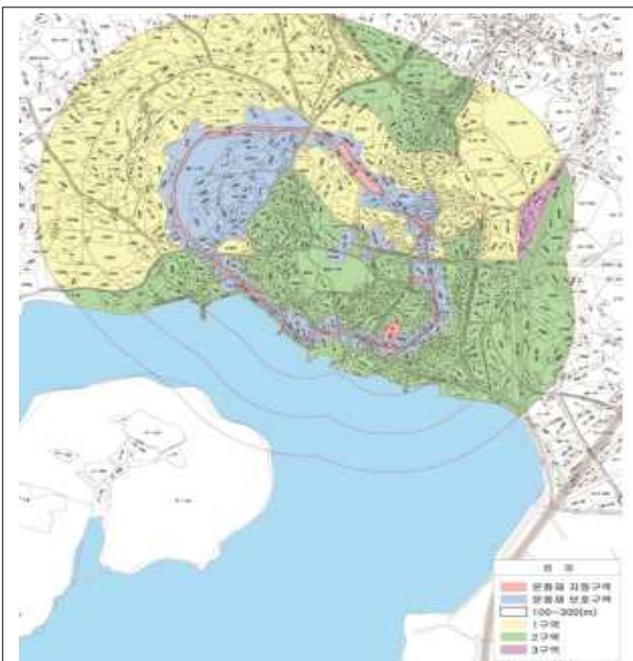


전라우수영 원문
문화재 지정 및 보호 구역(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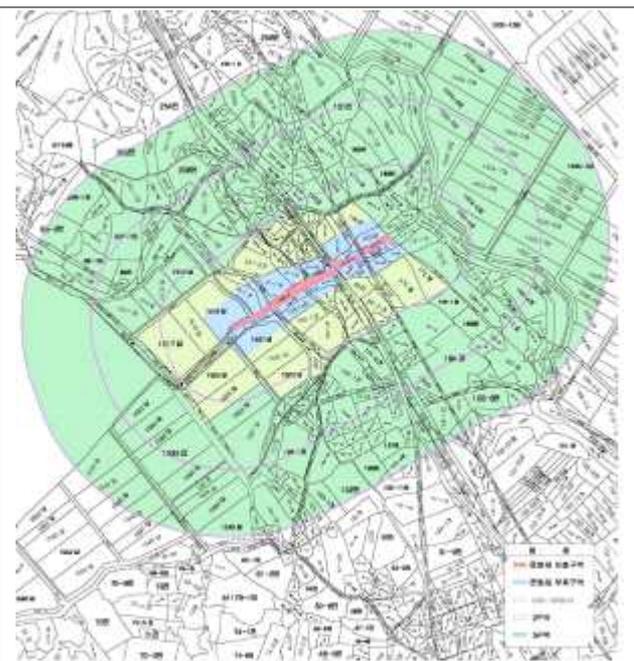
■ 검토의견: 지정·보호구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 검토의견 : 성곽 내부의 연접부는 성곽의 높이를 고려하여 1층으로 하되 경사지붕을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바다방향으로 지형을 고려하여 트인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곽의 배경이 되는 육지부는 경관 축에 속하지 않으므로 건축이 허용되며 현 마을과 문화재와의 공생을 고려한 허용기준이 작성될 필요가 있음.



전라우수영 및 명랑대첩비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전라우수영 원문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개별심의구역		
제2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7.5m(1층) 이하	
제3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2m(2층)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4)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해전사적으로 중요한 천혜의 요지
 - ▶ 전라우수영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잇는 해로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군사적 요충지임. 지형적으로 수군의 선박이 정박하는데 유리한 지형을 갖추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조운로가 지나는 길목에 해당함.
 - ▶ 전라우수영은 7년간 지속되어온 임진왜란을 종결(명량대첩)시킨 천혜의 전략적 요새임. 우수영과 울돌목(명량), 녹진, 벽파진이 연계가 가능하고, 또한 조류를 이용한 관방전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춘 곳으로 명량해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
 - ▶ 전라우수영은 여러 수군진성을 거느린 거진(巨鎭)임.
 - ▶ 수군진성의 육지공격 방어를 위한 차단성인 원문이 존재하고 있음. 고지도상에 원문이 잘 표현되어 있으며, 우수영성과 같은 축조수법으로 쌓은 내탁식의 석성지와 비석 등이 잔존하고 있음.
 - ▶ 조선시대 수군편제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유적지임.
 - 수군처치사영 → 수군절도사영 → 전라좌도 및 전라우도절도사영으로 분리·개편 → 폐영(칙령 제140호)
- 매장문화재의 분포 가능성이 높음
 - ▶ 1920년대에 작성된 지적도를 보면 동·서·남의 3문에 모두 옹성이 있고

성의 축조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음. 그 뒤 훼손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할지라도 땅 속에는 그대로 유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됨.

○ 풍수지리적 성곽 축성

- ▶ 북쪽 북악산, 서쪽 망해산, 동쪽 금산을 연결하는 선상으로 축성하였고, 남쪽 앞바다의 양도를 안산으로 하고 있음.
- ▶ 성곽의 평면형태가 전체적으로 배모양으로 수군진성과 어울리는 평면형태를 갖추고 있음.

○ 공동체의 민속학적 가치가 살아있는 현장

- ▶ 임진왜란과 관련하여 발생한 강강술래의 발상지임.
- ▶ 노동력의 주 대상인 여성들의 노동요가 전해지고 있음.
 - 우수영 부녀농요(길노래, 들노래, 도리깨노래, 방아타령, 등덩애타령)
- ▶ 농경생활을 뒷받침해주는 농경의례인 '용줄다리기'가 복원되어 전해지고 있음.
- ▶ 울돌목 전설과 명량대첩비 전설 등의 구비설화가 전해지고 있음.

○ 주변 역사문화관광자원

- ▶ 명량해전 및 수군진과 포구 등 관계된 유적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함.
 - 울돌목(명량), 양도, 녹진, 벽파진, 이진진성, 어란진성 등
- ▶ 충무공 이순신과 관계된 유적이 주변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연계하여 활용이 가능함.
 - 명량대첩비, 충무사 등
 - 충무공 이순신 백의종군 : 이진진→어란진→울돌목(명량대첩)→진도 망금관방성→벽파진
 - 군산 선유도(고군산군도)→목포 고하도→완도 고금도→순천(장도해전)→남해(노량해전)

(5)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학술조사계획

- 전라우수영의 보존, 정비,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계획 수립
- 전라우수영의 성격규명, 원형고증을 위한 학술조사계획

○ 전라우수영 정비

- 문화재 지정구역 및 보호구역 확대 지정 /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 관아 및 성곽 복원정비
 - 관아시설 고증·복원 / 성곽, 성문, 선소, 수구, 치, 여장(성문 주변) 등

고증·복원 / 통행로 정비

- 마을가로구조 회복
 - 우수영 내 十자형 가로망 회복/ 골목길 복원 / 보행자 전용도로 정비
 - 장시 복원 : 동문~남문 저자거리 조성(한옥상가거리)
- 민가 원형 회복(남도 해안가 민가 형식) / 한옥체험촌 조성
- 법정스님 생가 복원
- 남문 앞 경관 회복 후 축제 및 놀이공간 조성
 - 전라우수영 남문 앞 및 선소 등에 대한 경관 회복 후, 축제 시 다목적 축제공간으로 활용
 - 수문장 교대식, 선소 관람, 명량대첩 체험, 무형문화재 전수 및 시연, 각종 놀이 공연 마당으로 활용
 - 기존 전라우수영국민관광시설 및 명량대첩기념공원과 연계하여 활용방안 모색 : 울돌목(명량해협)과 연계하여 명량해전로 신설
- 지역주민 생활여건의 개선 및 문화재(민속)마을 조성
 - 성곽 내부지역은 문화재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옛 모습을 재현
 - 문화재(민속)마을 지정에 따른 제반보상 및 지원대책 강구
 - 마을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라우수영 외곽에 주차장 및 안내센터 조성
 - 전라우수영 경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도 18호선에서 전라우수영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주차장 건립
 - 종합안내센터 및 전라우수영전시관을 건립하여 전라우수영 및 전라우수영에 대한 소개와 안내
 - 전라우수영 내 외부차량 통행 제한 / 우회도로 신설(보차혼용도로)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7.4./문화재위원 ○○○, ○○○, ○○○, ○○○)

- 전라우수영은 세종 22년 현 장소로 이동되어 설치된 전라우영으로 성종 10년 전라우수영으로 개편되었으며, 고종 32년까지 존치된 수영성임. 역사적 가치가 높고 유적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므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 문화재구역은 1안(해안쪽 성곽 포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원문과 성벽구역을 문화재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1	서상리	109-1	잡	4,496	4,496							-	-	-
2		381-1	대	135	135							-	-	-
3	"	381-2	대	82	82							-	-	-
4	"	381-3	대	510	510							-	-	-
5	"	407-1	대	1,329	1,329							-	-	-
6	"	407-6	대	113	113							-	-	-
7	"	407-7	대	17	17							-	-	-
8	동외리	955-1	잡	142	142							-	-	-
9	"	945-1	잡	3,792	3,792							-	-	-
10	"	955-8	잡	110	110							-	-	-
11	"	956	대	338	338							189.9	지상 1층	근린생활 시설 외 1용도
12	"	1166-2	도	7	7							-	-	-
13	"	1167-4	잡	20	20							-	-	-
14	"	1167-5	잡	96	96							-	-	-
15	"	1167-6	잡	221	221							-	-	-
16	"	1194-1	사	155	155							-	-	-
17	선두리	433	대	387	387							93.1	지상 1층	단독주택
18	"	436-2	대	30	30							-	-	-
19	"	436-3	대	96	96							-	-	-
20	"	436-4	대	50	50							-	-	-
21	"	436-5	대	76	76							-	-	-
22	"	436-7	대	56	56							28.4	지상	단독주택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1층	
23		436-8	대	17	17							-	-	-
24	"	436-9	대	60	60							-	-	-
25	"	436-11	대	169	169							-	-	-
26	"	436-13	대	86	86							-	-	-
27	"	436-14	대	84	84							-	-	-
28	"	436-15	대	50	50							-	-	-
29	"	436-16	대	20	20							-	-	-
30	"	436-17	대	46	46						43.6	지상 1층	단독주택	
31	"	436-18	대	13	13							-	-	-
32	"	436-19	대	26	26							-	-	-
33	"	436-20	대	26	26							-	-	-
34	"	436-21	대	70	70							-	-	-
35	"	436-23	대	129	129							-	-	-
36	"	436-24	대	50	50							-	-	-
37	"	436-25	대	69	69							-	-	-
38	"	436-26	도	14	14							-	-	-
39	"	436-28	대	5	5							-	-	-
40	"	436-29	대	6	6							-	-	-
41	"	436-30	대	6	6							-	-	-
42	"	436-31	대	24	24							-	-	-
43	"	436-32	대	7	7							-	-	-
44	"	436-33	대	40	40							-	-	-
45	"	436-34	대	6	6							-	-	-
46	"	582-1	대	43	43							19.5	지상 1층	단독주택
47	"	582-2	도	3	3							-	-	-
48	"	583-2	도	7	7							-	-	-
49	"	584-1	대	116	116							63.4	지상 1층	단독주택
50	"	584-2	대	202	202							-	-	-
51	"	584-3	대	50	50							-	-	-
52	"	584-4	대	38	38							-	-	-
53	"	488-1	대	1,360	1,360							232.6	지상 1층	단독주택 외 1용도
54	"	591-1	대	463	463							-	-	-
우수영성지 소계		54필지		15,563	15,563									
55	용암리	1294	사	1,470	1,470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 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56		1291-8	도	10,545	12									
57	"	1279	사	353	353									
58	"	1279-1	구	21	21									
59	"	1279-2	사	321	321									
원문 소계		5필지		12,710	2,177									
합계		59필지		28,273	17,740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면적: m ²)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1	서상리	107	전	288	288							-	-	-
2	"	108	전	962	962							-	-	-
3	"	109	전	1,193	1,193							-	-	-
4	"	110	전	99	99							-	-	-
5	"	115	전	3,967	3,967							-	-	-
6	"	115-1	전	2,377	2,377							-	-	-
7	"	151	묘	4,046	4,046							-	-	-
8	"	152	전	225	225							-	-	-
9	"	153	임	4,122	4,122							-	-	-
10	"	205-6	구 거	91	91							-	-	-
11	"	207	대	899	899							76	지상 1층	단독주 택
12	"	207-2	대	38	38							-	-	-
13	"	207-3	대	79	79							-	-	-
14	"	208	대	179	179							40	지상 1층	단독주 택
												311	지상 1층	단독주 택
15	"	208-1	대	74	74							-	-	-
16	"	208-2	대	249	249							-	-	-
17	"	209	대	159	159							48.9	지상 1층	단독주 택
18	"	210	대	417	417							64.4	지상 1층	단독주 택
19	"	211	대	278	278							57.5	지상 1층	단독주 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20		212	대	179	179							60.8	지상 1층	단독주택
21	"	213	대	228	228							44.3	지상 1층	단독주택
22	"	214-1	전	676	676							-	-	-
23	"	217	전	542	542							-	-	-
24	"	219	전	1,058	1,058							-	-	-
25	"	219-1	전	307	307							-	-	-
26	"	219-2	전	466	466							-	-	-
27	"	220	전	116	116							-	-	-
28	"	221-1	임	11,709	11,709							-	-	-
29	"	222	전	1,402	1,402							-	-	-
30	"	223	전	1,560	1,560							-	-	-
31	"	224	전	1,531	1,531							-	-	-
32	"	225	전	2,383	2,383							-	-	-
33	"	226	전	790	790							-	-	-
34	"	227	전	1,180	1,180							-	-	-
35	"	228	대	248	248							44.6	지상 1층	단독주택
36	"	229	전	314	314							-	-	-
37	"	230	전	545	545							-	-	-
38	"	231	전	264	264							-	-	-
39	"	232-1	대	420	420							-	-	-
40	"	238	대	387	387							50.9	지상 1층	단독주택
41	"	239	대	1,000	1,000							58.2	지상 1층	단독주택
42	"	239-1	대	31	31							-	-	-
43	"	240	대	489	189							67.8	지상 1층	단독주택
44	"	241	전	529	529							-	-	-
45	"	242	전	813	813							-	-	-
46	"	243	전	340	340							-	-	-
47	"	243-1	전	340	340							-	-	-
48	"	243-2	전	341	341							-	-	-
49	"	244	전	664	664							-	-	-
50	"	245	전	393	393							-	-	-
51	"	246	전	426	426							-	-	-
52	"	247-1	전	1,491	1,491							-	-	-
53	"	247-2	전	701	701							-	-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54		247-3	전	1,831	1,831							-	-	-
55	"	247-4	전	1,405	1,405							-	-	-
56	"	247-5	전	985	985							-	-	-
57	"	247-6	전	1,831	1,831							-	-	-
58	"	247-7	전	896	896							-	-	-
59	"	247-8	전	1,812	1,812							-	-	-
60	"	248	전	1,663	1,663							-	-	-
61	"	249	전	1,821	1,821							-	-	-
62	"	250	전	2,182	2,182							-	-	-
63	"	250-1	전	869	869							-	-	-
64	"	250-2	전	1,369	1,369							-	-	-
65	"	250-3	전	446	446							-	-	-
66	"	251	전	2,641	2,641							-	-	-
67	"	252	전	853	853							-	-	-
68	"	253	전	661	661							-	-	-
69	"	254	전	522	522							-	-	-
70	"	255	전	261	261							-	-	-
71	"	256	전	1,269	1,269							-	-	-
72	"	257	전	278	278							-	-	-
73	"	258	전	618	618							-	-	-
74	"	259	답	179	179							-	-	-
75	"	260	전	370	370							-	-	-
76	"	261	전	337	337							-	-	-
77	"	336	대	423	423							-	-	-
78	"	337	대	397	397							-	-	-
79	"	338	대	529	529							77	지상 1층	단독주택
												49.2	지상 1층	단독주택
80	"	339	대	119	119							-	-	-
81	"	340	대	426	426							61.5	지상 1층	단독주택
												80	지상 1층	단독주택
82	"	341	대	203	203							64.2	지상 2층	단독주택
83	"	341-1	대	299	299							-	-	-
84	"	344	대	136	136							-	-	-
85	"	345	대	17	17							-	-	-
86	"	379-2	대	830	830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87		380	임	411	411							589.8	지상 1층	창고시 설 외 2용도
												65.4	지상 1층	단독주 택
88	"	380-1	대	606	606							-	-	-
89	"	380-2	대	240	240							315.4	지상 1층	공장
90	"	380-3	대	208	208							-	-	-
91		380-4	대	809	809							165.2	지상 1층	공장
												60.7	지상 1층	단독주 택
92	"	380-5	대	875	875							-	-	-
93	"	380-6	대	188	188							-	-	-
94	"	380-7	임	56	56							-	-	-
95	"	380-8	임	14	14							-	-	-
96	"	380-9	임	117	117							-	-	-
97	"	380-10	임	50	50							-	-	-
98	"	380-11	잡	402	402							-	-	-
99	"	380-13	도	48	48							-	-	-
100	"	380-15	잡	273	273							-	-	-
101	"	381	대	208	208							40.7	지상 1층	단독주 택
102		382-1	대	1,010	1,010							152	지상 1층	공장시 설
												66.1	지상 1층	단독주 택
103	"	382-2	대	433	433							-	-	-
104	"	382-3	대	638	638							151	지상 1층	공장
105	"	382-5	대	71	71							-	-	-
106	"	382-6	잡	40	40							-	-	-
107	"	382-7	잡	14	14							-	-	-
108	"	383-3	대	526	526							-	-	-
109		404	대	624	624							33	지상 1층	단독주 택
												33.1	지상 1층	단독주 택
110	"	404-1	대	140	140							-	-	-
111	"	404-2	대	67	67							-	-	-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112		405	대	208	208							38.3	지상 1층	단독주 택
113	"	405-1	대	217	217							-	-	-
114	"	405-2	대	116	116							-	-	-
115	"	405-3	대	20	20							-	-	-
116	"	406	대	13	13							47.9	지상 1층	단독주 택
117	"	407	대	311	311							46.2	지상 1층	단독주 택
118	"	407-2	대	301	301							-	-	-
119	"	407-3	대	90	90							-	-	-
120	"	407-5	잡	273	273							-	-	-
121	동외리	945	전	952	952							-	-	-
122	"	946-8	전	1,802	1,802							-	-	-
123	"	946-9	전	423	423							-	-	-
124	"	946-10	전	985	985							-	-	-
125	"	946-12	전	850	850							-	-	-
126	"	954-1	전	298	298							-	-	-
127	"	954-2	대	962	962							91.5	지상 1층	단독주 택
128	"	952-2	대	413	413							-	-	-
129	"	952-3	대	182	182							-	-	-
130	"	953	전	1,557	1,557							45.2	지상 1층	단독주 택
131	"	955-1	잡	142	142							-	-	-
132	"	955-10	잡	33	33							-	-	-
133	"	955-11	잡	86	86							-	-	-
134	"	955-12	잡	30	30							-	-	-
135	"	955-14	잡	39	39							-	-	-
136	"	955-2	잡	89	89							-	-	-
137	"	955-3	잡	40	40							-	-	-
138	"	955-4	잡	175	175							-	-	-
139	"	955-5	잡	102	102							-	-	-
140	"	955-6	잡	511	511							99.66	지상 1층	근린공 공시설
141	"	955-7	잡	46	46							-	-	-
142	"	955-8	잡	110	110							-	-	-
143	"	955-9	잡	63	63							-	-	-
144	"	958-1	대	281	281							67.32	지상 1층	노유자 시설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145		959-1	대	119	119							66.33	지상 2층	단독주 택
146	"	960	대	179	179							-	-	-
147	"	961-1	대	198	198							-	-	-
148	"	962-1	대	410	410							103.4	지상 1층	단독주 택
149	"	963-1	대	536	536							146	지상 1층	단독주 택
150	"	1101-3	전	69	69							-	-	-
151	"	1102-1	대	316	316							72.3	지상 1층	단독주 택
												60	지상 1층	단독주 택
												42.6	지상 1층	단독주 택
												36.3	지상 1층	단독주 택
												31.7	지상 1층	단독주 택
												45.6	지상 1층	단독주 택
152	"	1102-2	대	354	354							-	-	-
153	"	1102-4	대	173	173							-	-	-
154	"	1104-1	대	957	957							-	-	-
155	"	1106	대	479	479							101.3	지상 1층	단독주 택
156	"	1107	대	159	159							-	-	-
157	"	1108	대	76	76							-	-	-
158	"	1159-1	대	322	321							27	지상 1층	단독주 택
												107.9	지상 1층	단독주 택, 근린생 활시설
159	"	1160	대	83	83							-	-	-
160	"	1161-1	대	340	340							91.57	지상 1층	단독주 택
161	"	1162	대	119	119							43.3	지상 1층	단독주 택
162	"	1163	대	172	172							59.5	지상 1층	단독주 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50	지상 1층	단독주 택
163		1164	대	30	30							-	-	-
164	"	1165	대	165	165							81.9	지상 1층	단독주 택
165	"	1166-1	대	225	225							-	-	-
166	"	1167	대	221	221							59.8	지상 1층	단독주 택
167	"	1167-1	대	119	119							-	-	-
168	"	1167-2	잡	324	324							-	-	-
169	"	1167-3	잡	30	30							-	-	-
170	"	1168	대	456	456							49.6	지상 1층	단독주 택
171	"	1169	전	238	238							-	-	-
172	"	1170	대	281	281							-	-	-
173	"	1171	전	655	655							62.5	지상 1층	단독주 택
												35.6	지상 1층	단독주 택
174	"	1172	전	1,124	1,124							-	-	-
175	"	1173	전	255	255							47.6	지상 1층	단독주 택
176	"	1174	전	678	678							-	-	-
177	"	1176	전	1,379	1,379							-	-	-
178	"	1135-1	대	215	215							76.26	지상 1층	근린공 공시설
179	"	1135-3	도	73	73							-	-	-
180	"	1136-1	대	273	273							65.5	지상 1층	단독주 택
181	"	1136-3	대	210	210							-	-	-
182	"	1139-2	대	1,857	1,857							181.4	지상 2층	근린생 활시설
												173.3	지상 1층	근린공 공시설
183	"	1144-1	대	542	542							69.8	지상 1층	단독주 택
184	"	1187-17	대	228	228							-	-	-
185	"	1187-2	대	1,504	1,504							812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활시설
186		1187-20	대	358	358							-	-	-
187	선두리	398	대	721	721							36.3	지상 1층	단독주 택
188	"	399	대	149	149							40.3	지상 1층	단독주 택
189	"	406	대	526	526							72.6	지상 1층	단독주 택
190	"	409	대	298	298							60.4	지상 1층	단독주 택
191	"	410	대	350	350							91.8	지상 1층	단독주 택
												82.5	지상 1층	단독주 택
192	"	414	대	251	251							55.5	지상 1층	단독주 택
193	"	427	대	152	152							-	-	-
194	"	428	대	99	99							84.5	지상 1층	단독주 택
195	"	430	대	26	26							-	-	-
196	"	432	대	248	248							-	-	-
197	"	433-1	대	152	152							40.9	지상 1층	단독주 택
198	"	433-2	대	6	6							-	-	-
199	"	433-23	대	5	5							-	-	-
200	"	433-24	대	37	37							-	-	-
201	"	434-1	대	565	565							106.4	지상 1층	단독주 택
202	"	435-1	대	96	96							119.5	지상 1층	단독주 택
203	"	436	대	69	69							-	-	-
204	"	436-6	대	106	106							31.4	지상 1층	단독주 택
205	"	436-12	대	30	30							-	-	-
206	"	436-22	대	106	106							-	-	-
207	"	441	대	66	66							-	-	-
208	"	441-1	대	752	752							41.6	지상 1층	단독주 택
209	"	441-2	대	628	628							64.1	지상 1층	단독주 택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210		441-4	대	103	103							-	-	-
211	"	442	도	122	122							53.9	지상 1층	단독주 택
212	"	444-1	대	317	317							84.9	지상 1층	단독주 택
213	"	446	대	218	218							-	-	-
214	"	490-3	대	82	82							74.08	지상 1층	제1종 근린생 활시설
215	"	493	대	228	228							79	지상 1층	단독주 택
216	"	494	대	43	43							45.3	지상 1층	단독주 택
217	"	495	대	20	20							-	-	-
218	"	496	대	235	235							87.39	지상 1층	단독주 택
219	"	497	대	268	268							98.79	지상 1층	단독주 택
220	"	498	대	188	188							-	-	-
221	"	499	대	646	646							57.2	지상 1층	단독주 택
222	"	502	대	172	172							-	-	-
223	"	503	대	317	317							69.4	지상 1층	단독주 택
224	"	505	대	231	231							82.28	지상 1층	단독주 택
225	"	506	대	235	235							49.6	지상 1층	단독주 택
												52.9	지상 1층	단독주 택
												49.58	지상 1층	단독주 택
226	"	508	대	149	149							-	-	-
227	"	509	대	63	63							36.7	지상 1층	단독주 택
228	"	510	대	17	17							-	-	-
229	"	511	대	268	268							73.7	지상 1층	단독주 택
230	"	534	대	205	205							54.2	지상 1층	단독주 택
231	"	535	대	89	89							60.8	지상 1층	단독주 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232		536	대	13	13							38.3	지상 1층	단독주택
233	"	537	대	13	13							-	-	-
234	"	543	대	221	221							41	지상 1층	단독주택
235	"	544	대	1,339	1,339							82.3	지상 1층	단독주택
236	"	545-1	대	631	631							-	-	-
237	"	545-2	대	585	585							-	-	-
238	"	545-3	대	192	192							60.5	지상 1층	단독주택
239	"	581-5	대	473	473							46.6	지상 1층	단독주택
240	"	583-1	대	20	20							-	-	-
241	"	584	대	311	311							88.4	지상 1층	단독주택
242	"	585-1	대	324	324							135.5 4	지상 1층	단독주택
243	"	587-1	대	97	97							-	-	-
244	"	588-1	대	95	95							-	-	-
245	"	589-2	대	60	60							-	-	-
246	"	590-1	대	264	264							130.9 5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247	"	590-2	대	1,187	1,187							338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248	"	592	대	202	202							-	-	-
249	"	593	대	417	417							60.5	지상 1층	단독주택
250	"	636	임	165	165							-	-	-
251	"	637	대	150	150							73.7	지상 1층	단독주택
252	"	637-1	대	114	114							72.16	지상 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253	"	621	중	922	922							303.5 4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254	"	488-3	대	151	151							74.7	지상	단독주

연 번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 적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건축물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면적	층수	용도
320		96-2	전	493	493									
321	"	201-1	구	32	32									
322	"	202-1	구	20	20									
323	"	96-1	구	76	76									
324	"	201-2	전	94	94									
325	"	202-2	전	54	54									
326	"	96	전	337	337									
원문 소계		70필지		36,466.4	18,278									
합계		326필지		172,553.4	154,064									

(3) 지정 예고 시 제출 의견

연번	제 출 자	주 요 내 용	비 고
1	박○○	-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므로 사적 지정 반대	
2	김○○	- 전 필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설정이며, 부득이 지정할 경우 구체적 근거 제시와 보상이 필요함	
3	박○○	-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요청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2.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공영주차장 건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 중구청이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공영주차장 건립>
 - 위치 : 서울시 중구 신당동 826-1 외 33필지(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4,275.3m²
 - 건축면적 : 2,394.98m²
 - 연면적 : 11,923.01m²
 - 층 수 : 지하5층, 지상3층(최고높이 15.1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200대
 - 조경면적 : 1,345.9m²(옥상 915m², 자연지반 430.5m²)

라. 참고사항

-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 2차('16.08.17)
 - 한양도성 진입부에서 보이는 지상시설물(조경, 난간, 경계웬스 등) 등은 한양도성의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치

- 암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이므로, 사업 부지 인근에 위치한 한양도성에 위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사기간 중 계측관리 시행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 1차('16.06.15)

- 원 지형을 확인하고 개발계획과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원지형을 계획도면에 상세히 표시하여 주기 바람
- 지역주민을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은 동의하나, 주차장 건립으로 관광버스 및 외부 차량의 주차장 이용 등 분산된 주차 수요가 순성길로 집중되어 순성길이 차량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바, 도성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및 주차수요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바람
- 공영주차장 건립 후 한양도성 보호 측면에서 개선되는 사항 등을 현재와 비교하여 제시해 주기 바람(문화재 측면에서 건립의 타당성 검토 필요)
- 암반 굴착시 진동 등으로 한양도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암반층 굴착 공법에 대하여 지질조사 결과 및 굴착공법, 대책 등을 포함한 상세한 굴토 계획 제시 바람
- 도면 보완 및 확인 요청사항
 - 유산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명확한 표시
 - 상세한 단면 추가, 램프 경사도 단면도, 굴착 도면
 - 주차 정산소 및 진입부 경사로로 인한 주차 출입구 혼잡요소 개선방안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굴착 세부자료 보완

3.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전기·통신선 지중화 및 전신주 철거 등을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전기·통신선 지중화 사업>
 - 위치 : 서울시 중구 다산동 장충체육관 입구~성곽공영주차장 앞(문화재 보호구역)
 - 사업내용
 - 관로 매설 굴착 : 연장 1,300m
 - 폭1.5m×깊이1.47m(도로구간), 1.05m×1.55m(토끼굴구간), 0.67m×1m(성안길구간)
 - 전기·통신선 등 공중선 지중화, 변압기(12기) 지중화
 - 전신주(39기) 철거, 무선통신기지국(3개소) 이전
 - 개폐기(7기) 지상설치

라. 참고사항

- (1)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6.08.02)
 - 제출된 도면으로는 구체적인 공사범위, 시공방법, 지중화 관로의 배수처리 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어려우나, 신청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내로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시굴조사 대상 지역임

- 한양도성 안쪽(성안길 구간) 굴착시 성벽 내탁부 및 뒷채움부의 훼손이 우려되어 선 시굴 후 그 결과에 따른 공사계획 변경 등 조치가 필요함
- 한양도성 바깥쪽(도로 구간) 굴착부분은 암반지역이 포함되어 있어 암반 굴착으로 인한 진동 등에 의해 성벽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니, 사업 시행 전 신청내용 전반(암문 하부 굴착 포함)에 대하여 성벽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구조안전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암반굴착계획 자료 보완

4. 서울 한양도성 주변 신라호텔 지하주차장 건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신라호텔 주차장을 건립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주변에 호텔 부설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3) 신청내용<지하주차장 건립>

- 위치 :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200-73 외 11필지(문화재보호구역과 인접, 도성과 20m 이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1,838㎡
 - 연면적 : 10,478㎡
 - 층수 : 지하 8층, 깊이 약 27.7m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차대수 : 317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2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축 호텔신라 지하주차장 부지는 한양도성 보호구역 경계에 인접된 지역으로 깊이 27.7m를 굴착하는 사업임
- 주차장 규모는 지상2층, 지하6층 규모로, 노출되는 지상 2층 마감은 성벽과 구별되게 시공하되, 수목으로 차폐하여 완공 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 지하주차장 굴착 시 지하수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굴착으로 인한 진동의 문화재에 대한 영향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신축 지하주차장 완공 후 경관은 현재보다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파악됨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16.08.17)

- 문화재 주변의 지상 구조물을 변경하여 지하화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는 동의하나,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측면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자문을 다시 받기 바람.
 - 신청 계획(안)은 향후 건립될 전통한옥호텔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주변과 연계된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연계성 등도 함께 검토.
 -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과 이격거리에 대한 정확한 도면표현을 해주기 바람,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지하 구조물이 최대한 이격 될 수 있도록 조정.
 - 지질 조사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암반 굴토계획과 공사기간중 인접한 한양도성의 보존·관리(계측관리 등) 및 응급상황 조치(대책) 계획 제시
 - 지상부에 돌출되는 코아(계단실, 환기구 등)를 통합하여 최소화 하고, 도성 반대방향(서측)으로 이동 배치 검토 및 지상부 돌출(코아) 한옥디자인 재검토
 - 북측(동호로)에서 보이는 구조물의 규모와 입면계획이 한양도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한양도성을 위압하지 않도록 규모 및 디자인 재검토.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관디자인 전문가 검토를 받을 것
 - 문화재 안전관리 철저

5. 서울 몽촌토성 내외 올림픽조각공원 경관조명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적 제297호 「서울 몽촌토성」 내외 올림픽조각공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몽촌토성 내외 올림픽조각공원 조각작품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8.10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몽촌토성(사적 제297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3 등
- (3) 신청내용<올림픽조각공원 경관조명 설치>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오륜동 88-2(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1차('16.8월) / 부결	2차('16.9월) / 금회신청	비고
규모	- 경관조명 설치 29개소(A구역 5개소, B구역 24개소) - 산책로 입구 유도등 설치 - 총 조명등 103개(A구역 31, B구역 72)	좌동	
조명등 설치	지중투과등 방식+주변 수목 활용	지중투과등 방식	수목 활용 제외
굴토규격	- 연장 1,400m (A구역 약 400m, B구역 약 1,000m) - 폭 60cm, 깊이 60cm 이내	좌동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6. 서산 해미읍성 내 사슴 사육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제116호 「서산 해미읍성」 내에 사슴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산 해미읍성 내에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사슴 사육시설을 설치하고 사슴(10두)을 사육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4.8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산 해미읍성(사적 제116호)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2번지
- (3) 신청내용<사슴 사육시설 설치 및 사슴 사육>
 - 위치 : 충남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2번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구분	1차('15.4월) / 부결	2차('16.9월) / 금회신청	비고
사육시설	- 민속가옥 내 외양간	- 민속가옥 인근 공터 - 사육용 울타리 설치 (길이30m×폭20m×높이3m)	
사육수량	- 꽃사슴 3두	- 꽃사슴 10두(수컷 2, 암컷8)	

- (4) 신청인 의견
 - 해미읍성 내 공터를 활용하여 사슴을 사육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간과 동물이 상생하는 분위기도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를 구축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가치 저해 우려

7. 수원 화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기도 수원시 소재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수원 화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2015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15.01.14.)에서 가결된 사항을 임대 세대 조정 등에 따른 평면 변경 등이 발생하여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수원 화성(사적 제3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남창동 55-23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42m 이격/11구역(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층수를 허용)}
 - 내용

구분	허가 내용('09.7.8.)	1차 변경허가 내용 ('14.4.9.)	2차 변경허가 내용 ('15.1.14.)	금회 신청
규모	지하 2층, 지상5~14층(29개동)	지하 3층, 지상5~15층(34개동)	지하 3층, 지상5~15층(32개동)	지하 3층, 지상5~15층(32개동)
사업면적	67,616.63㎡	63,459.20㎡	63,459.30㎡	63,200.40㎡
건축면적	21,194.65㎡	21,291.15㎡	20,162.78㎡	20,287.77㎡
연면적	206,666.47㎡	179,682.14㎡	183,270.86㎡	184,416.59㎡
최고높이 (m)	200m이내(5층:19.60m), 500m이내(14층:46.00m)	200m이내(5층:19.60m), 500m이내(14층:46.00m)	200m이내(5층:19.60m), 500m이내(14층:46.00m)	200m이내(5층:19.60m), 500m이내(14층:46.00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8.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오산시 소재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도시계획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에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려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제7차 소위원회('16.08.24.)에서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의 사유로 부결, 계획을 수정하고 대안을 검토한 후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사적 제140호)
 -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162-1번지 외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19-60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260m 이격)
 - 내용
 - 오산 도시계획시설 대로 2-11호선 개설(B=25m, L=1,709m)

구분	1차			2차-부결 (‘16.8.24.)	금회 신청
	1차-보류 (‘16.4.27.)	1차보완-보류 (‘16.5.25)	2차보완-부결 (‘16.6.22)		
도로 폭	30m	30m	30m	25m (일면보도)	25m (양면보도)
이격거리	230m	230m	240m	260m	260m
옹벽	H 3~18m : 400m H 3~6m : 40m H 6~9m : 60m	H 3~9m : 153m H 1.5~6m : 40m H 1.5~9m : 60m	H 3.5m : 20m H 3.5m : 40m	절토량 감소 및 자연사면처리	절토량 감소 및 자연사면처리
덧개형 터널	-	244m	243m	240m	240m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북한산성 및 삼각산 내 관리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및 명승 제10호 「삼각산」 내 초소 등의 설치사항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북한산성과 삼각산 내에 초소 등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허가 받으려는 사항임.
- 지난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16.8.10.)에서 '자료 보완 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되어, 신청인이 초소의 상세 현황자료와 추가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북한산성(사적 제162호 / 1968.1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일원
 - 삼각산(명승 제10호 / 2003.10.3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68-1 일원
- (3) 신청내용<초소 설치>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 1-1번지 등(문화재구역)
 - 규모
 - 초소 : 지상 1층 3동(12㎡), 규모 2*2m, 최고높이 2.9m
 - 화장실 : 지상 1층 3동(21㎡), 규모 3.4*2.1m, 최고높이 3.9m

라. 참고사항

-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별도 의견 없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사전 현상변경 행위 재발 방지
- 경관과 조화되도록 시설물은 단기간 내로 개선할 것(문화재와 이격)

10.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성혈 주변에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1313번지
- (3) 신청내용<오피스텔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일도이동 1036-4[문화재구역으로부터 320m 이격 /5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10층 이상 개별심의)}]
 - 건축규모
 - 대지면적 : 1,335.6㎡
 - 연면적/건축면적 : 3,932.41㎡/441.12㎡
 - 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최고높이 31.9m, 철근 콘크리트조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8.19/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제주 삼성혈에서 320여m 이격된 5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10층 이상 개별심의)에 지하 1층, 지상 10층, 높이:31.9m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삼성혈 내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도심화된 주변의 개발정도를 고려할 때,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건물 외관 디자인 전문가 검토 필요

11.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청사관리원실 증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청사관리원실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청사관리원실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국립민속박물관 청사관리원실 증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경복궁 내)
 - 사업내용(청사관리원실)

구분	기존	신청	증·감	비고
연면적	57.18㎡	119.7㎡	증 62.52㎡	
높이	3.5m	6.29m	증 2.79m	
층수	1층	2층	증 1층	
외부마감	모르타르 위 페인트마감	아연도장강판	-	
사업비	135,000천원			

라. 참고사항

- (1) 설계자문('16.08.0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1~2층이 구분되어 보이지 않도록 한 재료로 마감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출입문 상부는 파라펫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관 디자인 조정

12. 경복궁 내 국립민속박물관 정문앞 현수막 거치대 설치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대표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배너의 상시 게시 요구에 따른 거치대 필요
- 국립민속박물관 내에서 추진하는 각종 특별기획전시 및 행사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국내·외국인들이 한민족의 전통 생활문화를 체험함으로써 문화욕구 충족에 부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국립민속박물관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활사박물관으로서 많은 국민이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행사, 교육 등의 홍보가 필요하며, 다양한 국정과제나 특별행사 시 일회성 배너 설치에 따른 미관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변의 경관(담장 등)과 어우러질 수 있는 현수막 거치대를 설치 필요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국립민속박물관 정문 현수막 거치대 설치 공사>
 - 공사내용
 - 기초공사(400×400×500) 후 플레이트 설치 : 8개소
 - 현수막 거치대 설치(2000*3400) : 4개(담장에서 90cm 이격, 상부 서까래에서 60cm 이격 설치)
 - 조명시설(LED) : 4개소
 - 소요예산 : 10,000천원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16.08.17/문화재위원 ○○○, ○○○, ○○○)

- 경복궁 담장의 유지관리에 장애가 되지 않고 주변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적도록 하기 위하여 배너 거치대를 담장에서 이격하고 담장 지붕 서까래가 가려지지 않는 높이로 설치할 것
- 지지대는 단순하고 단면이 작은 형태로 디자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지대 설치는 담장에서 90cm, 담장 지붕 서까래에서 60cm정도 이격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3. 익산 왕궁리 유적 내 편의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내 편의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왕궁리유적 문화재구역 내에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16.06.08(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우려
- '16.07.13(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왕궁리 유적(사적 제408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562번지
- (3) 신청내용<관람객 편의시설 설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646-1(문화재구역)
 - 수량 : 1동(철근콘크리트)
 - 사업내용
 - 건립 목적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휴게공간 및 기념품 판매)
 - 건축 구조 및 규모 등
 - (1안)지상 1층 / 연면적 227.71㎡ / 최고높이 6.25m
 - (2안)지하 1층, 지상 1층 / 연면적 359.86㎡ / 최고높이 6.25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5.02/문화재위원 ○○○)

- 기존 건물과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붕의 높이차를 이용해 실내에 자연광을 좀더 많이 도입하는 방안과 평면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현지조사의견('16.05.17/문화재위원 ○○○)

- 외관은 단순하게 디자인하고 내부공간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부가 밝고 쾌적하도록 채광 환기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설계보완

14. 익산 제석사지 내 LPG 시설물 및 배관망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내 LPG 시설물 및 배관망 설치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내에 거주민의 주거생활에 필요한 LPG 시설물 및 배관망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3) 신청내용<거주민 주거생활용 LPG 시설물 및 배관망 설치>

- 위치 : 전북 익산시 왕궁면 궁평길 4 등 총 2.63km 구간(문화재구역, 1, 3구역) ※ 공급가구 45가구(궁평마을)

○ 사업내용

- 목적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

- 내용

- 시설물 :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망, 보일러 설치 등
- 배관규모 : 지름 63mm / 총 설치길이 2.63km
- 굴착깊이 : 08 ~ 1.0m

- 세부내용

	규 모	비 고
소형저장탱크	가로2.3m/세로4m/높이 3m	지상노출(투수판넬 외곽설치), 기초깊이 0.5m
공급 파이프	지름 63mm, 총 설치길이 2.63km	

라. 참고사항

(1) 지자체 의견

- 본 사업은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에 인근 마을 주민을 위하여 LPG 배관망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환경개선사업으로 해당 마을의 주민숙원 사업임
- 기존도로(상수관 매설지)구간을 활요한 배관망시설로 단계별 사업추진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15.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부소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 부여 정림사지, 부여 쌍북리 요지 주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 심의 결과
 - '15.12.09.(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16.04.06.(수)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 '16.05.11(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 '16.06.08(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 '16.07.13(수)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부소산성 (사적 제5호), 부여 관북리 유적(사적 제428호), 부여 정림사지(사적 제301호), 부여 쌍북리 요지(사적 제99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등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공사>
 - 위치 : 충남 부여군 쌍북리 590번지{부소산성으로부터 220m, 관북리 유적으로부터200m, 정림사지로부터330m, 쌍북리 요지로부터32m 이격 /6구역(평슬라브 5층 17m, 경사지붕 5층 21m 이하)}

○ 사업내용

구분	1차('15.12) 불허	2차('16.4) 불허	3차('16.5) 불허	4차('16.6) 불허	5차('16.7) 불허	6차('16.9)	비고
대지면적	27,908.35㎡	27,624.43㎡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연면적	75,799.5㎡	77,626.㎡	74,915.㎡	73,617.4㎡	68,993.72㎡	69,817.4㎡	
최고높이 /규모	47.9m 16층 509세대	47.9 12~15층 505세대	37.3m 9~11층 465세대	36.63m 8~10층 440세대	34.83m 8~10층 432세대	32m 9층 440세대	
용적률	194.7%	194.79%	183.21%	178.51%	175.31%	178.51%	

○ 사업기간 : 2016. 10월 ~ 2018. 9월

(4) 신청인 의견

○ 지난 '15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총 6차에 걸쳐 신청을 하고 있으나 문화재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높이와 규모를 제시하여 주기를 희망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3.15/문화재위원 ○○○, ○○○)

○ 본 건물은 부소산성에서 조망되는 경관상 중요한 입지이므로 건축의 유형, 규모, 높이, 차폐도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지난 12월 문화재위원회 부결 이후, 조정하여 제출한 신청안이 높이를 낮추고 밀도(건폐율, 용적률)와 차폐도를 높인 것은 부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5.12.03/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부여 쌍북리 요지에서 약32m, 부여 부소산성에서 약220m,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약200m, 부여 정림사에서 약 330m 이격된 6구역(건축물 최고높이 17m이하(5층 이하)/건축물 최고높이 21m이하(5층 이하))에 건축면적 5,690㎡, 연면적 75,799㎡, 최고높이 47.9m의 15층 공동주택을 9동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여 쌍북리 요지, 부여 부소산성, 부여 관북리 유적에서 상당한 규모와 높이로 인지되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3) 관리단체 의견

○ 금번 현상변경 허가신청건은 사적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주변 공동주택(아파트)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임. 해당사업대상지는 문화재현상변경 허용기준 제6구역(평지봉시 최고높이 17m이하 / 경사지봉시 최고높이 21m이하)이며 부소산성과는 약 220m, 관북리유적과는 약 200m, 정림사지

와는 약 330m, 쌍북리요지와는 40m 이격되어 있습니다. 해당건설사업 계획은 대지면적 27,624.43㎡이며, 건축연면적 69,817.40㎡이며 총 13개동, 440세대이며, 건물최고높이 31m임.

- 부여는 1998년에 아파트가 조성된 이후로는 추가적으로 아파트가 조성된 적이 없으며, 현재 부여읍 일대 주택 물량부족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주택공급 안정에 필요함, 또한 부여의 타지역으로 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책으로 공동주택(아파트)조성이 필요한 사항임.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높이 과다

16. 공주 공산성 내 영은사 화장실 개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문화재구역 내 영은사 화장실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공주시 공산성 문화재구역 내에 관람객의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화장실을 개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1번지
- (3) 신청내용<화장실 개축>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1번지(기존화장실 위치와 동일)(문화재구역)
 - 수량 : 1동
 - 사업내용
 - 협소 및 겨울철 동파 등으로 사용이 중지되고 있는 기존 화장실 1동과 간이화장실 1동 철거 후 신축
 - 건축 구조 및 규모 등

	기존화장실	신축화장실
건축면적	27.1(20.7㎡ + 6.4㎡)	34.80㎡
높이	4.46m	4.91m

라. 참고사항

(1) 매장문화재 관련전문가 의견('16.08.10/○○대학교 ○○○ 교수)

- 해당 지역은 80년대 중반 발굴조사가 진행되어 통일시라시대 사지가 존재하고, 하단에 백제, 상단에 조선시대 성곽 문이 위치한 지역의 지근거리에 해당함
- 지형상 금령사의 서향사면 말단부에 해당하고, 80년대에 민가가 위치하며 발굴조사범위에서 제외된 지역이기도 함
- 지형조건상 유적의 존재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현존 편의시설(화장실) 설치과정에 지하 2m 정도 굴착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음
- 따라서 해당지역의 개발 전 혹시 존재할 수도 있는 유구의 파악을 위한 조사(표본, 시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17. 강릉 대도호부 관아 내 담장 및 출입시설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388호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관아 출입문 설치 및 담장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대도호부 관아에 관아 출입문 및 담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대도호부 관아(사적 제388호 / 1994.07.11.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27-1번지 일원

(3) 신청내용<담장 및 출입시설 설치>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성내동 34-1번지(문화재구역)

- 강릉대도호부 관아 도로부지 폐도구간 및 강릉 우체국 철거 지역

○ 사업내용 : 강릉 대도호부 관아 출입문 설치 및 담장설치

- 관아 출입문

· 한식 목구조, 이익공 양식, 팔작지붕

· 면적 : 16.20m²

· 정면 3칸, 측면 1칸 H=6.3m, L=5.4m

- 담장 : H=1.2m, L=68.5m(토석 26.5m, 사괴석 42m)

(4) 신청인 의견

- 강릉대도호부 관아는 조선시대 강릉의 읍치 중심 공간으로 2006년 객사영역 복원과 2014년 동헌영역의 복원 이후 지정 구역내 위치하고 있던 우체국을 철거함에 따라 도심지내 문화유적의 중심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월에 개최된 문화재 야행사업과 다가오는 9월에 개최되는 전국단위 행사(대한민국 독서대전)와 더불어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를 위하여 우체국이 철거된 이후 강릉대도호부 관아가 위치한 도심공간의 조속한 정비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강릉대도호부 관아유적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도심지 문화재 경관정비, 우체국 철거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유적 훼손방지 등 관아유적의 정비와 보존을 위해 도로 폐도된 입구에 출입문 설치 및 담장 설치와 관련하여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신청하오니 적극 검토 처리하여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퍼블릭골프장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고령군 소재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퍼블릭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령 지산동 고분군 주변 1구역 및 3구역 내 퍼블릭골프장을 조성하고자 신청함
-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4차례 부결되었으며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신청함.
 - '15년 제10차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년 제3차 사적분과 위원회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년 제6차 소위원회 부결(연못 조성 시 굴착 깊이 등 전반적인 형질 변경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 필요)
 - '16년 제8차 사적분과 위원회 부결(성·절토 및 도로 구조물 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
 - 소재지 :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 산22번지 1호
- (3) 신청내용<가야대학교 내 퍼블릭골프장 조성사업>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산118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5~300m 이격/1, 3구역)
 - 사업내용(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이내)
 - 골프장 조성 면적 : 187,000m²(1·3구역) *전체 골프장 조성 면적 : 467,951m²

· 골프코스 현황

홀	길이(m)	티	병커	그린	페어웨이	러프	계
1	375	574	656	1,027	6,936	8,824	9,568
2	385	674	353	1,143	7,133	6,330	9,688
3	515	632	873	1,135	11,786	9,247	14,941
8	365	0	250	450	80	1,800	1,145
9	370	584	667	1,036	6,911	7,701	9,568
계		2,464	2,799	4,791	32,846	33,902	44,910

- 진입도로 : 길이 1,085m, 면적 10,850m²
- 관리도로 : 길이 84m, 면적 336m²
- 카트로 : 길이 2,382m, 면적 5,955m²
- 도로변 안전구조물 설치 : 길이 280m, 높이 4m, 도로폭 10m,
그물망 울타리 및 측백나무 생울타리
- 초기우수용 저류지(4개소) : 9,855m²
 - ①번 저류지(기존연못활용) : 면적 2,843m², 깊이 5m
 - ②번 저류지(신설) : 면적 2,239m², 깊이 1.5m
 - ③번 저류지(신설) : 면적 1,494m², 깊이 1.5m,
 - ④번 저류지(신설) : 면적 3,279m², 깊이 1.5m
- 재해방지용 저류지 (1개소) : 2,129m²
 - ⑤번 저류지(신설) : 면적 2,129m², 깊이 3m
- 주차장(1개소) : 면적 6,531m²(162대 주차)
- 클럽하우스(기존시설이용) : 면적 2,000m²
- 관리동 및 장비창고(기존시설이용) : 면적 5,030m²
- 연습그린 : 1,601m²
- 묘표장 : 5,001m²
- ※ 홀별 절토 및 성토현황
 - ①번홀 : 절토 1-7m / 20,729m³, 성토 1-4m / 41,691m³
 - ②번홀 : 절토 1-4m / 5,255m³, 성토 1-4m / 65,880m³
 - ③번홀 : 절토 1-9m / 91,859m³, 성토 1-4m / 56,043m³
 - ⑧번홀 : 절토 없음, 성토 0-1m / 2,650m³
 - ⑨번홀 : 절토 1-8m / 53,981m³, 성토 1-7m / 66,703m³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5.10.08/문화재위원 ○○○, ○○○)

- 상기 지구 내 퍼블릭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관련 사전 인허가 절차없이 해당지구에 대한 형질변경(지형)을 한 것이 확인됨(1구역과 3구역 해당지역).
- 상기 지구에 대한 문화재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형질변경이 이루어졌음. 문화재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를 어기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골프장 클럽하우스 인근에(지산동 고분군 방향) 건축하려는 시설물(카트 보관소)도 관련 절차를 밟아 심의 받아야 할 것임.

(2) 현상변경허가 위반사항-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벌목 및 작업로 개설 (약 14,000m²)

-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허가없이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벌목 및 작업로 개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매장문화재 보존조치의 지시) :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존 조치(발굴 등) 없이 사업시행
- 위반 경위
 - 2012.02.02. : 사업대상지 지표조사결과 문화재보존대책 통보(문화재청 발굴제도과-1222호)
 - 2014.09.25. : 골프장 인가(대가야 퍼블릭 골프장 조성사업)
 - 2015.09.03. : 벌목 및 작업로 개설로 인한 현장 훼손 확인
 - ※ 2015.09.01.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확인 민원전화
 - 2015.09.09. : 공사중지 명령(문화새마을체육과-9650호)
 - 2015.09.21. : 가야대학교 경위서 제출 요청(문화유산추진단-13호)
 - 2015.09.23. : 경위서 접수
 - 2015.10.05. : 고발조치(고령군→고령경찰서)
 - 2016.02.29. : 검찰 기소 처분
 - 2016.06.10. : 법원 선고(개인: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인:벌금 2천만원)
 - 2016.06.23. : 정밀발굴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7927)
 - ※ 조사기간 40일('16.7.7.~9.1.)
 - 2016.09.02 : 발굴조사 전문가 검토회의 결과
 - 석실 3호분은 현지에서 보존·활용, 안내판 설치(신라 황혈식 석실묘의

구조와 입지적 특징을 가짐)

- 다른 유구(석실, 석곽, 호석 등)에서 나온 석재는 사업부지 내에 문화재 측면에서 활용
- 유구 분포 확인을 위한 표본조사 실시 : 조사구역 동쪽(4호 석곽묘 부근) 일부와 동남쪽(운동장 연접 구릉부) 일부 원지형이 유지된 곳

마. 의결사항

- 부결
 - 성·절토 최소화 필요
 - 도로 안전구조물 높이 등 조정

19. 서울 한양도성 내 남산 회현자락 산림구간 성곽 보존·정비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남산 회현자락 발굴지역 중 산림구간의 도성 안정화를 위한 성곽 보존·정비를 실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남산 회현자락 발굴지역 중 산림구간의 도성 안정화를 위한 성곽 보존·정비를 실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종로구, 성북구 일원
- (3) 신청내용<남산 회현자락 산림구간 성곽 보존·정비>
 - 위치 :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 100-177일대(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산림구간 성곽 보존·정비 96.5m
 - 성곽돌 해체 11.7m³, 성곽돌 쌓기 88.6m³, 속채움석 쌓기 193.6m³, 성곽돌 보충 88.6m³, 성곽돌 가공 195.0m², 성곽돌 세척 255.5m²
 - 판축다짐 249.7m³, 잔디식재 199.3m²
 - 흔적표시 146m, 성곽 및 배전지 보존처리 1식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0. 홍성 홍주읍성 내 발굴조사지 임시 우회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문화재구역 내 북문지(현재 도로) 발굴조사를 위하여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홍성 홍주읍성 내 북문지(현재 도로) 발굴조사를 위하여 임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홍성 홍주읍성(사적 제231호)
 - 소재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98 외
- (3) 신청내용<발굴조사지 임시 우회도로 개설>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61-4 외(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임시 우회도로 개설 약 450m²(폭10m×길이45m)
 - 유구 보강 및 유구 보호용 성토
 - 노출된 체성의 일부와 석렬에 모래주머니로 주변 보강
 - 비닐로 유구 표면 보호
 - 비닐 위에 모래주머니로 보강
 - 부직포로 유구 경계 표시
 - 모래층으로 성토층과 유구층 구분
 - 복토
 - 마사토 1m 복토, 석분 0.2m 포설, 굴곡지반 보강
 - 안전관리
 - 안전휀스, 안전띠, 야광판넬 설치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1.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진입로 개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문화재구역 내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석촌동 고분군 지정구역 내에 진입광장을 조성하고 경사로 등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
- (3) 신청내용<고분군 진입광장 조성 및 경사로 설치>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77(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진입 광장 조성(화강석 판석 포장) 334m²
 - 진입 경사로 설치(황토포장) 79m²(연장20m, 24m×폭1.8m)
 - 탐방로 포장(황토포장) 199m²
 - 배수로, 광장 옹벽, 돌담 및 축대 등 설치
 - 수목(느티나무 1주, 소나무 56주) 제거

라. 의결사항

- 부결
 - 시설물 과다 설치로 문화재 경관 훼손 우려

22.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저유소 오염토양 정화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사적 제501호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저유소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보령 충청수영성 보호구역 내 저유소가 있던 부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보령 충청수영성(사적 제501호)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57-7 일대
- (3) 신청내용<저유소 오염토양 정화>
 - 위치 :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696 외 14필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오염토량 : 약 4,722m³(1,206m²×0~6m)
 - 오염토 정화를 위한 흙막이 시공
 - 길이60m×깊이7m 흙막이 차수공법(C.I.P 공법 + LW 그라우팅 공법)
 - 오염토양 반출 및 정화 완료 후 반입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입회조사 필요

23. 경주 황룡사지 보호구역 내 지반조사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6호 「경주 황룡사지」 문화재보호구역내에서 지반조사를 시행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황룡사 1차 심화연구 결과보고회(2013년 10월) 시 자문의견으로서 황룡사 유구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구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위해 지반조사를 시행할 필요성 언급.
- 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황룡사 제4차 심화연구의 과제인 유구 보호를 고려한 「황룡사 복원건물 기초구조 연구」(학술용역) 수행 시 필요한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현상변경을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황룡사지(사적 제6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
 - 지정일 : 1963.01.21
 - 1976~83년까지 사역 전체에 대한 발굴조사를 진행 후, 1981~82년 건물지 유구 노출 정비를 시행하였음.
- (3) 신청내용<지반조사>
 - 위치 : 경북 경주시 구황동 320-1번지(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전기 비저항 탐사 등 비파괴 조사 5종

순번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특이사항
1	전기 비저항 탐사	강당지, 강당 동서편 건물지 중금당지, 목탑지, 중문지 남회랑 서측, 남회랑 동측 중문지, 남문지	· 일직선상에 접지봉을 설치하여 접지봉간의 전위차 측정	· 유구 훼손 없음
2	굴절법·표면파 탐사	중금당지, 목탑지, 중문지	· 일직선상에 1m 혹은 2m로 지오폰(진동 측정기)를 설치하여 지오폰에 측정되는 진동을 기록	
3	GPR 탐사	강당지, 강당 동서편 건물지 중금당지, 목탑지, 중문지, 남회랑 서측, 남회랑 동측 남문지	· 일직선상으로 GPR 안테나를 지표면에 밀착시켜 끌며 자료 획득	· 비접촉식으로 유구 훼손 없음
4	동적 콘 관입시험	강당지, 중금당지 목탑지와 주변 동회랑지, 중문지, 남문지	· 직경 3cm, 길이 5cm 정도의 콘을 금속봉에 연결하고, 금속봉에 5kg 낙하추를 자유 낙하시켜 타격하여 관입시킴	· 관입시험 완료 후 관입봉 회수
5	평판재하시험	중금당지 주변 목탑지 주변	· 40cm×40cm 넓이의 표층의 상부 잔디를 제거한 후, 직경 30cm의 금속판에 10~15ton의 하중을 가함	· 중장비 진입 · 재하시험 완료 후 제거된 표층 원상 복원

(4) 신청인 의견

- 황룡사 유구 보호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 확보 필요.

라. 참고사항

- 경주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황룡사 제4차 심화연구(기초구조연구 학술용역/'15.12.4~'17.6.30.)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수행중에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물리탐사 후 재검토

24. 남양주 광릉 내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내외 가공선로 지중화 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남양주 광릉 내·외 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가공선로를 지중화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남양주 광릉(사적 제197호)
 - 소재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수목원로 354
- (3) 신청내용<가공선로 지중화 사업>
 - 사업면적 : 2,311㎡
 - 사업내용
 - 신설 : 전력관로 합성수지 파형관 2,302m / 전력맨홀 9개소 / 지상기기 1개소
 - 철거 : 전주 9본 / 가공케이블 구간 경과지
- (4) 신청인 의견
 - 광릉수목원 부지내 가공선로 유지보수가 불가하고 문화재 및 수목원 지역으로 설비보강과 정전예방활동 곤란하여 지중화 사업 필요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8.29/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상기 사업은 남양주 광릉 인근의 기존 도로를 따라서 현재 휘경원 권역을 관통하는 전선을 휘경원을 우회하여 지중화하는 사업임으로 오히려 문화재의 경관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
 - 다면 공사 중 도로에 접해있는 수목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안전 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준비할 것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5. 부여 홍산현 관아 내 금석문 이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내 금석문 및 비문 이전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홍산초등학교 앞에 옮겨졌던 홍산현 관아 금석문(홍산현감선정비 등)을 홍산현 관아 문화재구역 내로 재이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부여 홍산현 관아(사적 제481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209-3 외
- (3) 신청내용<금석문 재이전>
 - 위치 : 충남 부여군 홍산면 남촌리 209-3 외
 - 사업내용
 - 목적 : 문화재 지정 이전에 홍산현 관아 영역에 위치했던 금석문을 홍산초등학교 이전 당시 현재의 홍산초등학교 담장 밖으로 함께 이전함, 홍산현 관아 영역으로 재이전하여 진정성을 회복하고자 함
 - 수량 : 총 28기
 - 이전위치
 - 현감 관련 비석 : 관아 외문(집홍루) 외곽 담장 앞
 - 관찰사·암행어사 관련 비석 : 객사 담장 안쪽
 - 사업기간 : 2016. 8월 ~ 2018. 12월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23/문화재위원 ○○○, ○○대학교 ○○○)

- 현 홍산초등학교 외곽에 배열하여 전시 중인 비석군은 본래 홍산현 관아에 배열되어 있던 문화재임
- 현 동헌 외곽 담장에는 비석군 전체를 전시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관찰사 및 암행어사와 관련된 '선정비' 등은 객사 외곽담장에 전시하고, 현감과 관련된 '영세불망비' 등은 동헌 외곽 담장에 배열하여 전시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리단체 의견

- 본 사업은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관아 내 홍산현 금석문 이전설치를 통해 홍산현 관련 금석문(현감비 14개소, 근대비 14개소)을 홍산현관아에 이전하여 역사적 전정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이 있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

26.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5.11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16.8.10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일원
- (3) 신청내용<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09-9(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1차('16.5월) / 부결	2차('16.8월) / 보류	3차('16.9월) / 금회 신청	현 건물
대지면적	398.00㎡	좌동	좌동	
건축면적	190.68㎡	좌동	178.52㎡	
연면적	548.00㎡	좌동	529.01㎡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9.1m)	- 지하1층, 지상2층 (최고높이 8.35m)	좌동	- 지상2층(최고높이 9.1m)
	- 성벽 기저부로부터 2.0m 돌출	- 성벽 기저부로부터 1.25m 돌출	좌동	- 성벽 기저부로부터 2.0m 돌출
	- 보호구역 침해	좌동	- 지상2층부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이격	- 보호구역 침해
	- 한양도성 쪽 대지 경계로부터 2.24m 이격	좌동	좌동	- 한양도성 쪽 대지 경계로부터 1.66m 이격
용 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좌동	좌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2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신청 대상지는 한양도성 보호구역에 일부 저축되는 지점으로 성벽에서 24m 이격하여 급절토가 이루어진 상태임
- 신청 건축 규모의 층수는 기 2층에서 지하1층·지상2층으로 변경되고 건평도 확대되었으나, 층고는 0.75m 낮춰서 신청하였음
- 그러나, 신청 건물이 한양도성 보호구역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노출되는 2층 규모라도 보호구역에서 이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의견

- 신청 부지는 대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건축계획상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건축물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문화재 보호구역 밖으로 최대한 이격하여 건축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 요망
- 건축물 층고를 축소, 건축물이 성벽 기저부 이하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한양도성의 경관회복이 가능한 안으로 검토 요망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27.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 농업용 관정 개발

가. 제안사항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사적 제212호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에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청주 상당산성 보호구역 내에 농업용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관정을 개발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청주 상당산성(사적 제212호)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내로 124번길 14(산성동)
- (3) 신청내용<농업용 관정 설치>
 - 위치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산성동 46-17(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농업용 관정(깊이 20m, 관경 50mm) 개발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28.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발굴조사범위 수목 제거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243호 「서울 석촌동 고분군」 내 정밀 발굴조사를 위해 해당구역 수목을 제거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석촌동 고분군 서쪽 시굴구역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하고자 해당구역 내 수목을 제거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5.8.12 원안가결(서울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석촌동 고분군(사적 제243호)
 -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
- (3) 신청내용<발굴조사범위 수목 제거>
 - 위치 :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248(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침엽수(소나무) 20주, 활엽수 7주, 기타 관목류
 - ※ 1987년 이후 유적 상부 매립·복토 후 식재한 수목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29. 연천 전곡리 유적 내 토피어리 식재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내에 동물 모양 토피어리를 식재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군이 유적지 볼거리를 위하여 토피어리(동물모형의 조경수목)를 식재 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1979.10.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178-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토피어리 식재>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번지(문화재구역)
 - 수량 및 규모 : 마운딩 복토 후 향나무 토피어리 50주 식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30.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 학교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광주시 소재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에 근린생활 시설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광주 조선백자 요지 주변의 분원초등학교의 특별실 및 다목적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적 제314호)
 - 소재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471-1 외
- (3) 신청내용<광주 분원초등학교 증축>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분원리 116{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기준	증축
대지면적	11,653㎡	좌동
건축면적	1,265.05㎡	약 343㎡
연면적	2,023.04㎡	약 686㎡
층수	지상 2층	지상 2층
높이	7.35m(옥탑 미포함)	7.35m(옥탑 미포함)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	평지붕	평지붕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선행

31.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고성군 소재 사적 제120호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고성 내산리 고분군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고성 내산리 고분군(사적 제120호 / 1963.1.21. 지정)
 - 소재지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188-10 일원
- (3) 신청내용<진입로 개설 및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남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산179{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개별심의)}
 - 건축개요
 - 대지면적 : 610.00m² (지적면적은 24,298m²)
 - 건축면적 / 연면적 : 121.47m² / 110.83m²
 - 층수 / 높이 : 지상 1층 / 5.95m
 - 구조 / 지붕 : 조적구조 / 경사지붕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32.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강화역사박물관 야외전시물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7호 「강화 부근리 지식묘」 주변 강화역사박물관에서 야외전시물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군이 강화역사박물관 주차장에 전시물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16.7.13 위원회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부근리 지식묘(사적 제137호 / 1964.7.11.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317
- (3) 신청내용<야외전시물 설치>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812 일원{문화재보호구역에서20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전시기간 : 2016.12 ~ 2017.12
 - 전시물품
 - 전투기 1대, 자주포 1대, 전차 1대, 장갑차 1대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8.12/문화재위원 ○○○)
 - 강화 부근리 지식묘는 사적 및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는 중요문화재로 당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0m 이격된 지점에 유적의 성격과 이질적인 조형물을 배치·전시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으로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33. 강화 외성 주변 장어 양어장 부지 조성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주변에 장어 양어장 부지조성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장어 양식장 부지로 조성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음식제공을 위해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2003.10.25 지정)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 (3) 신청내용<장어 양어장 부지 조성>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냇성리 610-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부지면적/신청면적 : 9,819㎡/9,100㎡
 - 양어장 : 총 10 개소(이동식 수차 10개 설치), 절토없이 성토
 - 공사방법 : 입출하를 위한 내부 진출입(너비=4m)로 및 내부 토사 경계 설치(높이=2m, 너비=1m) ※ 현수위 1.5m
 - 성토량 : 2,017.2㎡
 - 구조물 : 이동식 수차(500*200) 와이어고정 방식
- (4) 신청인 의견
 - 본인은 인근에서 장어 집을 운영 중에 있으며 강화를 찾는 관광객 및 여행객들에게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34.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창녕군 소재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주변 단독주택을 추가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건축규모를 당초 주택 1동에서 2동으로 변경
- 2015. 10. 28 문화재소위원회 허가받은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사적 제514호 / 2011.07.28. 지정)
 - 소재지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송현리 일원
- (3) 신청내용 <건축규모 변경>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 534-2{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8m 이격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단독주택 1동을 동일 필지내 2개동으로 변경

구분	기허가내역	변경신청내역		비고
	건축물1	건축물1	건축물2	
대지면적	1,402㎡	701㎡	701㎡	대지 분할 후 각각 필지별로 단독주택 신축
건축면적	110.94㎡	110.94㎡	100.15㎡	
연면적	110.94㎡	110.94㎡	99.51㎡	
층수	지상1	지상1	지상1	
높이	5.7M	5.7M	4.8M	

※ 시·발굴조사 완료: 유구 없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35. 제주 삼성혈 주변 오피스텔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주변에 오피스텔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제주 삼성혈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사항임.
- 2016년 4월 허가('16.04.28)받은 사항에서 지하 1층을 추가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제주 삼성혈(사적 제134호 / 1964.06.10. 지정)
 - 소재지 :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1313번지
- (3) 신청내용<오피스텔 신축>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이도일동 1244-1[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390m/5구역 {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단, 10층 이상 개별심의)}]
 - 건축개요

구분	1차(2016.7.27.)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1,517.80㎡	1,517.80㎡	변경없음
연면적/건축면적	17,663.72㎡/1,205.71㎡	17,903.09㎡/1,175.48㎡	연면적 증가(239.37㎡) 건축면적 감소(30.23㎡)
층수/높이	지상17층,지하2층/54.5m	지상17층,지하3층/54.5m	지하1층 추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19/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제주 삼성혈에서 380여m 이격된 5구역(도시계획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단, 10층 이상 개별심의)에 기존 허가받은 지하 2층, 지상 17층, 높이:54.5m의 업무시설을 지하 3층, 지상 17층, 높이:54.5m로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지상의 노출 정도가 같아 지하 1개층의 증가가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3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 사적 제320호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16년도 문화재위원회 제6차('16.06.08)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부결”(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제8차('16.08.10.) 사적분과 위원회에서 “부결”(신축 건물 높이 과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산 경상좌도병영성(사적 제320호 / 1987.07.18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중구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
- (3) 신청내용<공동주택 신축>
 - 위치 : 울산시 중구 남외동 158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80m 이격)
 - 건축규모

구분	1차('16.6월)-불허	2차('16.8월)-불허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251.00㎡	좌동	좌동	
연면적/건축면적	993.245㎡/166.05㎡	964.280㎡/좌동	734.762㎡/168.46㎡	
높이/규모	23.45m/지하 1층, 지상7층	22.4m/지하 1층, 지상 6층	19.8m/지하 1층, 지상 5층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7.20/문화재위원 ○○○, ○○○)
 - 병영성 부근의 부지에 최고높이 22.4m(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사안으로 높이가 과도해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신축 건물 높이 과다

37. 강원 영월부 관아 내외 경관조경 조성

가. 제안사항

강원도 영월군 소재 사적 제534호 「영월부 관아」 내외에 경관조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영월부 관아에 경관 조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원 영월부 관아(사적 제534호 / 2016.03.08. 지정)
 - 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영월읍, 영흥리 984-1 일원)
- (3) 신청내용<경관조경 조성>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중앙로 61(문화재구역 및 인접)
 - 사업내용
 - 영월부 관아 외삼문과 협문사이 남쪽담장 외부
 - 소나무 11주 (R20×H5 : 5주, R18×H4 : 6주) 및 잔디(101.4m²) 식재
 - 자규루 주변
 - 소나무 3주(R18×H4), 모란(H0.5-15주), 구절초(62.29m²) 식재
- (4) 신청인 의견
 - 영월부 관아 외삼문과 협문사이 남쪽 주변 소나무 식재로 경관개선
 - 자규루 주변으로 경사지 토사유출 및 침식 방지, 내부경관 정비
 -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역사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밭굴 필요

38. 구미 황상동 고분군 내외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사적 제470호 「구미 황상동 고분군」 내외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미 황상동 고분군의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미 황상동 고분군(사적 제470호)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황상동 산 68번지 외
- (3) 신청내용<도시계획도로 개설>
 - 위치 : 경북 구미시 황상동 415-6외(문화재구역, 2구역, 3구역)
 - 사업내용
 - 도로개설(L=161m, B=6m), RC옹벽(143m)
 - 토공 : 흙깎기 470m³, 사토량 494m³, 터파기 2,729m³
 - 배수공 : PE다중벽관(D250mm) 5본, 맨홀(1호) 3개소
 - 포장공 : 158m²(표층), 207m²(기층)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9.01/문화재전문위원 ○○○)
 - 허가 신청의 사업내용은 문화재구역의 보존과 역사문화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업위치가 고분과 너무 근접해 있고 일부는 문화재구역을 침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옹벽의 신설과 토공의 내용은 문화재 구역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구역 훼손 우려

39. 경주 동궁과 월지 내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원 관로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18호 「경주 동궁과 월지」 내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원 관로를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동궁과 월지 문화재구역 내 버스정류소 안내기 전원 관로 설치가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387-1
- (3) 신청내용<버스정류소 안내기 전원 관로 설치>
 - 위치 : 경북 경주시 인왕동 506-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버스정류소 안내기 설치 : 폭 0.6m, 높이 2.3m
 - 전기 관로 포설(Φ28 PE관 2공) : 23m
 - 굴착 : 길이 23m, 폭 0.7m, 깊이 0.7m
 - 포장 : 길이 23m(보도블록 23m), 폭 1.2m
- (4) 신청인 의견
 - 경주 시민 및 관광객에게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수용 분산을 위해 필요함.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필요

40.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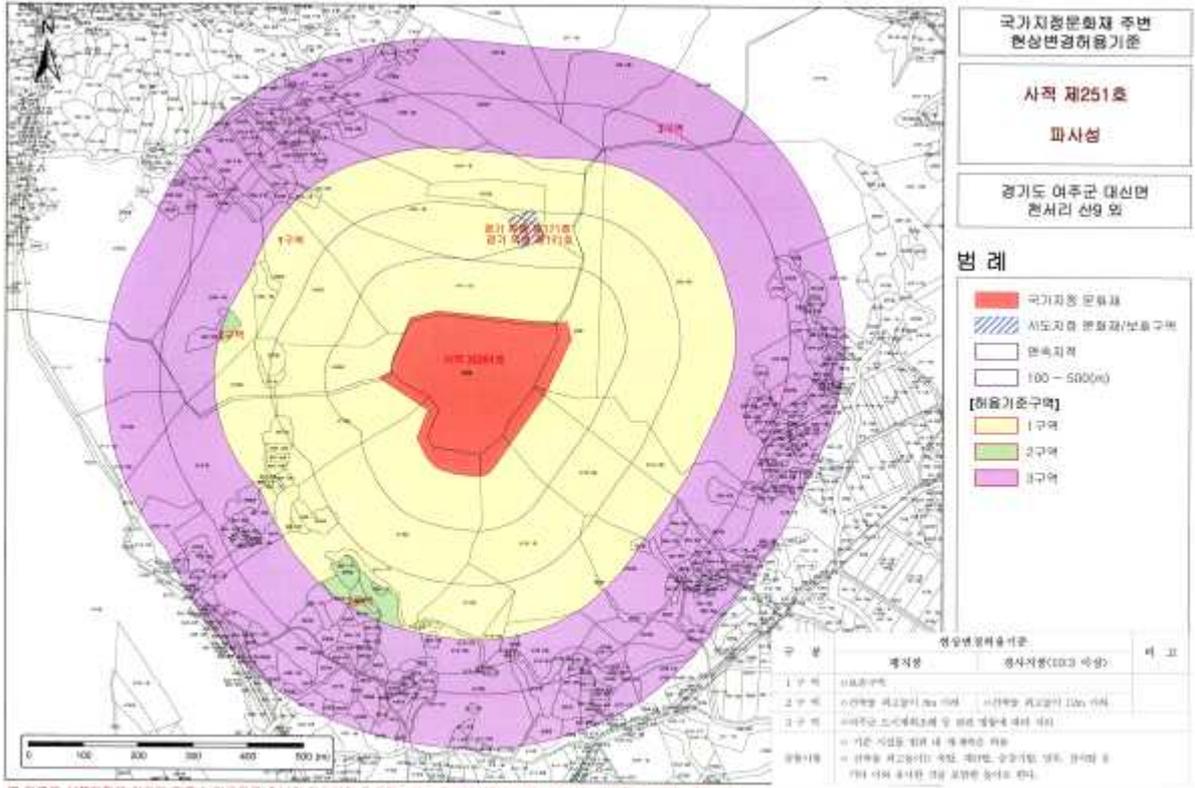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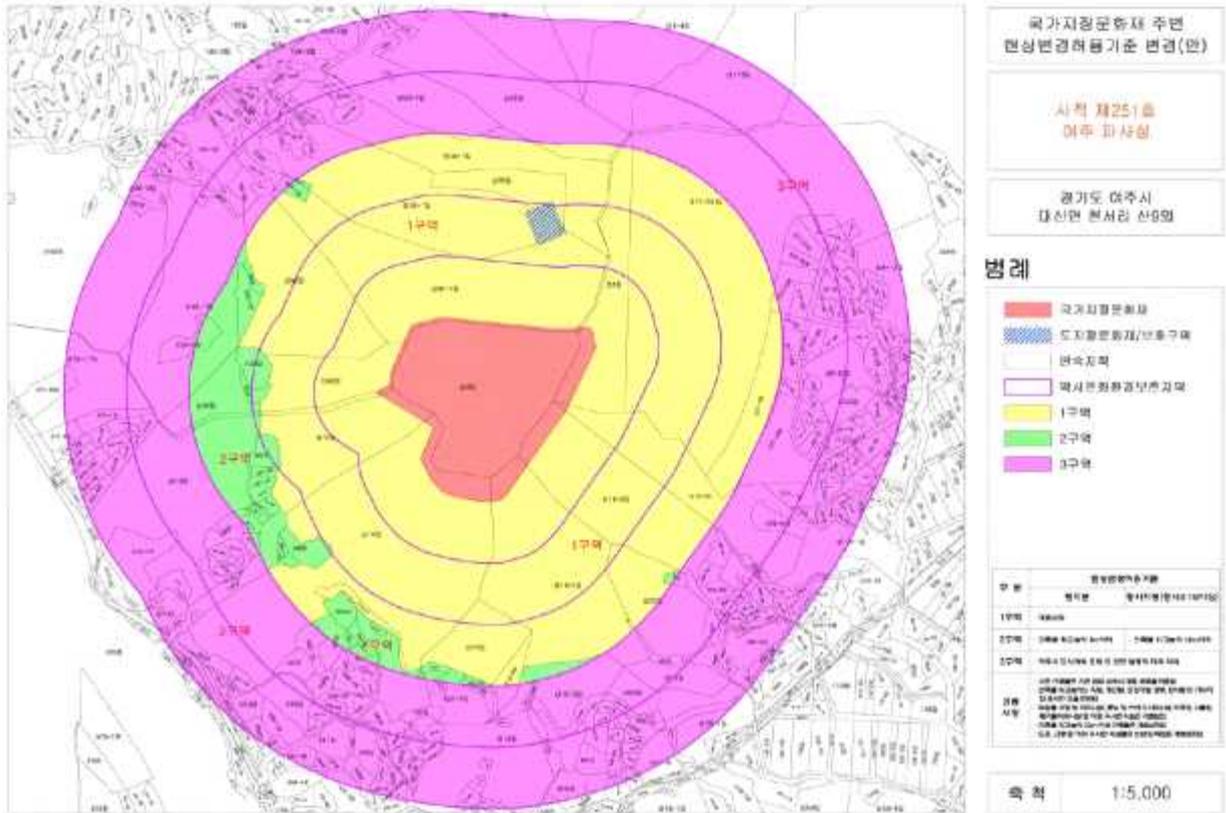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파사성(사적 제251호 / 1977.7.21.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8-10 일원
- (3) 신청내용<여주 파사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주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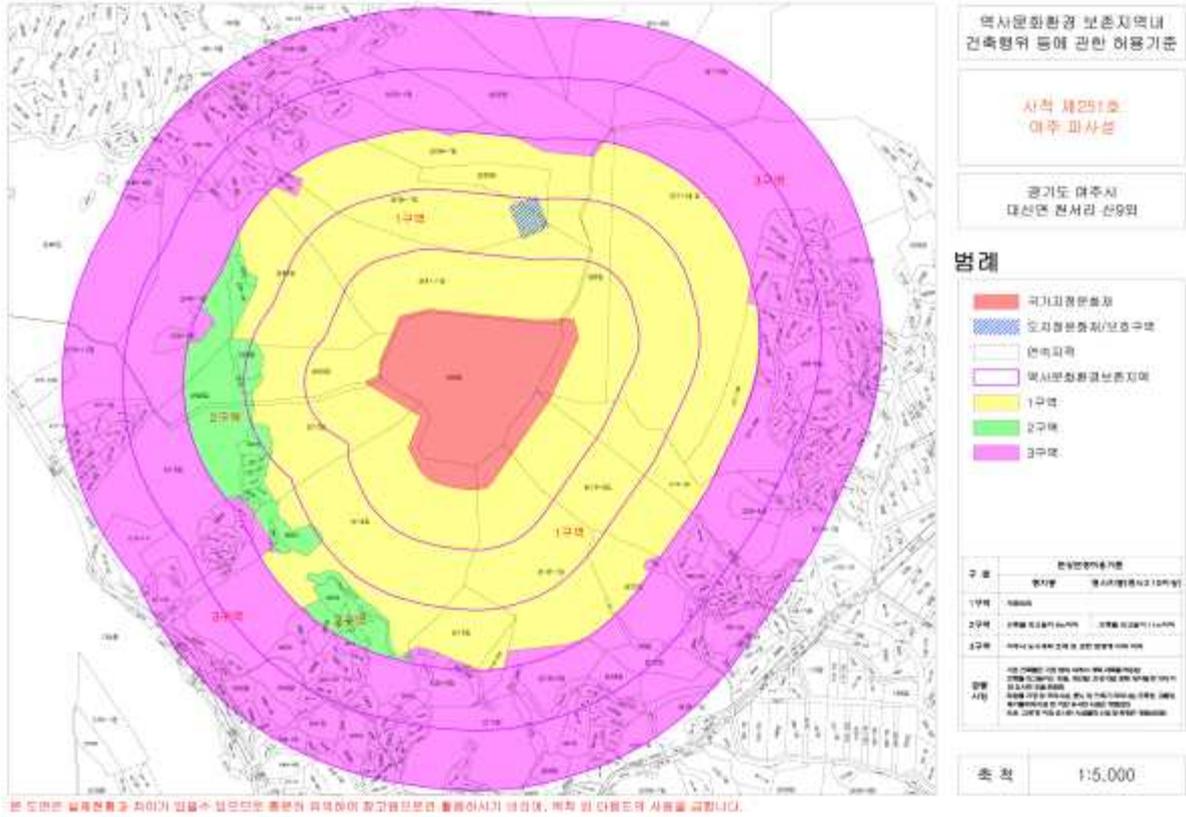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9.02/문화재전문위원 ○○○)

- 기존에 허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사항으로, 일부는 지적 선을 따라 구역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허용기준 높이와 공통사항은 타 허용기준과 동일한 형식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41.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여주시 소재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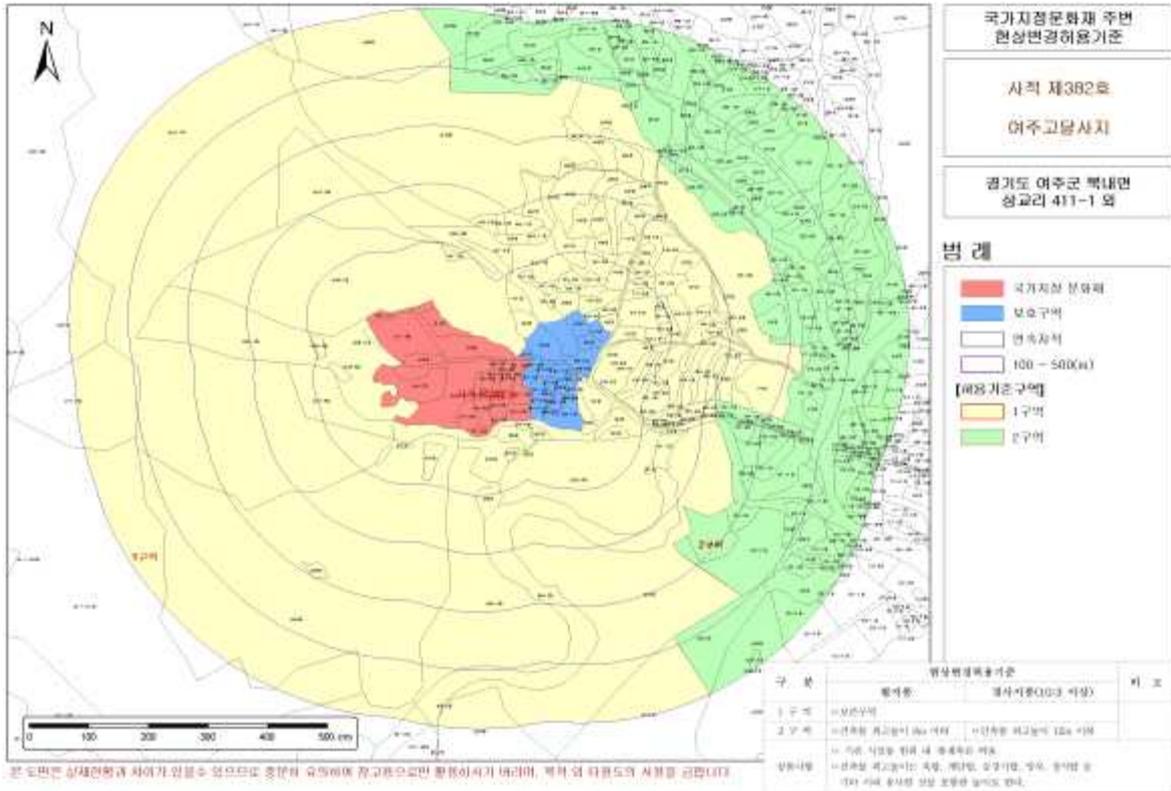
나. 제안사유

- 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을 검토기준에 따라 재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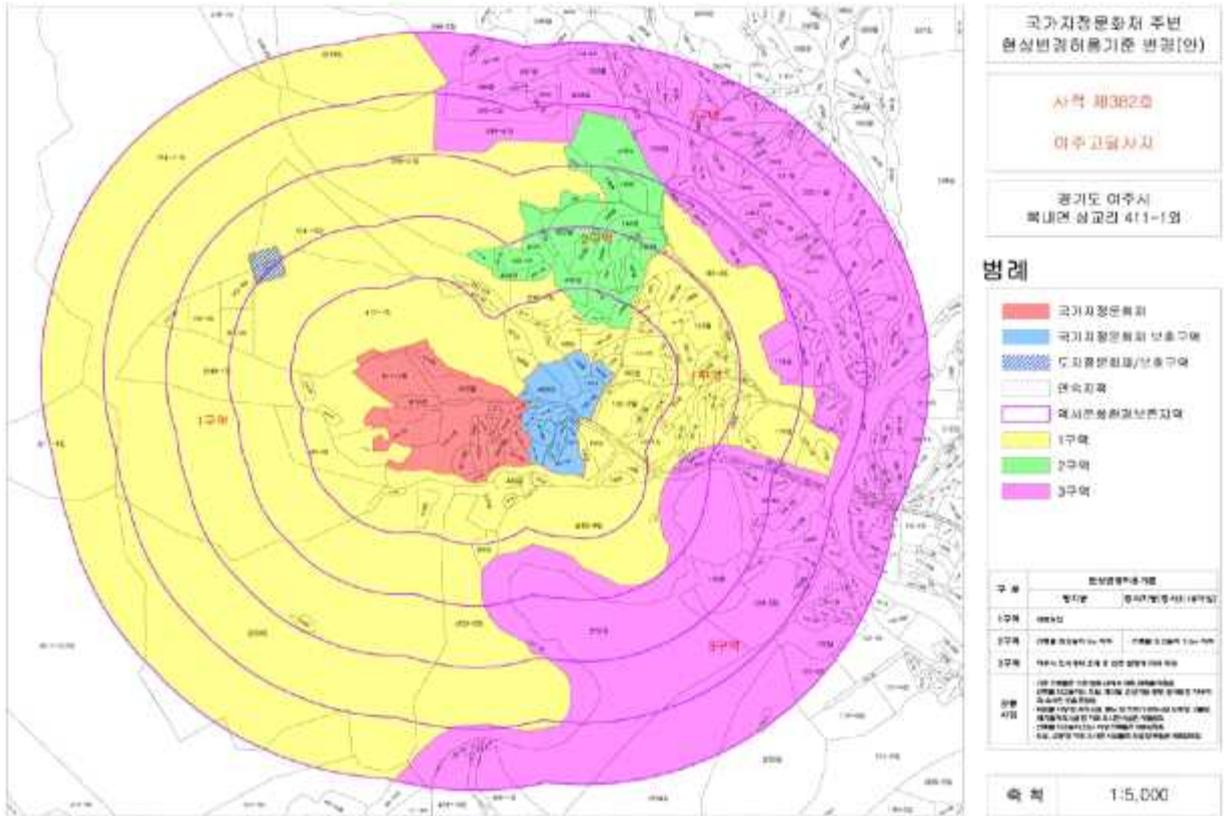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여주 고달사지(사적 제382호 / 1993.7.23. 지정)
 - 소 재 지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일원
- (3) 신청내용<여주 고달사지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안>
 - 현행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부	경사지부(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의 건축물은 개별 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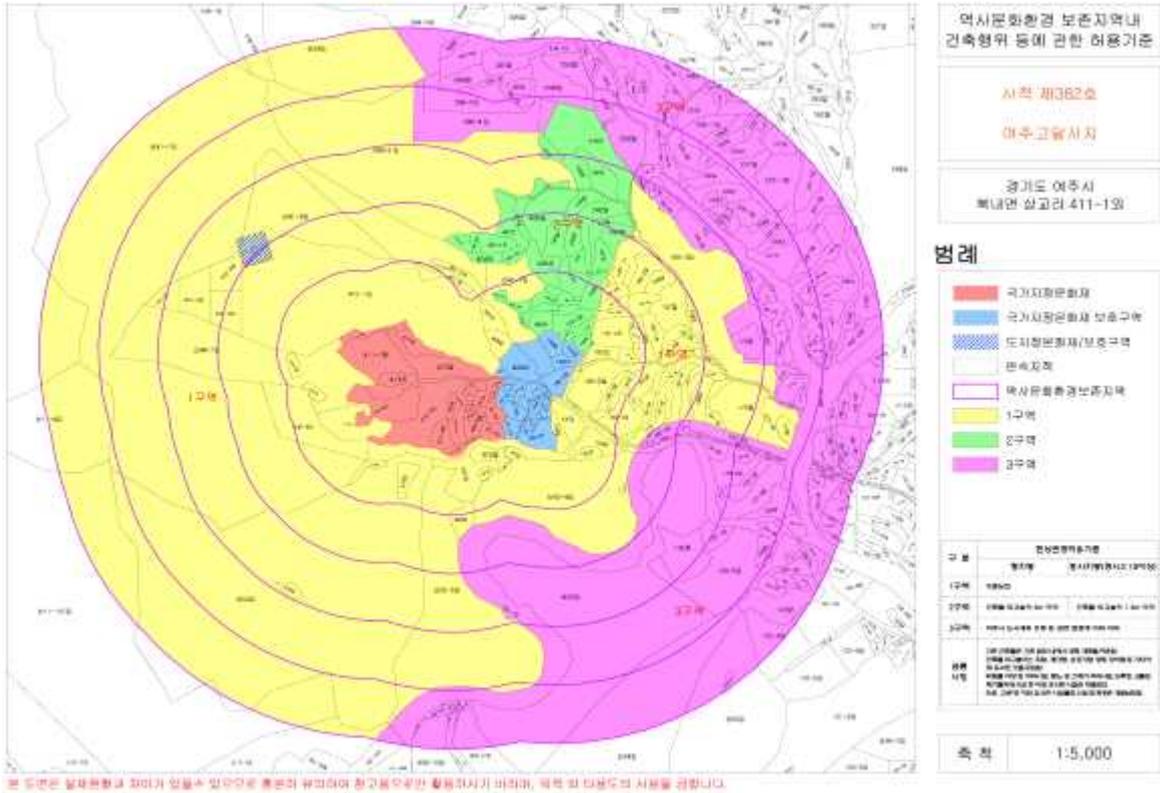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9.02/문화재전문위원 ○○○)

- 기존에 허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한 사항이나, 고달사지 측면 능선으로 후사면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변 허용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허용기준 높이와 공통사항은 타 허용기준과 동일한 형식과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부	경사지부(경사 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구역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6-09-042

1. 서울 한양도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의 내사산 일부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 청운대)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중구, 성북구 일원
- (3) 지정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문화재구역 : 240필지 26,557.15m²
 - 문화재보호구역 : 2,140필지 579,199.47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문화재보호구역) 총 13필지 33,460.96m²
 - 인왕산 곡성 구간 : 4필지 6,144.17m²
 - 인왕산 정상 구간 : 4필지 14,492.29m²
 - 백악산 정상 구간 : 2필지 4,348.08m²
 - 백악산 곡성 구간 : 3필지 5,584.33m²
 - 청운대 구간 : 2필지 2,892.09m²
 - 추가지정 후 지정면적
 - 문화재구역 : 240필지 26,557.15m²
 - 문화재보호구역 : 2,153필지 612,660.43m²

(4) 신청사유

-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내사산 일부 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은 자연지형을 활용한 한양도성의 축조 특성을 잘 보여주는 구간으로 보존될 가치가 충분함. 이에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16.7.8)의 사전 심의를 거쳐 동 구간을 아래와 같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16.08.18, 08.25/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서울 한양도성 사적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참조
- (2)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검토결과
 - 일 시 : 2016.7.8
 - 회의결과 : 원안동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서울 한양도성(서울 漢陽都城) 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조사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 8. 18(목), 25(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자연지형을 활용한 도성 축조 특성을 잘 보여주는 한양도성 내사산 일부구간(북악산 정상과 곡성, 인왕산 정상과 곡성)이 구간을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서울 한양도성
 - 검토의견 : 서울 한양도성의 내사산 일부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서울 한양도성(서울 漢陽都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백악지역과 인왕지역은 산지지역으로 성벽과 성곽시설(곡성, 성랑, 순심로)로 성문과 문루(북쪽의 대문인 숙정문, 북서쪽의 소문인 창의문), 각자성석을 포함하고 있다.
- 성벽은 태조대 조축된 이래로 세종 및 숙종대 대대적인 수축이 있었으며, 이후 영조대, 정조대, 순조대, 고종대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수축이 이루어졌다.
- 각자성석은 성돌에 새겨진 현장기록으로 성벽의 구간별로 축성에 참여한 관리자, 축성시기, 참여인력, 동원지역 등을 새겨놓았다. 각자성석은 국가의 기록물과도 일치하여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한양도성은 조선 왕도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수도의 권위를 드러내며 외부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도시 규모의 성곽유산이다. 한성부-경성부-서울특별시에 이르기 까지 서울의 600년 역사와 함께 해온 한양도성은 좁게는 도시를 둘러싼 성곽과 성문을 지칭하지만 넓게는 그 안의 공간까지 아우른다.
- 평균높이 약 5~8m, 전체 길이 약 18.6km에 이르는 한양도성은 한국 고유의 축성기법과 지단 장인기술을 바탕으로 구축된 역사 문화 도시 서울의 랜드마크이다. 4개의 대문과 4개의 소문을 두었으며 이 밖에도 2개의 수문, 5개의 치, 2군데의 곡성, 봉수대 등의 시설이 있다.
- 1396년(태조 5), 백악(북안산)-낙산(낙타)-남산(목멱)-인왕산의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된 한양도선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수축과 보수를 거듭하면서 511년 동안 그 원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성벽과 성문이 훼손되고, 해방 이후에는 6.25 전쟁과 서울의 지속적인 팽창 과정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다. 그러나 한양도성 복원사업은 1975년 삼청지구를 시작으로 총 8개 지구(삼청, 성북,

광희, 남산, 청운1, 청운2, 삼선, 동승) 로 구역을 나누어 한양도성 전 지역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2014년까지 약 70%가 보수, 복원되었다.

- 백악 곡성과 인왕 곡성은 지형여건에 맞춰 치성을 길게 늘인 형태로 보이는 방어상의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다. 한양도성 전 구간 중 곡성은 인왕 서측과 백악 동측 2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 또한 서쪽 인왕지역에는 화강암과 계속으로 이뤄진 자연이 형성되어 있다. 최근 인왕 아래 수성동계곡이 복원되면서 정선의 그림처럼 계속을 따라 인왕으로 이어지는 경관이 회복되었다.
- 백악의 남사면인 도성 내의 북측지역은 성곽 내에서 가장 좋은 환경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궁궐, 관청, 고급주택지가 형성되었고 남산의 북사면은 그 반대의 이유로 서민주거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만나는 지점은 도시의 중심으로서 상업기능이 들어서면서 조선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서울 한양도성은 1394년 태조의 한양 천도 후 국도(國都) 방어를 위해 1396년(태조5) 초축된 '도성'으로 세종과 숙종, 순조 때 개축된 후 오늘날까지 조선시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곽 축조기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 현존하는 유사유적 중 세계적으로 최장기간(514년 :1396~1910) 도성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풍수사상에 기반 해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곽 안쪽에 판축층이 조성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독창적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특별한 역사도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한양도성은 지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성벽과 대지를 일체화 시킨 구조물로서, 산지와 구릉지와 평지에 걸쳐 축성된 조선의 수도 성곽이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축조된 장소별 지형 및 주변 환경과 입지에 따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북악산 정상·곡성 구간, 인왕산 정상·곡성 구간, 청운대 구간은 암반과 성벽 자체가 일체화된 구간으로서, 한양도성의 일반적인 보호구역 설정기준보다 더 넓게 지정하여,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상의 등재구역과 문화재지정·보호구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6.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대상 및 범위

가. 전체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4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5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578.16		
6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7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8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9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10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13,568.64		
11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12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13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계		13필지		2,944,357	33,460.96	총 15필지 중 두 필지(종로구 삼청동 산2-27,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중복	

1) 인왕산 곡성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4,244.33		
2	종로구 무악동	산3-1	임야	2,777.0	495.62		
3	종로구 누상동	산1-29	임야	99,140.0	693.96		
4	종로구 무악동	산3-4	임야	50,493.0	710.26		
계		4필지		770,130	6,144.17		

2) 인왕산 정상 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정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옥인동	산3-39	임야	3,300.0	1,998.49		
2	종로구 옥인동	산3-14	임야	142,806.0	2,950.15		
3	종로구 부암동	산22-1	임야	140,727.0	219.34		
4	서대문구 홍제동	산1-1	임야	617,720.0	9,324.31		
계		4필지		904,553	14,492.29		

3) 백악산 정상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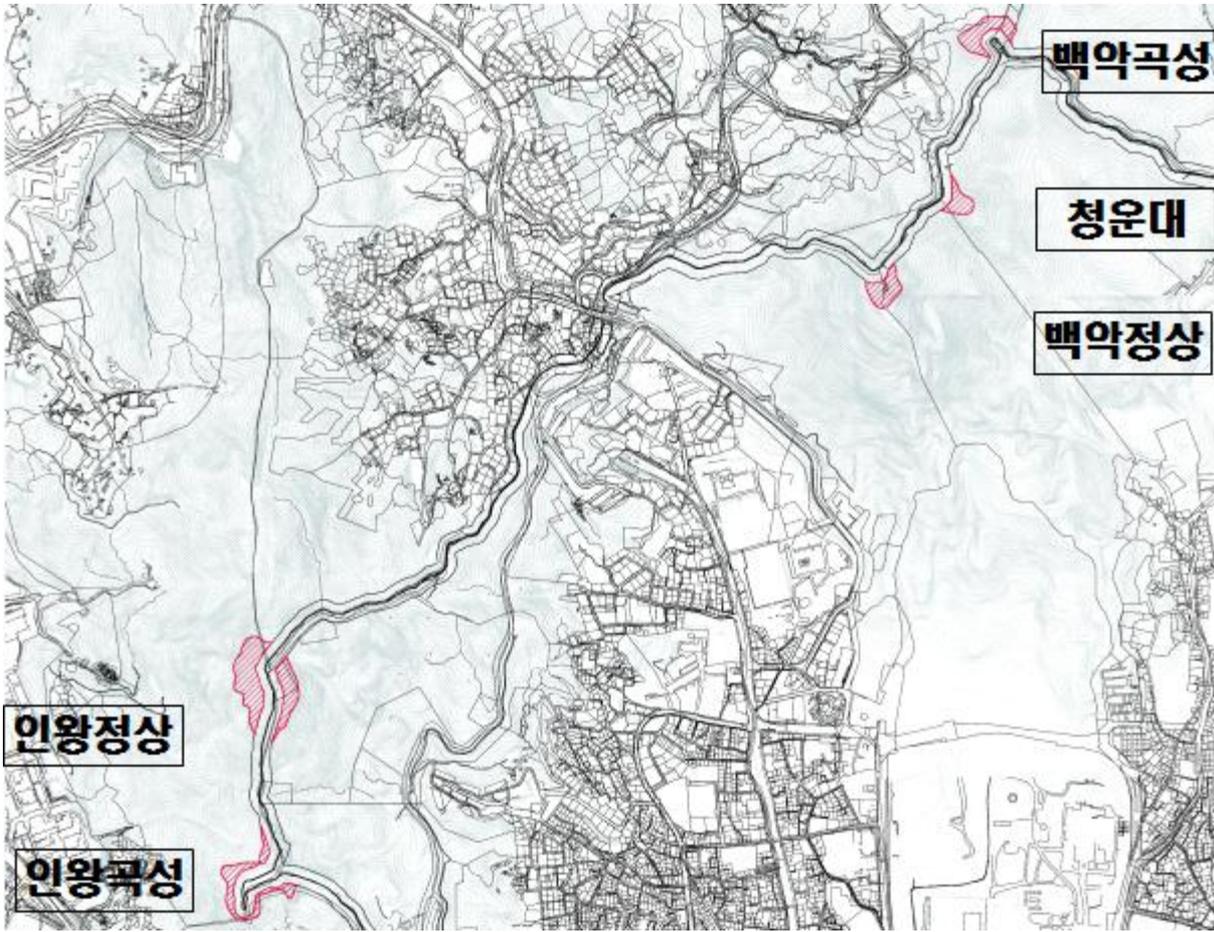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2,431.48		
2	종로구 청운동	산1-1	임야	254,940.0	1,916.60		
계		2필지		473,743	4,348.08		

4) 청운대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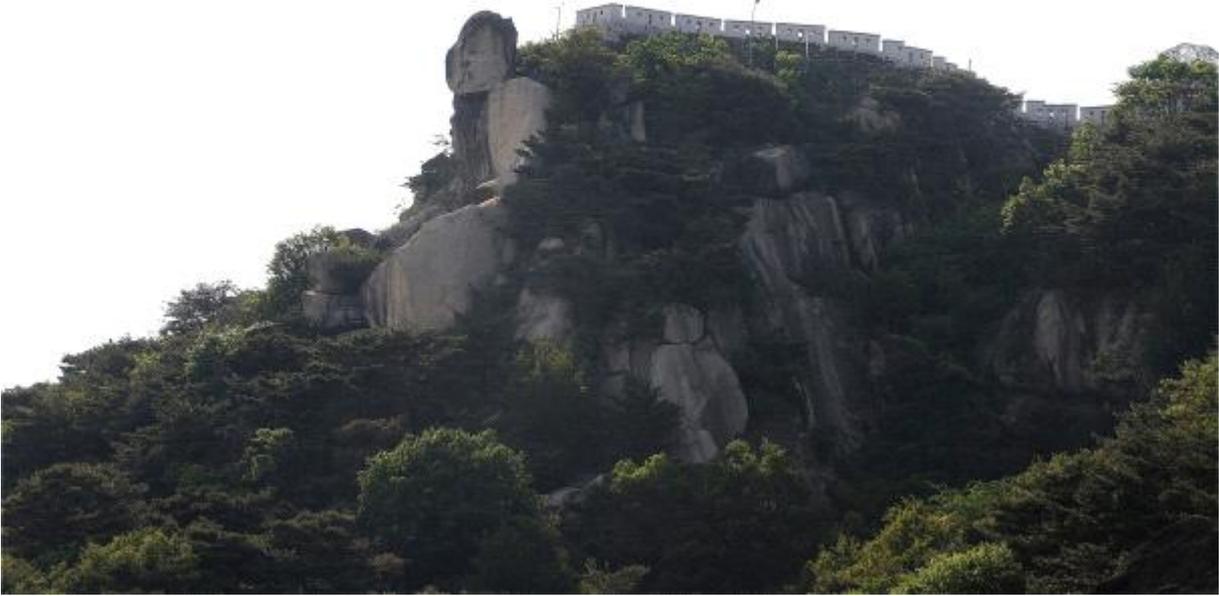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삼청동	산2-1	임야	672,973.0	2,745.41		
2	종로구 삼청동	산2-27	임야	218,803.0	146.68		
계		2필지		891,776	2,892.09		

5) 백악산 곡성 구간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종로구 부암동	산2-1	임야	81,719.0	5,123.56		
2	종로구 부암동	1	전	2,886.0	239.39		
3	성북구 성북동	산25-1	임야	656,073.0	221.38		
계		3필지		740,678	5,584.33		



문화재 보호구역 추가지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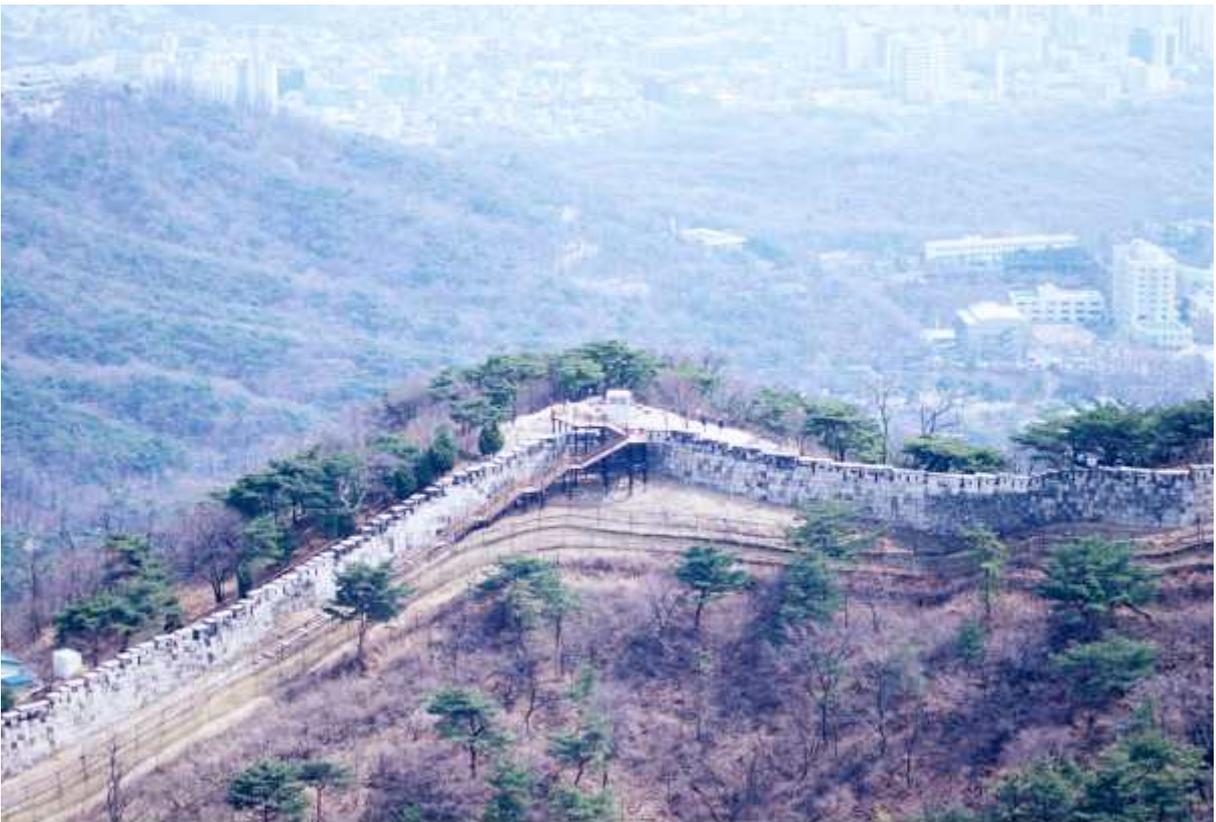
인왕산 곡성 구간



인왕산 정상 구간



백악산 정상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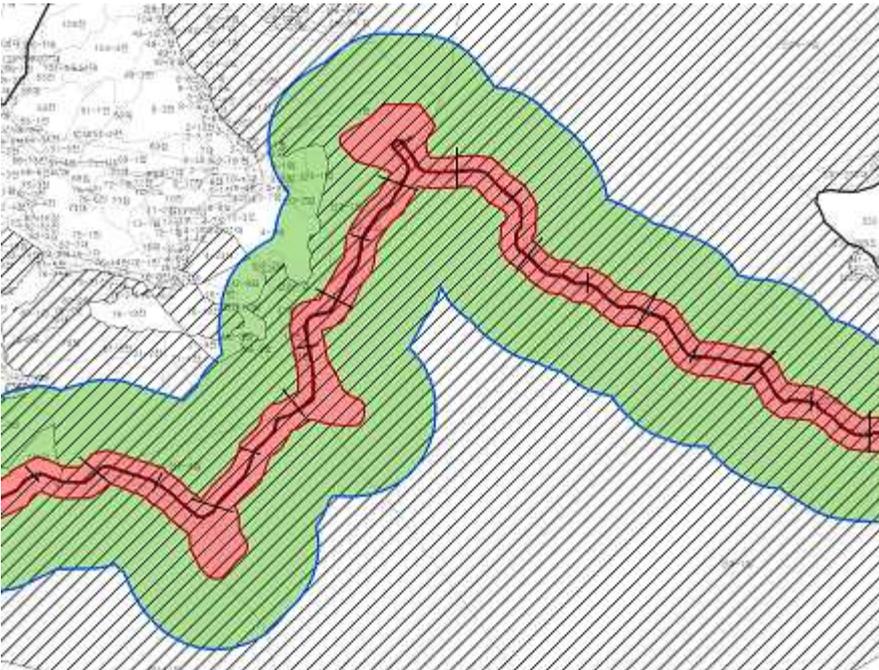
청운대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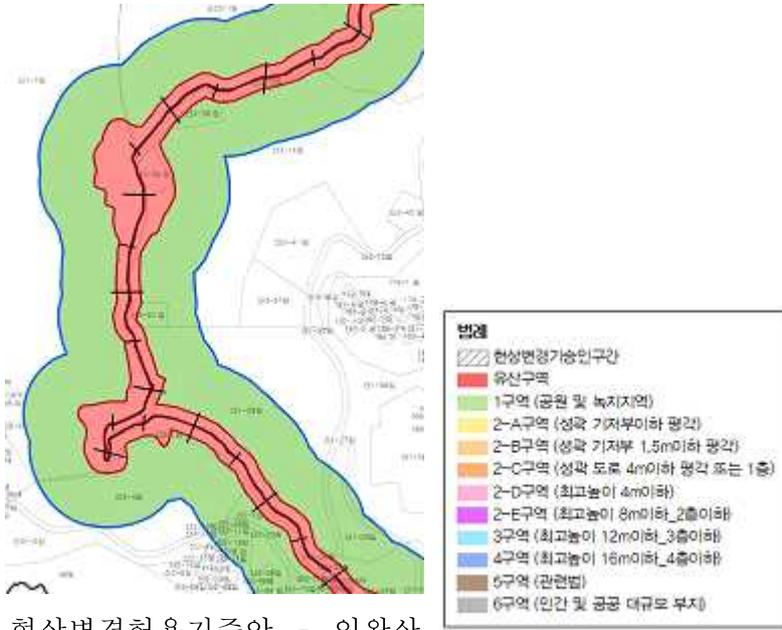
백악산 곡성 구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검토의견 : 일부 보호구역이 증가하나 주변은 산림으로 연접구역의 허용기준을 차용하더라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것으로 판단됨.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백악산 정상 및 곡성, 청운대 구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 인왕산 정상 및 곡성 구간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가. 관리 현황

한양도성은 조축(태조 5년) 이래로 세종, 숙종대의 대규모 수축공사를 거쳐 영조, 정조, 순조, 고종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성벽 공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관리되어 왔으나 일제강점기 성벽의 훼손을 시작으로 근대화 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성벽의 보존이 위협¹⁾받았다. 1960년대 이후 지속적인 복원사업을 통해 옛 한양도성의 모습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성곽 복원사업은 창의문 일대의 보수공사(1961)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과거에는 주로 훼손된 성벽을 복원하는 사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유지하고 보존하려는 노력으로 원형보존과 고고학적 발굴이 병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한양도성 현황조사 및 보존·관리·활용계획의 추진현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서울城郭(1976)' 보고서 : 본격적인 성곽복원사업과 함께 성곽의 보존실태를 정리
- ② 서울성곽 중장기 종합정비 기본계획(2009) : 한양도성의 유산 및 주변 도시현황을 분석하고 성벽의 훼손·매장·멸실 구간에 대한 고증을 바탕으로 복원계획과 관련 사업을 제시
- ③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2012): 한양도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을 제시, 한양도성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

1) 1920 중반 이후 남산 회현자락, 동대문운동장(현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 성곽을 비롯하여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성곽구간이 훼손됨으로써 한양도성의 보존이 위협받게 되었다.

- ④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2013) : 한양도성의 보존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마련
- ⑤ 한양도성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2013) : 한양도성 인접지역의 주거지 실태분석 및 합리적 관리방안 연구

나. 정비 및 활용계획(안)

1) 보존관리의 방향

- ① 한양도성 전구간(18.627km)을 보존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적의 상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존관리 원칙을 수립한다.
- ② 현재의 법제도적 관리가 한양도성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한다.
- ③ 국가지정문화재로 미지정된 공공부지 또는 사유지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개방 및 매입을 추진한다.
- ④ 한양도성의 현황을 유형별로 원형구간, 복구 및 복원구간, 매장구간, 발굴유구구간, 유구이전구간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특성을 관리한다.



2) 유형별 보존관리 원칙

- ① 원형구간은 성벽원형과 현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도면화 및 역사적 사료 수집 등을 실시한다. 구조적으로 위험 구간은 원형의 보호유지를 위해 보강조치를

하고 계측관리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② 복구(Restoration) 및 복원(Reconstruction)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실시하되 고증이 미흡한 상태로 복원된 구간에 대해서는 구조적 안전진단을 통해 해체 또는 재복구를 검토한다.
- ③ 매장구간에 대해서는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기록되고 유지관리 되도록 한다.
- ④ 발굴 유구구간은 유구를 현장에서 보존강화처리하고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만 복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원형에 대한 고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형이 손상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원을 검토한다.
- ⑤ 유구 이전구간에 대해서는 유구의 원위치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으로 본래 위치에 이전하도록 한다.
- ⑥ 유산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기존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철거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한양도성의 성곽과 내측 판축층을 훼손하고 있거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경우 철거한다.
 - 한양도성의 역사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은 건물의 안전성과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한다.
 - 한양도성의 역사성을 증거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물은 한양도성의 역사와 가치를 전시하거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다. 한양도성 중장기 보존관리 계획

1)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의 방향

한양도성의 수평투영 길이는 18.627km이며 이중 약12.4km가 사적 제 10호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약 608m(월암구간, 남산 회현구간, 이간수문구간)의 유적이 발굴되어 354m가 복원된 상태이다. 이들 발굴 유적은 태조대로부터 세종, 숙종, 순조대에 이르는 성벽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어 한양도성의 원형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현재 문화재청과 서울시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 발굴유적 구간, 그리고 잠재적으로 지하에 유구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 멸실·훼손 구간에 대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중장기 보존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첫째,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법과 세계유산 제도의 기준을 고려한 관리구역의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다.

둘째, 훼손 및 멸실 구간에 대한 보존관리를 위해 도시건축법제를 적극 활용한다.

셋째, 지하에 유구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시·발굴을 시행하고 유적이 발견되면 보호조치를 마련한다. 그리고 사적으로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2) 세부 보존관리계획

- ① 문화재 보호법과 세계유산 제도의 기준을 고려한 관리구역의 설정과 지침 마련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대한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 (현재 수립중)
 - 세계유산 제도를 고려하여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구역별 보호관리계획 마련(세계유산 등재 신청서 작성 및 보호관리계획 마련 중)
- ② 도시건축 법제를 활용한 보존관리
 - 훼손·별실구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현재 정동지구단위계획, 명륜지구단위계획 등 수립중
 - 한양도성 내부의 관리는 서울시 역사도심관리 기본계획을 활용
 - 사적 미지정 구간에 대한 유적과 주변 경관관리는 서울시 경관기본계획을 활용 (경관법)
 - 한양도성 주변 성곽마을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성곽마을 조성 종합계획(도시정비법)을 활용
- ③ 사적 지정구간의 확대
 - 사적 미지정구간 중 사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을 유형화하여 우선순위를 설정 후 사적 지정 확대 추진(1단계: 복원 완료 후 사적 미지정 구간, 2단계: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에 기여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공공소유 구간, 3단계: 한양도성의 진정성과 완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민간점유 구간)
 - 지하유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시행
 - 유구 발견시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

9. 종합 의견

- 서울 한양도성은 1394년 태조의 한양 천도 후 국도(國都) 방어를 위해 1396년(태조5) 초축된 '도성'으로 세종과 숙종, 순조 때 개축된 후 오늘날까지 조선시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곽 축조기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다.
- 현존하는 유사유적 중 세계적으로 최장기간(514년 :1396~1910) 도성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풍수사상에 기반해 내사산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성곽 안쪽에 판축층이 조성되는 등 지형과 일체화된 독창적 축조기술을 보여주고 있으며, 내사산의 굴곡과 도성 안팎이 함께 조망되는 특별한 역사도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한양도성은 지형과 지반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기술로 성벽과 대지를 일체화 시킨 구조물로서, 산지와 구릉지와 평지에 걸쳐 축성된 조선의 수도 성곽이다. 따라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축조된 장소별 지형 및 주변 환경

과 입지에 따른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 따라서, 금회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북악산 정상·꼭성 구간, 인왕산 정상·꼭성 구간, 청운대 구간은 암반과 성벽 자체가 일체화된 구간으로서,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1966.12.27. 지정)
 - 소재지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보호구역 추가지정 신청 면적
 - 울산시 울주군 동부리 239-1번지 등 9필지 5,270㎡
- (4) 신청사유
 - 신청부지는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 및 향후 언양읍성의 활용·관리에 유용할 것임.

라. 지정조사보고서 : 향후 제출

현지조사 및 조사자

- 조사(현지)일자 : 2016.09.01.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울주 언양읍성 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 조사보고서(별첨자료)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09.01(목)
- 조사자 : 문화재위원 ○○○, 문화재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사적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울주언양읍성 내 보호구역을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울주 언양읍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현황

- 언양읍성의 입지는 다른 대부분의 읍성처럼 진산과 수계를 가지고 있는데, 북쪽의 고현산을 진산으로 하고 남쪽의 남천(태화강 상류)을 수계로 하고 있다.
- 성곽의 보존상태를 보면, 동문과 남문 사이의 동측 부분과 서남측 부분이 많이 유실되었으나, 일부에는 기단석과 성곽이 양호하게 남아 있어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 남측의 성벽은 주택에 가려져 있지만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잔존하고 있으며, 상부는 많이 무너져 내려 있지만 여장을 제외한 문지, 웅성지, 치성, 체성 등 성의 전체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잔존해 있다.
- 성내부에는 현재 남아있는 시설물(관아 등)은 없지만, 『언양읍지(1919)』 공해(公廨)조를 참조하면, 건물 상호간의 관계는 알아볼 수 있으나 그 구체적인 위치의 추정 이 현 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
- 현재의 보존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해방이후 남문지를 중심으로 체성 상부에는 전체적으로 민가가 조성되면서 파괴가 가속화되었으나,
 - 해자부분은 침수로 인해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고 미나리 밭 등으로 경작되면서 전체적인 구조는 비교적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1990년 5월 24일 민가가 분포하지 않는 북쪽 체성부분과 동쪽 체성부 동문지 북쪽 지점, 서쪽 서문지 북쪽 체성부분만 문화재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나머지는 지정구역에서 해제됨으로 인해 언양읍성 내·외부가 급격히 훼손되면서 문화재도 심하게 훼손되고 있어,
 - 울산광역시에서는 훼손된 문화재의 정비·보수 방안 강구를 위해 2002년도에 동아대학교 박물관팀과 울산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공동으로 학술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언양읍성의 뛰어난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여 언양읍성 종합정비복원 방안을 제

시하였고

- 2011년 8월 19일 언양읍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언양읍의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과 우리군의 적극적 의지로 나머지 성곽부분과 남문지 복원에 필요한 부지가 문화재 구역으로 사적 추가 지정됨에 따라, 2012년 3월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마무리 하여 언양읍성의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토지매입 등 추진중이며
- 2013년 8월에는 읍성 남문지 영화루를 복원 준공하였으며, 2014년 11월 19일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구.언양초등학교 일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연혁

- 고려시대 공양왕 2년(1,390년)에 토성으로 처음 축조하였다가 110년 이후인 조선조 연산군 6년(1500년) 당시 현감이었던 이담룡이 현재의 석성으로 축조하고 광해군 9년(1617년) 개축 및 개수되었음.

○ 유래

- 신라시대 경덕왕 이전의 거지화현은 현재의 언양읍성에서 동북방 5리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토성이 있었는데 둘레는 3,208척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신라 경덕왕 16년(757년)에 지금의 읍성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현치소(군 주둔지)를 옮기면서 명칭도 현양으로 고쳤으며, 이후 고려 인종(1123년~1146년)때에는 언양으로 고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 현재 위치의 읍성이 축조된 것은 고려시대 공양왕 2년(1,390년)으로 처음에는 토성을 축조하였는데 둘레가 1,417척, 높이가 8척이며 군창이 있었고 연못 4곳과 우물 2곳이 있었으며,
- 조선시대 연산군 6년(1,500년)에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으면서 그 규모가 3,064척으로 확장되었음을 《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기록되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 성 내부 연못에 대한 기록은 1,469년 간행된 《경상도속찬지리지》에만 나타날 뿐 다른 지리지에는 남아 있는 기록이 없으나 시문에 간간히 표현된 내용에 의하면 성내의 연못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아진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언양읍성은 화장산의 동남쪽 기슭 아래에 형성된 충적대지 위에 평면 정방형 구조를 갖춘 조선시대의 읍성이다.
- 특히, 평면 구조가 완전한 정방형에 가깝고 4방의 중앙에는 용성을 두른 문지를 갖추고 그 좌우 뿐아니라 성우(城隅)에 방대형의 각치(角雉)를 배치하고 체성 바깥에는 해자와 목익 등이 모두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조선시대 성곽구조를 이해하는데 가장 전형이 되는 읍성이다.

- 또한, 《언양읍지기록》의 내용 중에는 고을의 규모에 비하여 성이 견고하고 누각이 웅장하다고 표현되고 있으며, 시문 중에는 성내의 연못을 노래하면서 연꽃이 핀 연못과 돛대, 작은 정자와 같은 내용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 당시 언양읍성은 큰 고을에 뒤지지 않을 정도의 규모와 웅대한 누각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조경까지 어우러졌던 곳임을 짐작할 수 있다.
- 언양읍성은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문화재적 가치가 높아 1966년 12월 27일에 잔존성벽을 중심으로 사적 제153호로 지정되었다.
- 이후 1990년에 주민의 민원과 시가지 확장으로 인해 남성벽과 동문과 서문의 남측 지역 14,913㎡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구역을 해제하게 되었으며 2008년 12월 10일 문화재 지정구역 조정고시로 지정구역은 46,010㎡에서 40,989㎡(134필지)로 축소되었다.
- 이후,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읍성의 복원과 보존을 위하여 2011년 8월 19일 해제되었던 남측부분의 성벽과 성벽 외벽에 접한 면적 26,997㎡(132필지)을 추가 사적지정하여 266필지, 67,986㎡로 조정하였으며, 북문지 및 일대에 대한 발굴 작업과 ‘언양 소도읍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읍성의 남문 전면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 8월에는 ‘언양읍성 남문(영화루)’을 복원하였다.
- 또한, 2014년 11월 19일에는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칭 등)로 추정되는 부지인 구.언양초등학교 일대(14필지, 16,507㎡)가 언양읍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되어 향후 관아부지의 정확한 발굴조사와 심도있는 학술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금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부분(9필지, 5,270㎡)은 언양읍성 동쪽 체성과 관아 일곽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상 다목적 잔디마당 조성부지로 예정되어 있어 주민들에게 휴게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외 읍성의 사례를 보면 읍성은 지역민과 방문객을 위한 역사적 유물이면서 휴게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지역축제를 통해 특성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 잔디마당은 언양읍성에 반드시 필요한 부지이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이 타당하다.
- 현재까지 복원 정비된 우리나라 읍성의 대부분이 호남(낙안읍성, 나주읍성)과 충청(해미읍성)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언양읍성을 완벽하게 복원 정비할 경우 조선시대의 영남, 호남, 충청도 읍성의 규모나 축조방법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의 중요한 자료로 그 활용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학술적인 가치뿐 아니라 지역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언양읍성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서 읍성 전체가 문화재지정(보호)구역으로 지정됨이 마땅할 것이나,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금번 신청된 최소한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 향후 발굴조사와 학술연구 등 철저한 고증을 통하여 읍성 전체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입증하고 지속적으로 언양읍성이 완벽하게 복원정비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추진근거 : 문화재청 보존정책과-5579(2016.8.8.)호 및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함.

6. 지정 대상 및 범위

신청면적 : (문화재보호구역)9필지 5,270m²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면적: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지정면적(m ²)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계	9필지		5,270	5,270			
1	동부리	239-1	답	1,534	1,534			
2	동부리	239-2	답	258	258			
3	동부리	239-3	답	1,570	1,570			
4	동부리	240-5	대	331	331			
5	동부리	240-6	대	331	331			
6	동부리	240-8	답	136	136			
7	동부리	240-9	답	175	175			
8	동부리	240-10	대	126	126			
9	동부리	240-11	답	809	809			



추가지정 신청부지 현장사진



추가지정 신청부지 현장사진

언양읍성 고지도

각읍지도(1703~1750)



- 4개의 성문이 문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음
- 남문과 북문은 홍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동문과 서문은 개거식의 누문 형식을 보이고 있음
- 지붕의 형태는 4개의 성문 모두 팔작지붕에 하부 기둥을 취함
- 여장의 모습은 표현되지 않고 있으며 웅성의 모습 또한 나타나지 않음

해동지도(1724~1776)



- 4개의 성문이 나타나며 남문의 모습만 다르게 표현되어 있음
- 북문, 동문, 서문의 경우 지붕이 체성의 상부에 위치하고 남문은 체성의 상면높이에 마루판이 위치
- 지붕의 형태는 남문만이 팔작지붕의 형태이며 나머지는 맞배지붕이나 우진각 지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여지도(숙종~영조)



- 남문만 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문은 개거식의 루문 형태를 보이고 있음
- 남문의 기둥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이는 기둥대신 성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 지붕은 모두 팔작지붕의 형태이며 체성에서 여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

언양지도(언양군읍지, 189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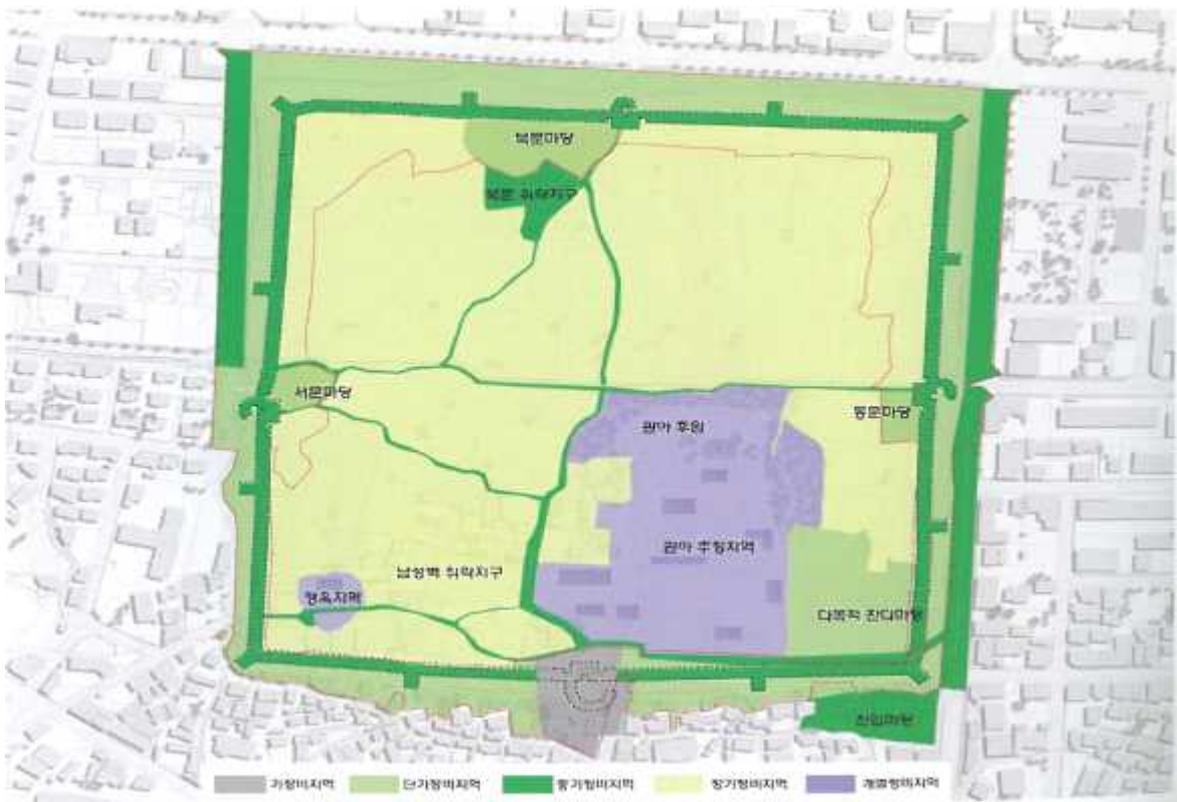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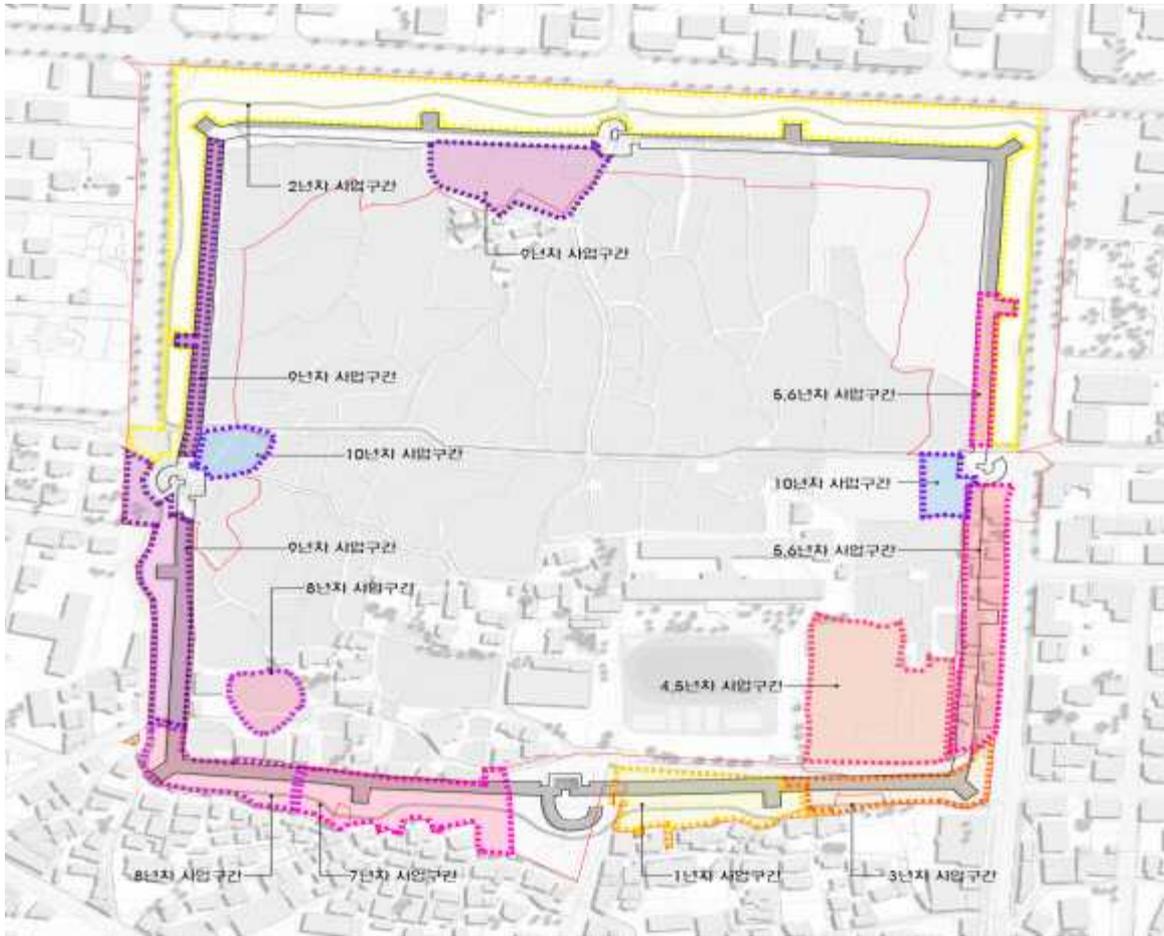
- 모든 문이 문루의 형식을 보이고 있으며 고문헌 기록상의 문의 이름과 일치함
- 북문의 경우 기둥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마루가 체성 위에 걸쳐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지붕의 모습은 모두 팔작지붕이며 전 구간에서 여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음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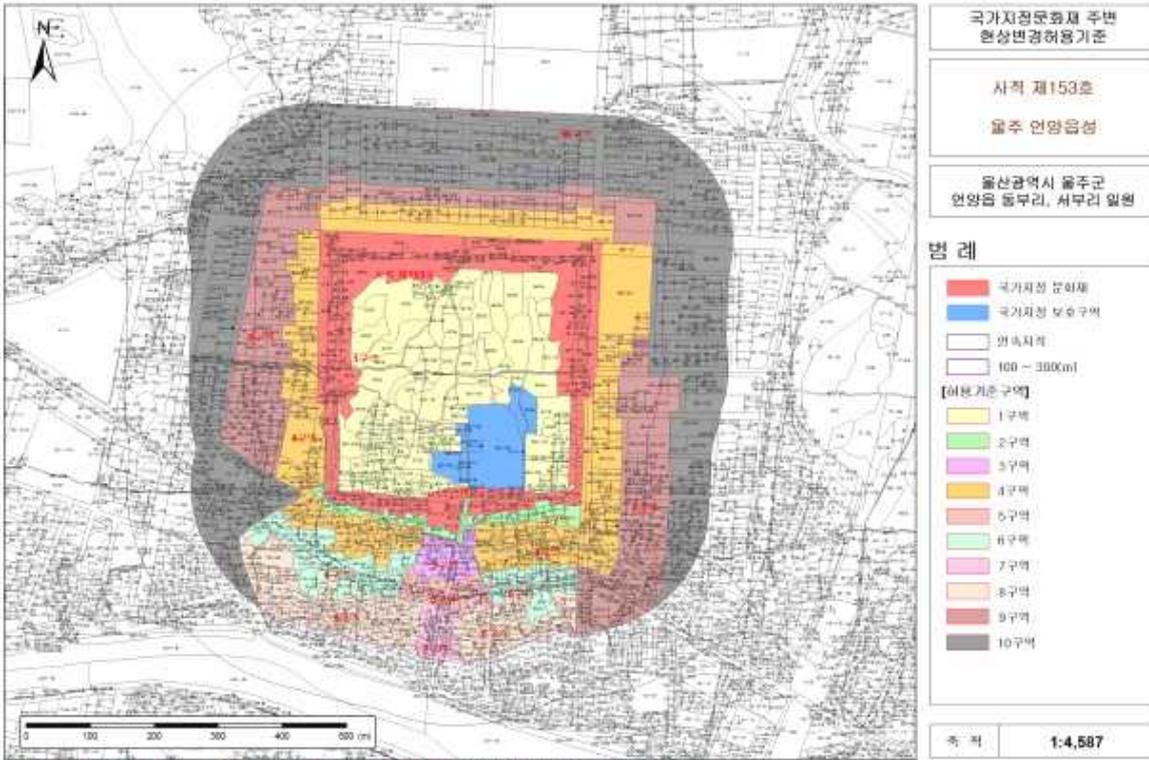


지적도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의견: 현재 1구역 내부에 추가로 지정되는 것으로 역사문화환경의 변화가 없어 현황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6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1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
7구역	-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8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9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
10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20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24m 이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문화재 보존 정비 · 활용 계획

□ 보수정비 현황

- 성곽복원 185m(동·북쪽 성곽)
 - 1996년 : 성곽길이 59.5m
 - 1997년 : 성곽길이 50.5m
 - 1998년 : 성곽길이 20.0m
 - 1999년 : 성곽길이 55.5m
 - 2000년 10월 : 이후 축성기법 논란으로 성곽복원 중단
- 2009. 12. 10. : 북문지 주변 발굴조사 착수('10. 4. 18 완료)
- 2010. 8. 24. : 남문 고증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완료(소도읍육성사업)
- 2010. 12. 7. : 북문지 주변 성곽정비공사('11. 12. 15 완료)
 - 사업내용 : 성벽 붕괴우려구간 해체, 재설치(L=42.5m),
성벽 상부 및 내측 성토부분 잔디식재(A=1,029.96㎡)
- 2012. 3. 28. : 언양읍성 복원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1. 9. 1 ~ '12. 3. 28 / 한국전통문화학교 >
- 2010. 2. ~ 2013. 2. : 남문 영화루 복원 정비(소도읍육성사업)
 - 사업내용 : 남문복원(옹성 L=42m, 체성 L=52m, 문루건립 A=78.93㎡),
광장조성(잔디식재 A=1,990㎡, 문화재 안내판 2개소)
- 2013년 6월 : 언양읍성 남문지 복원사업 추가('14. 12월 완료)
 - 사업내용 : 성벽복원 연장 L=68m(동측 L=40m, 서측 L=28m)

□ 향후계획 및 보존방안

- 2012년 작성된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계별 사업 계획인 성곽 정비와 연계하여 다목적 잔디마당(남쪽 공지) 부지는 남동측의 구. 언양초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곳으로서 남동측 성우와 인접해 있으며, 교통의 결절점으로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다. 현재 언양읍성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기도 하다.
- 추후 언양읍성 정비시 조성될 성내시설지로 진입하는 주요한 길이 될 것이며, 현재도 넓은 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또한 지적원도(일제강점기, 1912년경)상에도 대상지의 특별한 이용이 발견되지 않아 주요 결절점으로서 편의공간 조성의 가장 적합한 대상지가 된다.
- 대상지 내부는 다목적 잔디마당으로 조성하여, 주요한 행사시에는 행사의 장소로 활용하되 평상시에는 주민 및 읍성탐방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성내 시설 및 편의시설과의 경계 구분을 위해 성내시설 인접지역에는 녹지를 조성한다.
- 주차장은 임시적으로 성내에 설치하되 추후 성외지역으로 이동시켜 설치하도록

하며, 파고라, 벤치, 평상 등을 설치하여 마을사람들이 가볍게 휴식을 취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9. 종합 의견

- 금회 울주 언양읍성 내의 동남측 구역은 2014년 11월 19일에는 울주 언양읍성의 관아터(동헌, 객관, 작청 등)로 추정되는 부지인 구.언양초등학교 일대(14필지, 16,507㎡)의 연접구역으로서, 추가 지정 예정지는 고지도 상에서도 관아와 연접 건물군이 분포가 예상되는 곳임. 또한 체성부와 연접하여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적의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3. 해남 대흥사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및 해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해남 대흥사의 사역에 포함된 일부 건축물이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존 명승 구역 일부를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해남 대흥사(사적 제508호)
 - 소재지 : 전남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799
- (3) 신청내용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 (지정) 11필지 55,063㎡, (해제) 1필지 2,413㎡
 - 기 지정면적 : 15필지 60,163㎡
 - 추가 지정 후 면적 : 20필지 112,813㎡

라. 지정조사 보고서

□ 조사일 및 조사자

- 조사일자 : 2016. 8.13.(토) / 조사자 문화재전문위원 ○○○
- 조사일자 : 2016. 8.23.(화) / 조사자 문화재위원 ○○○, ○○○

1. 문화재 종류

- 사적
 - 현재 ‘명승’ 지정 구역 일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2. 문화재 명칭

- 문화재명 : “해남 대흥사”로 함.
 - 검토의견 : 명승 구역에 속하는 해남 대흥사의 건축물 및 시설물 일부를 사적 구역으로 확대하여 중복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문화재 명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함.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대흥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두륜산 줄기에 자리하고 있다. 두륜산(대둔산)의 빼어난 절경을 배경으로 한 넓은 산간분지에 계류를 끼고 자리한 대흥사는 여러 불전들을 지형적 조건에 맞추어 독립된 군을 이루어 배치함으로써 정연한 가람배치에서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과 조화를 느낄 수 있다.
- 대흥사의 입지는 『대둔사지(大菴寺誌)』(1823)의 기록에 나타나듯이 절을 가로지르는 금당천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 당우들을 배치하였는데, 현재 북원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명부전, 응진전, 산신각, 백설당, 청운당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원에는 천불전을 중심으로 용화당, 가허루, 봉향각, 동국선원, 종무소 등이 또 하나의 군을 이루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남원의 오른쪽에는 표충사와 부속건물, 성보박물관이 있고 그 뒤편에 대광명전 영역이 별원을 형성하고 있다.

4. 연혁 유래 및 특징

- 해남 대흥사는 “대둔사 또는 “한뜸절”로 불리우는 사찰로서 백제 무녕왕 14년(514)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며,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한 북원과 천불전, 대광명전을 중심으로 한 남원으로 구분되는 독특한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 경내에는 국보 제308호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하여 국가지정 문화재 9점과 시도지정문화재 7점, 그리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 등의 부도와 비석들이 소재하고 있으며, 호국선사인 서산대사의 의발을 보유하고 있는 서산종의 종찰로서 선·교 양종의 대도량을 간직하고 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대흥사는 고려 이전에 지어진 사찰로서,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되면서 17~18세기 서산종의 종찰로 선·교 양종의 대도량역할을 한 사찰이며, 경내에는 국보 제308호 ‘대흥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9점과 시도지정문화재 7점, 그리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 등의 부도와 비석들이 소재한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
- 해남 대흥사는 1975년 9월2일 명승 제4호 ‘해남 대둔산’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 12월23일 사적 및 명승 제9호 ‘해남 대둔산 대흥사 일원’으로 재분류됨.
- 이후 1999년 사적 제508호 “해남 대흥사”,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흥사 일원”으로 분리하여 재지정됨.

- 대홍사의 특징은 “대둔사지”에 의하면 남원(南院)과 북원(北院)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북원은 대웅보전·나한전·시왕전 등 24개의 당우가 있었고, 남원은 극락전·대장전·지장전 등 12개소의 당우가 있었다고 함.
- 그러나 현재 사적 구역 중 대홍사의 사역에 포함된 일부 건축물과 시설물이 명승 구역에 포함된 바, 대홍사라고 하는 사찰의 영역을 사적 구역으로 확대하여 중복지정하고 사적분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해남 대홍사의 사적 구역을 구획함에 있어 대홍사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최소한의 방화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곽에서 20m 정도를 이격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6. 지정 대상 및 범위

-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및 해제 : (지정) 11필지 55,063㎡, (해제) 1필지 2,413㎡
- 기 지정면적 : 15필지 60,163㎡
- 추가 지정 후 면적 : 20필지 112,813㎡

해남 대홍사 문화재구역 지번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존	변경		
1	구림리	산24-17	구	14,579	2,811	3,973		증 1,162
2	구림리	산8-14	도	4,661	685	1,079		증 394
3	구림리	산18-3	임	8,529	3,517	7,081		증 3,564
4	구림리	798	종	5,590	5,590	5,590		변경없음
5	구림리	산24-9	도	198	11	198		증 187
6	구림리	산24-10	임	96	40	96		증 56
7	구림리	799	종	25,881	25,881	25,881		변경없음
8	구림리	산17-1	임	5,554	5,554	5,554		변경없음
9	구림리	산8-5	도	298	298	298		변경없음
10	구림리	산18-4	도	99	99	99		변경없음
11	구림리	산17-2	도	793	793	793		변경없음
12	구림리	산8-6	도	298	298	298		변경없음
13	구림리	801	종	2,413	2,413	0		감 2,413
14	구림리	산8-1	임	6,079,996	10,556	59,705		증 49,149
15	구림리	823	천	1,617	1,617	1,617		변경없음
16	구림리	산18-2	도	76	-	76		신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지정면적		소유자명	비고
					기존	변경		
17	구림리	산24-8	도	99	-	8		신규
18	구림리	산16	임	16,760	-	142		신규
19	구림리	산16-2	도	198	-	23		신규
20	구림리	산24-1	임	1,476,748	-	302		신규
				7,644,483	60,163	112,813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해남 대홍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전체가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어 별도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불필요함.

8. 종합 의견

- 대홍사는 고려 이전에 지어진 사찰로서, 임진왜란 이후 서산대사의 의발이 전수되면서 17~18세기 서산종의 종찰로 선·교 양종의 대도량역할을 한 사찰이며, 경내에는 국보 제308호 ‘대홍사북미륵암마애여래좌상’을 비롯하여 국가지정문화재 9점과 시도지정문화재 7점, 그리고 13대종사와 13대강사 등의 부도와 비석들이 소재한 역사적·학술적으로 중요한 유적지임.
- 해남 대홍사는 1975년 9월2일 명승 제4호 ‘해남 대둔산’으로 지정되었다가 1998년 12월23일 사적 및 명승 제9호 ‘해남 대둔산 대홍사 일원’으로 재분류됨.
- 이후 1999년 사적 제508호 “해남 대홍사”, 명승 제66호 “두륜산 대홍사 일원”으로 분리하여 재지정됨.
- 대홍사의 특징은 “대둔사지”에 의하면 남원(南院)과 북원(北院)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북원은 대웅보전·나한전·시왕전 등 24개의 당우가 있었고, 남원은 극락전·대장전·지장전 등 12개소의 당우가 있었다고 한다.
- 그러나 현재 사적 구역 중 대홍사의 사역에 포함된 일부 건축물과 시설물이 명승 구역에 포함된 바, 대홍사라고 하는 사찰의 영역을 사적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 해남 대홍사의 사적 구역을 구획함에 있어 대홍사의 건축물 및 구조물에 최소한의 방화선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외곽에서 20m를 이격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4. 파주 덕진산성 사적 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파주 덕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기념물 제218호 「파주 덕진산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의 지정 가치 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경기도 기념물 제218호
(지정일 2007.10.22.)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3) 지정신청 명칭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

(4) 지정신청 범위 : 붙임 지정 면적조서 참조

○ 신청면적 : 문화재구역 10필지 38,854㎡, 보호구역 26필지 132,921㎡

(5) 관리단체(안) : 경기도 파주시

(6) 신청사유

○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수개축을 거듭하며 사용되었으며, 인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과 함께 임진강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고구려 방어시설로서 조선시대에 와서도 그 전략적 입지의 우수성 때문에 다시 외성을 확장 수축하여 사용되었던 중요한 유적임.

○ 국가 사적으로 승격하여 경기북부 고구려 유적을 연계하여 보존 정비 및 활용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라. 지정조사 의견('15.09.2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1) 문화재현황

○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덕진산성은 해발 85m인 비교적 낮은 산의 정상부와 이어지는 능선을 활용하여 축조한 성으로,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 중 가장 하류에서 발견된 유적이다.
- 주변의 넓은 지역이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동쪽으로 초평도와 임진나루 일대, 남쪽으로는 수내나루와 문산읍 장산리 일대에 대한 조망이 매우 좋아 북진을 막는 한편 남진에 필요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

○ 연혁·유래 및 특징

-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진과정 및 551년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7세기 후반 나당 전쟁 종식 이후 신라가 진출하면서 고구려성을 확장하여 석축성으로 개축된 이후 9세기대에 전면적인 개축이 이루어짐
-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때에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까지 쌓은 외성은 통일신라시대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하였음.
- 인조반정 당시 장단부사였던 이서가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발판을 마련
-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시기의 유적을 접할수 있고, 인근의 임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호로고루, 당포성, 은대리성 등과 함께 임진강의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삼국시대 성곽임.
- 조선시대 지리지 「동국여지지」에 처음 소개
- 1994년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 2004년 덕진산성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2006년 남한의 고구려유적 - 현황조사 및 보존정비 기본계획(국립문화재연구소)
- 2007년 경기도 고구려유적 종합정비 기본계획(경기문화재연구원)
- 2012년 덕진산성 1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3년 덕진산성 2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3년 덕진산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여유당건축사사무소)
- 2014년 덕진산성 3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 2015년 덕진산성 4차 학술발굴조사(중부고고학연구소)

(2) 종별 및 명칭(안) 검토

○ 종별 : 사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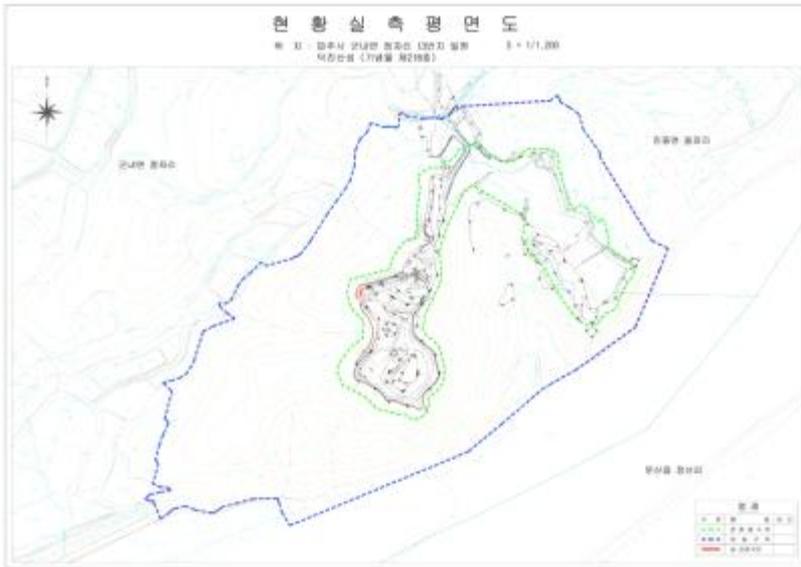
○ 명칭(안) :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으로 신청함.

■ 검토의견: 사적의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인 지역명+문화재명을 고려해 볼 때, “파주 덕진산성(坡州 德津山城)”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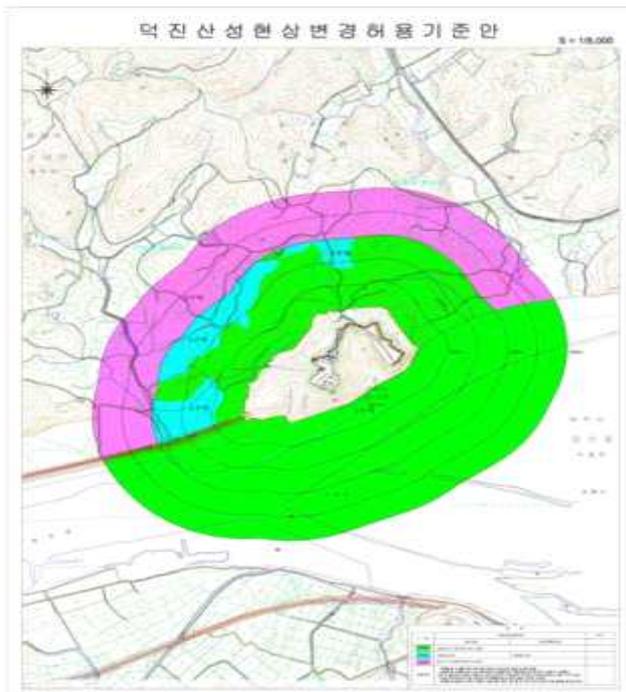
(3) 지정 대상 및 범위 검토

○ 사적 지정 신청은 문화재구역 10필지38,854㎡, 보호구역 26필지132,921㎡ (합계:36필지 171,775㎡) 신청함.

■ 검토의견: 지정·보호구역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4)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검토



구분	허용기준		비고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1구역	○ 개별심의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8m 이하	
3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및 시설물(기반시설 포함) 설치시 2m이내의 절토 및 성토 허용 ○ 높이 2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2m 이상의 범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5) 국가지정문화재 지정가치

○ 고구려 국경 방어의 요충지 덕진산성

- 덕진산성은 지금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성곽 중 가장 하류쪽에서 발견된 유적으로서 장수왕대 고구려의 남진과정 및 551년 이후 120여 년 동안 임진강이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및 사용되었으며,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고구려와 통일신라, 조선시대 축성기술의 보고

- 초평도를 징검다리처럼 활용하여 임진강을 도하하기 유리한 지점을 조망할 수 있고, 파주에서 개성으로 가는 관문인 임진나루와 주내나루를 통제할 수 있는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덕진산성은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7세기 후반 나당 전쟁 종식 이후 신라가 진출하면서 석축성으로 개축된 이후 9세기 대에 전면적인 개축이 이루어짐.
-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때에 외성을 덧붙여 쌓아 강기슭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조선시대에 이르는 여러 시기의 축성기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축성기술사 보고

○ 3차 발굴조사를 통하여 고구려 성곽의 전체규모 새롭게 확인

- 3차 발굴조사에서 고구려성벽이 통일신라 성벽이 구축된 구간 전체에 걸쳐 구축되어 있었음이 밝혀지게 되어 고구려 성곽의 규모는 600m 정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됨.

- 지금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남한지역의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을 보면 판축 공법으로 토축부를 먼저 조성하고 얇은 석축으로 마감하는 ‘토심석축공법’으로 구축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석축부를 쌓을 때에는 할석이 나 가공석을 사이 사이에 점토를 채워가면서 쌓는 ‘습식쌓기방식’을 특징으로 함.
- 3차 발굴조사에서 동문지 구간과 남벽구간에서 확인된 고구려 성벽은 화강암이나 편마암 성돌로 구축된 통일신라성벽과 달리 현무암 할석을 사용하여 습식공법으로 쌓은 성벽선이 확인됨으로써 덕진산성의 통일신라시대 성벽은 고구려 성벽의 흔적을 따라 구축되었음이 밝혀짐.

○ 통일신라의 축성법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는 명확한 증거 확인

- 덕진산성은 고구려 668년 고구려 멸망이후 7세기 말경 신라가 점령하여 기존의 고구려성곽을 견고한 석축성으로 새롭게 구축하였으며, 9세기대의 대대적인 수축 이외에도 구간에 따라 수차의 크고 작은 수개축이 있었음이 확인됨.

- 7세기 후반에 구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 성벽의 축성법의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음

첫째, 고구려성벽의 토축부를 내탁부로 사용하거나 일부구간은 토축부를 조성하고 석축성벽을 조성함.

둘째, 석축성벽에 사용된 성돌은 대부분 편마암계통이며, 장방형으로 가공되었음을 특징으로 함.

셋째, 일반 성돌 보다 큰 대형의 지대석이 사용되었으며 기저부에 턱을 주어 성돌이 밀려나지 않도록 함.

넷째, 외벽 기저부에서 일정한 높이까지 성토한 후 성토구간의 바깥쪽에서부터 체성벽에 비하여 조잡한 할석으로 보축성벽을 구축함.

다섯째, 성벽의 회절구간에는 체성벽 구축이후 세장한 형태의 보축성벽을 덧붙여 쌓았으며, 남서쪽치(2치)에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세우고 치를 구축하여 기둥홈이 확인됨.

○ 9세기대에 화강암으로 구축된 통일신라의 2차 성벽

- 출토유물이나 축성기법을 고려할 때 덕진산성은 9세기경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수축성벽은 덕진산성의 전체구간에서 확인되며 초축성벽과 축성기법에서 명확하게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확인됨.

첫째, 2차성벽은 화강암을 전면가공한 성돌이 사용되었음. 지질도를 보면 인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화강암을 원거리에서 운반하여 사각추형태

로 가공하여 쌓은 축성기법은 안성 망이산성이나 연기 운주산성 등 9세기 대의 성벽에서 확인되는 특징적인 기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음.

둘째, 1차 성벽의 보축성벽 바깥쪽에서 붕괴된 성벽을 따라 완경사를 이루도록 덧붙여 쌓았음. 이러한 형태의 축성기법은 연천호로그루나 당포성, 하남 이성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의 기존성곽에 대한 특징적인 수축방법임.

- 이처럼 동일 유적에서 확인되는 명확한 성돌 재료와 가공방법 및 성벽 축조방법의 변화양상은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라 할 수 있음.

○ 3차발굴 결과 조선시대 광해군대의 외성 문지와 축성법 확인

- 덕진산성의 동문부근에서 연결되어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에까지 이르도록 쌓은 외성은 1623년 장단부사인 이서가 수축하여 쌓은 성으로 추정되므로 자료가 많지 않은 17세기초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음. 3차 발굴조사 결과 외성의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부를 흙으로 조성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축성법이 확인되었음.

- 조선시대의 덕진산성은 山城뿐 아니라 津城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고 있었고, 성벽이 연결되는 강변에 접안시설과 관리시설이 잘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조선시대의 진성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유적으로 판단됨.

이외에도 덕진산성은 인조반정 당시 장단부사였던 이서가 700여명의 반군을 비밀리에 훈련시켜 인조반정을 성공시키는 발판을 마련한 역사의 현장으로서, 인조반정이나 이서장군 관련 역사기록이나 설화 등 다양한 口碑 자료를 콘텐츠로 개발할 경우 고구려 성곽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매력적인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발과 개발에 따른 훼손 방지를 위한 사적지정 필요

- 덕진산성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에 위치하여 지금까지는 잘 보존되어오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민통선 이북지역에 대한 농경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변지역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덕진산성과 지근거리에서 고구려 성으로 확인되는 동파리보루가 최근 발으로 경작하기 위하여 원형이 훼손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덕진산성 인접지역까지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문화유산의 보호가 필요함.

(5)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현상 보존 유지관리 우선

- 덕진산성은 발굴조사만 이루어졌으며, 유구에 대한 정비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 현재 발굴조사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성의 성격, 시대, 규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성급한 복원은 옛 성벽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조사가 우선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발굴조사된 성벽을 잘 보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우선적으로 성벽을 훼손시키는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임.

○ 현상 보존 상태에서 훼손 원인 제거

- 덕진산성은 조선 중기 이후 성의 기능을 상실한 후 관리가 되지 않아 성벽 상부 및 주변으로 수목이 자라고, 성내 배수로 역시 유실되어 수백 년 동안 방치된 결과 성벽의 훼손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따라서 성벽의 현상을 보존 유지한 상태에서 성벽의 훼손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성벽 및 주변의 수목제거와 성내 배수로 정비를 통하여 성벽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고 보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 성벽 주변 훼손 요인 정비 및 본격적인 정비 여건 조성 후 정비 추진

- 본격적인 유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발굴조사 등 학술조사와 정기적인 정비 및 점검·관리를 위해서는 우선하여 성벽 주변에 대한 수목 정비 등 기초적인 정비가 필요함.
- 겹경의 현재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훼손 원인 제거 후 탐방로 조성, 성 외측 경관 확보를 위한 수목 제거, 성 외측 붕괴된 성돌 정리 작업 및 성벽 정비, 안내시설 및 편의시설, 전망대 설치 등의 추진이 필요함.

(6) 종합 의견

○ 고구려 국경 방어의 요충지

- 임진강 유역의 호로그루·당포성·은대리성 등 고구려 성곽 중 가장 하류쪽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으로서,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하천 역할을 하였던 시기에 축성 및 사용된 핵심적인 고구려 유적으로서 3차 발굴조사를 통해 내성 600m 구간이 고구려 성벽임이 명확히 밝혀짐.

○ 고구려와 통일신라 축성기술의 보고

- 고구려에 의하여 축성된 이후, 이곳에 신라가 진출하면서 9세기경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진 2차 성벽은 인근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화강암을 원거리에서 운반하여 사각추형태로 가공하여 쌓은 축성기법과 1차 성

벽의 보축성벽 바깥쪽에서 붕괴된 성벽을 따라 완경사를 이루도록 덧붙여 쌓는 기법을 통해 통일신라시대의 특징적인 수축 방법은 물론 우리나라 축성기술사의 변화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음.

○ 3차 발굴 결과 조선시대 광해군대의 외성 문지와 축성법 확인

- 덕진산성의 동문부근에서 연결되어 능선을 따라 임진강변에까지 이르도록 쌓은 외성은 1623년 장단부사인 이서가 수축하여 쌓은 성으로 추정되므로 자료가 많지 않은 17세기초 조선시대의 축성기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임.

- 3차 발굴조사 결과 외성의 문지로 추정되는 유구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성벽의 성돌과 대형의 성돌을 사용하여 석축으로 구축하고 내탁 부를 흙으로 조성한 조선시대의 특징적인 축성법이 확인됨.

※ 이와 같이 파주 덕진산성은 현 잔존 상태가 양호하며, 고구려·통일신라·조선에 이르는 축성법의 변화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사적(신청지) 지정 면적 조서

○ 문화재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지정구역)							(면적: m ²)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군내면 정자리	280-1	전	536,849	311		
2	군내면 정자리	791	도로	2,571	582		
3	진동면 동파리	560-1	하천	1,284,749	45		
4	진동면 동파리	1744	도로	5,303	47		
5	군내면 정자리	13	임야	103,716	20,848		
6	군내면 정자리	1	전	6,757	2,467		
7	군내면 정자리	2	전	9,150	9,150		
8	군내면 정자리	3	임야	5,177	1,542		
9	진동면 동파리	1597	임야	9,081	3,607		
10	진동면 동파리	1600	전	255	255		
계				1,963,608	38,854		

○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재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문화재가 토지인 경우(문화재보호구역)

(면적: m²)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지정면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1	군내면 정자리	280-1	천	536,849	2,572		
2	군내면 정자리	791	도로	2,571	285		
3	진동면 동파리	560-1	하천	1,284,749	593		
4	진동면 동파리	1744	도로	5,303	60		
5	군내면 정자리	792	구거	325	325		
6	군내면 정자리	6	전	1,332	1,332		
7	군내면 정자리	12	임야	2,886	2,886		
8	군내면 정자리	13	임야	103,716	82,868		
9	진동면 동파리	1541	임야	813	66		
10	군내면 정자리	11	전	3,170	3,170		
11	군내면 정자리	1	전	6,757	4,290		
12	군내면 정자리	3	임야	5,177	3,635		
13	군내면 정자리	4	전	3,174	3,174		
14	군내면 정자리	26	전	1,656	1,656		
15	군내면 정자리	27	전	3,461	3,461		
16	군내면 정자리	28-1	묘지	198	198		
17	군내면 정자리	5	대	479	479		
18	군내면 정자리	25	전	6,298	6,298		
19	진동면 동파리	1585	전	1,372	1,372		
20	진동면 동파리	1597	임야	9,081	5,474		
21	진동면 동파리	1598	전	1,180	1,180		
22	진동면 동파리	1599	전	1,038	1,038		
23	진동면 동파리	1601	전	512	512		
24	진동면 동파리	1584-1	묘지	1,699	1,699		
25	진동면 동파리	1542-1	전	1,369	1,369		
26	진동면 동파리	1543-1	전	2,929	2,929		
계				1,988,094	132,921		

(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 1)

문화재의 종류	지정기준
사적	<p>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로서 해당 문화재가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p> <p>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p> <p>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p> <p>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p> <p>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p> <p>2. 해당 문화재의 유형별 분류기준</p> <p>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p> <p>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p> <p>다. 역사(驛舍)·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p> <p>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p> <p>마. 제단, 지석묘,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p> <p>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p>

바.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5. 덕수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인근 덕수궁 선원전 영역 등을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지정 하고자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는 덕수궁 선원전 영역(선원전·홍덕전·홍복전 권역)은 2011년 「부지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합의서」에 따라 덕수궁 선원전 영역이 문화재청으로 소유권이 이관 되었고 이후 덕수궁 선원전 영역에 대한 복원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문화재 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사항임
- ※ 선원전 영역의 문화재구역 추가지정과 더불어, 현재 덕수궁의 문화재(보호) 구역에서 누락된 지역의 추가지정 및 토지 분할·합병으로 인한 문화재구역 면적 조정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
 - 추가지정 대상
 - 사유 : 문화재청 소유로 이관된 선원전 영역은 옛 덕수궁 궁역으로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으로 미지정되어 있어 추가 지정 필요
 - 소재지 : (선원전 영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8 번지, 종로구 신문로 2가 150-2 및 157
 - 면적 : (선원전 영역) 3필지, 26,477.7m²
 - ※ 누락된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추가지정

- 대상 : [문화재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5-3 / [보호구역] 정동 5-8 및 3-3 일부
- 면적 : [문화재구역] 1필지 136.5㎡ / [보호구역] 2필지 134㎡
- ※ 토지 분할·합병으로 문화재구역 면적 조정
- 서울 중구 정동 1-11(중명전) : 2,404㎡ → 2,449.9㎡
- 덕수궁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관련 참고사항
 - ('07.02.07.)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 추가대상(중명전) : 서울시 중구 정동 1-11 1필지 2,403,6㎡
 - ('08.12.10.)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고시
 - 대상지 : 서울시 중구 정동 5-1 등 12필지, 87,830㎡
(지정구역 63,609㎡, 보호구역 3,439㎡)
 - ('11.04.14.) '부지교환 합의서' 한·미 정부간 서명
 - 미국에서 소유하고 있던 3필지, 26,477.7㎡ 한국정부로 이관
 - ('15.12.08) 덕수궁 복원정비 기본계획 조정 시행(선원전 영역 포함)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대상



○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 덕수궁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추가지정 내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면적 (㎡)	지정구역 (㎡)	보호구역 (㎡)	소유자	주소	비고
1	정동	1-8	대	25,746.8	25,746.8	0			2011년 미국에서 문화재청 으로 소유권 이관
2	신문로2 가	150-2	대	272.2	272.2	0			
3	신문로2 가	157	대	458.7	458.7	0			
4	정동	5-3	대	136.5	136.5	0			단순 누락
5	정동	5-8	도	7,858	0	107 (기존 825 총 932)			단순 누락
6	정동	3-3	대	310	0	27 (기존 18 총 45)			단순 누락
소계					26,614.2	134			
◆ 덕수궁 - 현재 국가지정문화<사적> 문화재구역 면적 변동사항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1	정동	5-1	대	61,205.6	61,205.6				변동 없음
2	정동	1-11	대	2,403.6	2,449.9				2011년 토지 분할, 합병으로 면적변경
소계				63,609.2	63,655.9	서울 중구 정동 1-11번지 2011년 토지 분할, 합병으로 총 문화재구역 63,609.2㎡에서 63,655.9㎡으로 변경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6. 덕수궁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인근 덕수궁 선원전 영역의 문화재구역 추가지적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시 중구에 위치하는 덕수궁 선원전지(선원전·홍덕전·홍복전 권역)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예정)에 따라 확장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 1-8 번지, 종로구 신문로 2가 150-2 및 157

○ 허용기준 조정(안)

현행(2010.12.31)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고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1구역	○ 개별심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4m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
3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4구역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색채는 자극적인 원색계열을 지양하고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권장(예: 지붕색상 - 회색, 밤색 등) ○ 외벽재료는 문화재 조망구간에서 건축물의 외벽이 광택(반사)이 강한 금속소재, 유광타일, 반사유리 등의 사용을 지양함 ○ 아파트 신축은 문화재청 별도 심의 ○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4대문안 문화유적 보존방안」에 따라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현행(2010.12.31)			조정(안)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6.08.31/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 본 건물은 덕수궁의 선원전터를 추가 지정함에 따라 주변 100m내 역사문화 환경의 허용기준을 검토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주변은 이미 초도시화된 구역으로 연접 20m구간에 대하여만 개별심의에 의해 검토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7.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 관련사항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나주시 소재 사적 제337호 「나주읍성」 북망문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성문의 복원 형식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발굴조사 약보고서('13.3)를 바탕으로 설계용역 추진과정에서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발굴유구 및 고문헌(1872년 고지도)을 바탕으로 정면은 홍예식 배면은 평거식으로 구성하기로 함
- 그러나, 공사 추진간 개거식이라는 의견 제기가 있어 2차례 기술지도 자문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명확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함
-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16.3.9) 검토결과 “보류” 결정됨에 따라 분야별(사적, 건축 관계전문가) 전문가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 검토('16.4.5)한 후 문화재위원회('16.5.11)에 상정하여 “조건부 가결”하였음
- 승인 조건에 따라 연구용역 실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문화재위원회에 재상정 하는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나주읍성(사적 제337호)
 - 소재지 : 전남 나주시 남내동 2-20
- (3) 신청내용
 - 나주읍성 북망문 성문 복원 형식 검토
 - 1안 : 홍예식 + 평거식
 - 2안 : 개거식
- (4) 신청인 의견
 - 발굴유구에서는 성문 형태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도출되지 않았음
 - 따라서 다른 고지도에 비해 세부적인 표현이 상세한 조선후기 지방지도

(1872년)를 우선적인 자료로 하여 나주읍성 북망문의 성문 형태를 홍예식으로 복원하여도 역사적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라.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 구성·운영 후 재검토

8. 연천 전곡리 유적 내 식생복원 및 구석기 체험숲 조성 사업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종합정비사업(5차 식생복원 등 사업)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유산관광자원개발(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천 전곡리 유적 5차 식생복원 및 구석기 체험숲 조성 실시설계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자 부의한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전곡리 유적(사적 제268호)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일원
- (3) 신청내용<연천 전곡리 유적 5차 식생복원 및 구석기 체험숲 조성>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연로 1510 일원(문화재구역)
 - 내용
 - 수목식재 : 교목(느티나무 등 6종) 199주, 수목이식 127주, 관목 식재(좁작살나무 등 4종) 7,620주
 - 식재기반 조성 : 3,958.5m³
 - 시설물 설치 : 종합안내판 등 안내판 설치, 체험숲 관리도,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보안등 및 전기시설 설치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9.01/문화재위원 ○○○)
 - 유적 내 옛 벽돌공장 부분을 철거하고, 복토 후 식재하는 사업(4차)에 이어, 동 대상지에 구석기 체험(움막 제작 및 숙박 등)을 위하여 필요 시설물(화장실, 샤워실, 관리실, 데크, 벤치, 보안등, 수목등 등)을 설치하려는 사항임.

- 시설물의 규모나 형태는 자문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설계된 것으로 보이나, 수유시설이나 응급실 등의 시설은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보안등이나 수목등은 구석기 체험과 일면 상반되는 성격의 시설물로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별도로 받는 것이 좋겠음.
- 활용 프로그램은, 구석기 체험 방법을 좀더 다양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임.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9. 연천 호로그루 보호구역 내 탐방로 및 주차장 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연천군 소재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그루」의 탐방환경 개선을 위하여 탐방로를 정비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연천군이 2016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호로그루 발굴조사, 치성 복원, 건물지 복원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보다 축소되어 사업비 잔액을 유적 탐방환경 개선사업에 활용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연천 호로그루(사적 제467호) (2006.1.2.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일원
- (3) 신청내용<탐방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67 일원(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탐방로 정비 : 황토경화포장(t150) 1,905.6m²
 - 주변 배수로 정비 : 반원형자연석배수로(1,450*300) 104m,
U형측구(300*400) 203.5m
 - 주차장 조성 : 잔디블럭 포장 1,135m², 자연석석축측구 (H0.6m, 300*400) 50.5m, 잔디배수로(300*300) 47.3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6.09.01/문화재위원 ○○○)
 - 연천 호로그루 진입 전면 문화재 보호구역에 조성된 식생공간의 탐방로와, 호로그루 홍보관 앞 주차장을 정비하려는 사항임.
 - 현재 탐방로와 주차장은 흙 위에 돌가루를 깔아 놓았으나, 우수로 인하여 돌가루와 유실되고 흙이 질어져 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탐방로를 마사토 경화 포장으로 치환하고 배수로(U자형 배수로와 반원형 자연석 배수로)를 설치하며, 주차장을 포장(잔디블럭)하려는 현 계획은 유적의 일상 관리 차원의 정비로, 무리 없는 계획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0.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천마총 리모델링 실시설계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512호 「경주 대릉원 일원」 내 천마총의 노후화된 내부시설과 전시 환경 개선을 위해 천마총 리모델링 실시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천마총은 1976년 개관 이래 노후화로 누수·결로 등 전시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 기왕의 전시가 천마총(왕릉급 고분)의 고고학적 연구성과와 부합되지 않고, 경건한 체험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 천마총의 구조와 전시 개선을 위해 리모델링 실시설계(안)을 수립하여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 등

○ 지정일 : 2011년 07월 28일

(3) 신청내용

○ 위치 : 경북 경주시 노동동 261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구조개선

- 돔 이중 셸구조체 균열부 보수
- 마감재 및 피복 보수를 통하여 콘크리트 중성화 방지, 방수성능 확보
- 전시실 입구 지붕에 방수턱을 설치하여 봉분으로부터 유입되는 우수 차단
- 전시실 입구 내부에 배수 트렌치 설치로 외부유입 우수 차단
- 전시실 바닥 배수 트렌치 설치하여 침수 방지

- 기계·설비
 - 공기조화기 전면 보수하여 전시관람 환경개선
 -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화재감지기설치), 방화(방염소재사용), 소방설비(소화기비치), 구급(제세동기설치)개선
- 전시개선

구분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전시컨셉	• 무덤 부장품과 출토 상황 전시 연출	• “현재-1973년-5세기”라는 천마총의 역사를 설정하여 스토리텔링 전시
전시연출	• 전시감실을 통한 유물전시 및 적석목곽분 전시	• 적석목곽분 구조 중심의 연출과 무덤 주인공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전시.
전시면적	206.69m ²	311.79m ² (증105.07m ²)
전시구성	• 적석목곽부 전시 • 벽면 소형유물감실 10개	• 적석목곽부의 구조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재연출 • 전시실 5개의 테마 구성(면적확장부)

(4) 신청인 의견

- 천마총의 구조 개선을 통해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적석부의 복원 등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경건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전시 개선 필요

라. 추진경과

- (1) 천마총 종합정비계획 수립(2011)
- (2) 정밀안전진단 실시(2012.3.16.~5.14.)
- (3) 실시설계 진행(동원 건축사사무소, 2015.6.23.~현재)
- (4) 실시설계 자문회의
 - 1차(○○○, ○○○ 등) : 학술적 근거로 적석목곽을 복원, 전시주제 구체화
 - 2차(○○○) : 천마총이라는 장소성과 상징성을 최대한 주목하여 전시
 - 3차(○○○, ○○○ 등) : 단곽식의 목곽, 사다리꼴의 적석 구조로 복원
 - 4차(○○○, ○○○) : 설계의 기본개념을 구체화하고,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

마. 참고사항

- 당해 건물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임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전문가 자문 후 시행계획 수립 재보고

11. 서울 의릉 보호구역 내 옥외전주 철거 및 개선 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204호 「서울 의릉」 내 전신주를 철거하고 전선 지중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의릉 내 기존 전신주가 노후화되어 조선왕릉 능제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철거하고 별관 건물에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옥외전주 개선공사를 실시하고자 함
- 신청건은 지난 사적분과위원회(2016.8월) 심의 결과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되었던 건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의릉(사적 제204호)
 - 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20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2길 146-20(문화재보호구역)
 - 신청내용 : 석관동 교사 노후 옥외전주 철거·개선(지상→지하)공사
 - 신규 전선 지하매설 : 125m(별관 도로변 25m, 본관 산책로 100m)
 - 옥외 변압기 설치 : 1개소(22,900→6,600V)
 - 기존 전신주 철거(19주) 및 전선 철거(1,200m)
 - 고압 지중공사에 따른 인입시스템 개선(1수전→2수전)
 - 사업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 사업기간 : 2016. 9월 중순(착공일로부터 60일)
 - 소요예산 : 242,000천원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의견('16.09.01/문화재위원 ○○○)

- 능역에 인접해있는 전신주를 제거하는 것은 안전과 경관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본관쪽 지중화구간은 굴착 길이가 길고 기존 수목 밀집지역을 통과하므로 수목에 대한 영향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 별관쪽에 신설하는 변압기는 차폐조경을 하여 문화재 주변 경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유의하기 바람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하되 수목피해 최소화, 매장전문가 입회할 것

12.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복원 공사에 따른 주변정비 계획(안) 검토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57호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정비를 위하여 추진 중인 월정교 복원 공사에 따른 주변정비 계획(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05.7.20 선도사업 발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경주 춘양교지·월정교지'(사적 제457호) 복원·정비 관련, 월정교 주변 정비 계획(안)을 검토 받고자 하는 사항임.
- '16년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8차 회의(8.10)에서 보류(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사적 제457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인왕동 921-1번지, 교동 274번지 외
- (3) 신청내용<월정교 주변정비 계획>
 - 시설계획 : 관리 및 통합방재실, 주차장, 화장실, 보행로, 유구복제 전시 (복토 후 재현)
 - 관리 및 통합방재실(주차장내) : 월정교 관리 및 통합방재, 안내 및 주차장 관리 / 정면 3칸(9.9m), 측면 1칸(3.0m)
 - 소방시설 : 지하 매립(16.2m×6.0m)
 - 화장실 : 정면 4칸(14.7m), 측면 2칸(6.2m)
 - 유구복제전시 :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연지, 적심유구 복토 후 복제전시
 - 남측문루 전면부지 정비 : 월정교의 통로기능을 고려해 도로형식 표현
 - ※ 북측문루 주변정비는 월성 발굴결과를 반영하여 추후 계획할 예정임
- (4) 신청인 의견
 - 월정교 복원에 따른 최소한의 안내시설과 임시주차장, 방문객 관람 동선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인 주변정비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코자함

라. 추진경과

- (1) 월정교 주변정비 전문가 자문(○○○ 등 12명, '13.8.1.)
 - 주차장 위치는 동 복원 구역에 떨어진 지역(교촌교 앞) 검토
- (2)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13.11.13.) - 조건부 가결
 - 당해 사업부지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선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계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수립하여 재검토
- (3) 월정교 주변 1차 발굴(남측문루 동편지역 / '14.10.14.~'15.12.11.)
 - 발굴결과 : 적심, 담장, 연못지, 구하도 유구 확인
 - 전문가 검토회의(○○○, ○○○) : 발굴유구 복토보존 조치 필요
- (4) 월정교 주변 2차 발굴조사(남측문루 서편지역 / '15.10.28.~'16.3.31.)
 - 발굴결과 : 도로유구, 청동기시대 주거지, 기타 소성 유구 확인
 - 전문가 검토회의(○○○, ○○○, ○○○)
 - 후대의 교란으로 인해 많이 훼손되었음. 기록보존 후 사업시행
- (5)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회의('16.2.17.) - 조건부 가결
 - 주차장은 남편도로 건너편 하류다리(교촌교) 부근 조성(시굴조사 실시할 것)
- (6) 월정교 문루 및 주변정비 관련 전문가 자문(○○○, ○○○, ○○○ / '16.5.10.)
 - 기존 유구 복토 후 복제 노출 전시하여 자연스러운 주변 분위기 조성
- (7) 월정교 주변 주차장 부지 발굴조사(교촌교 남편지역 / '16.5.30.~'16.6.30.)
 - 통일신라시대 적심, 담장, 기와배수로 등 유구 30여 기 확인
 - 전문가 검토회의(○○○, ○○○ / '16.6.16.)
 - 현 유구조사는 마무리하고 노출된 유구는 훼손되지 않도록 성토
 - 정밀발굴조사 유예하고 추후 형질변경 등 사안 발생 시 관련 절차 따라 조사
- (8) 월정교 주변정비 계획(안) 전문가 검토회의(○○○, ○○○, ○○○, ○○○ / '16.8.3.)
 - 월정교 주변 경관을 고려한 관리동 등 관련 시설물 노출 최소화
 - 주차장 예정부지의 차량 진·출입로 교통 동선계획 조정

마.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16.08.26)
 - 문화재위원 ○○○
 - 월정교 주변 임시주차장 위치는 문화재위원회 기 가결대로 추진하고 주차장에서 교촌마을간 동선 등은 명확히 할 것

- 관리동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주차장내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저수조 위치를 월정교 다리 인근(지하유구 없는 매립지) 등으로 재검토

○ 문화재위원 ○○○

- 편의시설은 유적지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고 도로와 인접한 관계로 답사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 방안도 필요
- 관리동의 위치는 혹서·혹한기 및 야간 순찰 등 여러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것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의견대로 시행할 것

13. 공주 공산성 내 옥녀봉성 일대 정비계획 검토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공주시 소재 사적 제12호 「공주 공산성」 문화재구역 내 옥녀봉성 일대 발굴 및 정비계획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16년도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공주 공산성 문화재 구역 내 옥녀봉성 일대 정비계획에 대해 보고하는 사항임
- '16. 8. 10(수) 보고 : 정비계획 재수립 후 검토사항으로 심의 요청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공주 공산성(사적 제12호)
 - 소재지 : 충남 공주시 산성동 2번지 일대
- (3) 신청내용<공산성 문화재구역 내 옥녀봉성 일대 발굴 및 정비계획>
 - 위치 : 충남 공주시 옥룡동 410번지 일원 28,596㎡(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목적 : 공산성 문화재구역 내 불법 경작 등으로 경관 훼손 및 매장문화재 교란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를 위한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발굴된 지역에 대한 유구정비를 통해 공산성 방문객의 관람동선을 확대하고 경관을 개선하고자 함
 - 세부내용(기존 계획 전면수정 통한 역사적 실체확인 및 보존중심의 계획 수립)
 - 은개골 지역의 역사적 실체 확인 : 발굴 면적 4,904㎡
 - 발굴유구의 정비 및 일부지역 노출
 - 수목정비 및 식생정비, 안내판 설치 및 관람로 조성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3.11/○○대학교 ○○○, ○○○)

- 공산성에서 은개골지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만큼 다양한 접근 방법 모색 필요
- 유지관리 측면에서 이용객의 추이를 보면서 체험시설의 연차적 도입 필요
- 은개골 발굴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및 확정 필요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가치 훼손 우려

14. 강화 외성 진해루 복원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진해루 복원공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진해루 복원 공사를 시행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대
- (3) 신청내용<강화 외성 진해루 복원 공사>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1055번지 일원
 - 공사내용
 - 진해루(문루) 복원
 - 육축 복원
 - 성곽 복원 및 주변 정비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6.10/문화재전문위원 ○○○, ○○○)
 - 원 유구 보호층을 충분히 고려하여 복원 G.L.을 결정하되 양쪽 성벽 지대 석을 넘지 않는 정도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 기초법은 시공초기에 지내력 시험에 따라 안전한 공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문루 기둥 기초는 지면에서부터 별도로 독립기초 형식으로 함이 타당함.
 - 문루 목재 부재크기는 사진을 참고하고 과다하게 크지 않게 함.
- (2) 지자체 의견
 -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에서 조망이 가능한 진해루를 복원하여 역사문화 보고로써의 상징성을 부여코자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복원과정에서 전문가 검토 필요

15. 경복궁 내 오류 논란 현판(보선당, 자선당, 용화당) 명칭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17호 「경복궁」 내 오류 논란 현판(보선당, 자선당, 용화당) 명칭 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복궁 내 오류 논란이 있는 현판(보선당, 자선당, 용화당) 명칭에 대하여 오류여부를 검토하고자 부의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제117호)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소재
- (3) 검토 내용<오류논란 현판 명칭 검토>
 - 각종 고문헌 등에 나타나는 해당 현판의 한자 표기는 일정하지 않아 명칭 오류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 명칭	조선고적도보	궁궐지(宮闕誌)	북궐도형	비 고
補宣堂 (보선당)	輔 ^ㅁ 堂 (보?당)	輔宜堂 (보의당)	輔宜堂 (보의당)	-궁궐지: 불일치 -북궐도형: 불일치
資善堂 (자선당)	-	資善堂 (자선당)	資安堂 (자안당)	-궁궐지: 일 치 -북궐도형: 불일치
隆化堂 (용화당)	-	隆化堂 (용화당)	隆和堂 (용화당)	-궁궐지: 일 치 -북궐도형: 불일치

라. 참고사항

(1) 경복궁 오류 논란 현판 관련 자문회의

<2016. 8. 12/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서예가 ○○○, 전 문화재전문위원 ○○○, 한국고전번역원 ○○○, 한국학중앙연구원 ○○○>

- 보선당(補宣堂)은 궁궐지, 북궐도형 등 사료에 보의당(輔宜堂)으로 일관되게

기록되어 있으나, 필경 시 보선당(補宣堂)으로 잘못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의당(輔宜堂)으로 현판을 제작하여 설치하도록 함

- 자선당(資善堂) 및 융화당(隆化堂)은 일성록, 속음청사, 북궐도형, 경복궁 배치도 등 사료에 자안당(資安堂) 및 융화당(隆和堂)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궁궐지에는 자선당(資善堂) 및 융화당(隆化堂)으로 기록됨.

사료 간 기록이 다르고 궁궐지에 오류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유지.

(2) 경복궁 침전지역 중건보고서

- '95년 경복궁 복원 당시, 현판은 조선고적도보, 북궐도형, 궁궐지 등 관련 고증자료, 유물로 보관 중이던 궁궐 현판, 복원 당시 궁궐에 걸려있던 현판 등을 참고하여 제작
 - 복원 시 참고 문헌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궁궐지(宮闕志), 궁궐지(宮闕誌), 경궁지(景宮志), 동국여지비고(東國輿地備考), 한경지략(漢京識略),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
 - 복원 시 참고 그림 자료 : 진찬도(進饌圖), 경복궁전도(景福宮全圖)
 - 기타 참고자료 : 대한제국 말기에서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근래에 이르기까지 현재와 같은 형태로 변형되기 이전의 모습을 알려주는 사진자료 등과 발굴유구
- 궁궐지(宮闕志) : 경복궁은 고종 때에 중건 되었으므로, 경복궁편의 기록은 모두가 고종 중건 이전의 경복궁과 관련된 것들로서 대부분 임란 이전의 기록들이고 임란 이후의 기록은 숙종과 영조가 잠시 폐허화된 경복궁의 구기(舊基)에서 의례를 행하거나 하는 등의 간단한 기사가 실려 있을 뿐임. 그러므로 고종 중건 당시를 기준연도로 잡고 있는 금번 중건사업에서는 궁궐지(宮闕志)의 기록 내용은 참고 사항에 그침
- 궁궐지(宮闕誌) : 고종 때 편찬된 책으로 각 전각뿐만 아니라 부속 전각들 및 궁장의 규모와 양식도 기록되어 있으며, 공포의 양식과 규모, 기둥의 규격, 기둥간격 등에 대한 치수까지도 상세히 적어 전각의 구체적 규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줌.
 - 편찬 시기는 '증보문헌비고'가 최종 작성된 1907년 이후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북궐도형과 비슷한 시기로 보고 있으나, 기록된 전각수가 북궐도형보다 다소 많은 점과 주칸 차이가 있는 건물의 경우 등을 비교해 볼 때 궁궐지의 편찬이 북궐도형의 제작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이나 편찬 주체나

의도, 편찬한 시기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그 자료적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건축적인 정보만을 기계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이지만 일제에 의해 궁궐이 본격적으로 파괴되기 전 마지막 궁궐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서의 가치가 큼.
- 북궐도형(北闕圖形) : 광화문에서부터 신문문까지를 그린 경복궁 배치도로 궁궐지(宮闕誌)와 내용상 거의 상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시기, 곧 1907년 직후 율희 연간에 동일한 주체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됨.
- 궁궐지(宮闕誌)와 함께 고종 중건 이후의 경복궁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써 금번 중건 공사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음.

(3) 궁궐 현판의 이해

○ 보선당(補宣堂)

- ‘輔宜’는 ‘천지(天地)의 마땅함을 보상(輔相)하다’라는 뜻으로 『주역』 태괘(泰卦)의 ‘輔相天地之宜’에서 왔음.
- 『北闕圖形』, 『宮闕志』 등에 의하면 ‘輔宜堂’이 맞음.

○ 자선당(資善堂)

- ‘자안(資安)’이란 ‘평안함을 기른다’는 뜻으로, ‘資’는 ‘기르다’, ‘安’은 ‘평안함’을 의미
- 『北闕圖形』, 『日省錄(1868.6.10)』에는 ‘資安堂’으로 『續陰晴史』 7권의 1895년 11월 16일 기사에도 경복궁에 자안당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
- 자선당이라 부르는 것은 1915년 이후에 출판한 『宮闕志』에서 확인됨. 이때는 일제 총독부가 동궁을 헐어버린 뒤였으므로, 혹 헐어버린 자선당의 현판을 이곳에 걸었는지 모르겠음.

○ 융화당(隆化堂)

- ‘隆和’는 ‘조화를 융성하게 함’을 뜻함. 동진(東晉)의 연호로 사용하기도 하였음.
- 『北闕圖形』, 『日省錄』에는 ‘隆和堂’으로 나옴. 1915년 이후에 나온 『宮闕志』의 경우에만 ‘隆化堂’이라 했음.

(4) 사료에 나타난 현판 명(추가 고증조사)

- 현판의 이름은 당시 사람들의 사상과 이념 및 목적을 뚜렷이 내포하고 있었음.
- 경복궁 중건 이후로 당호를 변경할 만한 사유의 발생은 중건 당시와 대화재 후의 재건 때 외에는 없었을 것으로 보임.

- 세 현판명의 고증은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사료가 충분치 않으며 그 전거로는 『일성록』, 『궁궐지』, 『북궐도형』, 『속음청사』 뿐임.
- 보선당(補宣堂)
 - 기록을 처음 전하는 자료는 경복궁 중건 이후 고종 후반기에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궁궐지(宮闕誌)이며 교태전 남행각의 서쪽에 보의당(輔宜堂)이 있다고 적고 있고, 1905년 이후에 만든 것으로 보이는 북궐도형(北闕圖形)에도 해당 위치에 보의당(輔宜堂)이라 적었음.
 - 1888년 교태전 재건 이후에 비로소 생긴 남행각 중 하나의 명칭이라 할 수 있음.
- 자선당(資善堂)
 - 고종 5년의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을 보면, 함원전(含元殿)의 서행각으로 자안당(資安堂)이 있다고 하였는데 자안당이 함원전의 서행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궁궐지(宮闕誌)에는 흠경각의 서행각에 있는 청사로 자선당(資善堂)을 말하고 있음.
 - 북궐도형에서는 자안당이라 기록하고 있는데 위치나 전각에 있어서 행각의 용도 및 서행각의 개수 등을 고려할 때 함원전이 아닌 흠경각의 서행각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임.
 - 고종 13년의 대화재 때, 함원전과 흠경각도 모두 불길에 싸였음. 교태전 행각의 명칭은 이를 계기로 모두 바꾸었는데, 함원전이란 흠경각의 행각 명칭도 이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資 다음의 글자 하나만 교체할 리는 만무였기 때문임.
- 융화당(隆化堂)
 - 고종 5년의 일성록(日省錄)의 기록을 보면, 함원전의 서행각으로 융화당(隆和堂)이 있다고 하였음.
 - 궁궐지(宮闕誌)에는 흠경각의 서행각에 있는 청사로서, 대재문의 북쪽에 융화당(隆化堂)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음.
 - 북궐도형에서는 융화당(隆和堂)이라고 기록하였는데 행각은 함원전의 행각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함.
 - 고종 13년의 대화재 때, 함원전도 모두 불길에 싸였음. 교태전 행각의 명칭은 이를 계기로 모두 바꾸었으나, 함원전의 행각 명칭은 이때 바뀐 것으로 보이지 않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6. 창경궁 내 화장실 건립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3호 「창경궁」 홍화문 북행각 주변에 화장실을 신축에 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제123호 창경궁의 관람객은 최근 5개년 매년 7%씩 증가하고 있으며 '15년에는 77만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음.
- 그러나, 명정전 등 주요 전각 동선에 관람객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부족하여 관람객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 동 건은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5.11) 결과에 따라 창경궁 홍화문 북행각 주변에 화장실 신축설계를 완료하고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제123호)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185
- (3) 신청내용<홍화문 북행각 주변 화장실 신축>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85(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건축면적	구조	높이	위생기구	
			남자	여자
102.16㎡	철근콘크리트	4.15m (층고3.3m)	5개소 (장애인1, 소변기2포함)	7개소 (장애인1포함)

라. 참고자료

(1) 관계전문가 자문회의('16.08.12/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디자인 ○○○)

- 건물의 전체적인 배치는 담장과 평행하게 하여 담장에 영향이 없고 보행로에서 이격된 위치에 배치.
- 지붕은 건물 후면으로 경사를 주어 배수가 후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배수구는 누조의 형태로 설치하여 선홈통 없이 계획
- 외부 마감재는 문화재 경관에 어울리는 현무암과 전벽돌로 마감처리
- 터파기시 최대한 수직터파기를 하여 인근 수목의 뿌리 등을 보호하고 은행나무는 제거 필요

(2) 관계전문가 자문회의('16.08.03/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디자인 ○○○)

- 예정 신축화장실의 위치가 동궐도상의 건물지와 너무 인접되어 있으므로 북쪽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보행로에 너무 근접되지 않게 조정
- 규모가 창경궁의 연간 관람객 수에 비해 너무 크므로 규모 축소
- 높이는 최대한 낮추어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계획
- 화장실은 물을 쓰는 공간으로 겨울철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대식으로 계획
- 외벽 재료는 너무 밝거나 어둡지 않도록 하고 형태는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전체적인 채도를 낮춰 눈에 띄지 않도록 계획
- 고창, 환기창 등을 설치하여 자연 채광과 환기에 주의 필요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17. 덕수궁 내 증명전 조경정비 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24호 「덕수궁」 내 증명전 전시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하여 증명전 조경정비를 추진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증명전 전시시설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증명전 마당의 계단 복원 및 진입로 포장 및 잔디식재 등 조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관람환경 및 문화재 경관을 개선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제124호)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정동길 41-11(정동 1-11 덕수궁 증명전)
- (3) 신청내용<덕수궁 증명전 조경정비>
 - 위치 : 서울시 중구 정동길 41-11 덕수궁 증명전(문화재구역)
 - 대지면적 : 2,403m²
 - 공사내용
 - 증명전 배면 배부른 석축 해체 후 재설치 및 잔디식재
 - 증명전 현관 계단 및 지하 입구 계단 해체 후 재설치
 - 장애인 관람 동선 설치
 - 시굴에서 확인된 기단 및 계단 복원
 - 관람로 황토콘크리트 포장 정비
 - 그 외 조경공간은 잔디식재
 - 정동길에서 증명전 진입도로 사고석 포장 정비
 - 공사기간/공사비 : 2016. 10월 ~ 12월/1억8천만원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사전 자문('16.04.27/○○○, ○○○, ○○○)

- “중명전의 대한제국 역사적 장소성과 정체성에 맞는 조경계획이 필요함”
- 지형의 변화가 심하므로, 대한제국기의 중명전 주변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을 위해 시굴이 선행되어야 함

(2) 덕수궁 중명전 조경정비공사부지 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완료('16.07.25)

(3) 관계 전문가 자문

- 1차 : '16.07.28./○○○, ○○○, ○○○, ○○○, ○○○
 - 2차 : '16.08.12. 조경 ○○○, ○○○/ 8.18. 건축 ○○○, ○○○
 - 조경공사시 행각지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거친 후 공사를 실시
 - 「경운궁중건배치도」에 나타난 계단과 시굴 조사된 계단이 일치하므로, 이를 복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은행나무는 수령 40-50년생으로 중명전 정원에 어울리지 않고 수형이 미려하지 않으므로 제거하고, 남쪽으로 연장하여 좌우대칭의 조경 공간으로 조성한다.
 - 기존 은행나무는 제거하고 장애자 램프를 설치한다.
 - 만희당지 포장을 제거하고 잔디로 식재한다.
 - 현관계단은 고증사진과 같이 복원하되, 모서리 모접기 되어 있는 부분은 고증사진을 재검토하여 반영
- ⇒ 추가 자문 검토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함
- 사진을 확대하면 지대석에는 모접기가 없고 그 상부 계단석부터 나타남.
 - 모접기의 세로선이 보이고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쌍사모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18. 파주 삼릉 내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내 파주삼릉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 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삼릉 관람객 주차장 편의증진과 관리사무소 잦은 누수와 보수로 인한 재정비가 필요하며, 내·외부(벽체, 천정, 바닥 등)와 설비(전기, 통신 등)를 리모델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 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삼릉(사적 제20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
- (3) 신청내용<파주삼릉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정비 공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삼릉로 89(문화재구역)
 - 주차장 면적 : 365.99m²
 - 관리소 면적 : 434.62m²
 - 공사내용
 - 주차구획 정비 및 바닥 포장 등
 - 주차장 배수관로 및 편의시설 정비
 - 1층 일부 증축 후 상황실 및 식당 이전
 - 사무실 내부 리모델링 및 건물 주변 바닥 철거 후 판석 깔기
 - 지하층 주변 배수트렌치 설치

라. 참고자료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6.09.01/문화재전문위원 ○○○, ○○○)

- 주차장 매표소 전면 진입광장을 확보하여 관람객 모임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함
- 장애인 주차장공간은 매표소 전면을 비켜 배치하도록 하고, 진입광장으로 이어지는 주 진입로를 확보하도록 함.
- 관리사무소 보안 문제 및 지하식당 오수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일부 증축하여 상황실을 분리, 이전하고 지하식당을 지상으로 옮기도록 함.
- 기존 건물 지하 습기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건물 지하 주변으로 배수트렌치를 설치하도록 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관계전문가 자문의견대로 실시

19.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사업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용릉과 건릉 경내 이동통신 서비스 불량으로 관람객의 개선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내 재난 및 관람객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용릉, 건릉 문화재 지역내 전체 60% 통화 불량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번지(호행로 481번길 21)
- (3) 신청내용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87-1번지 내 관리사무소 옥상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6년 10월 중(착수일로부터 5일)
 - 사업비 : 이동통신사 전액부담(KT, SKT 공동부담)
 - 공사내용 : 장비 1식, 전원 및 광케이블 인입공사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보고사항 】

안전번호 사적 2016-09-061

1.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 소위원회 결과 보고

가. 제안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7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6.8.24(수) 15:00~18:00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207호
- 참석위원 : 고혜령, 김권구, 심정보, 이만형, 이재범, 한필원, 허창수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26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5건, 조건부가결 8건, 부결 11건, 보류 2건

다. 처리내용

건 명	내 용	결 과												
1.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9-662, -663, -664, -665, -647(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8,161㎡ / 건축면적 : 750㎡ - 건축구조 : 철근 및 판넬구조 - 건축규모 : 5개동, 1층(최고높이 3.5m/경사지붕) - 토목공사 : 절토 10,960㎡, 성토 3,685㎡ - 조경공사 : 수목 300주 식재, 잔디 5,599㎡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산19-60번지 일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0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산 도시계획시설 대로 2-11호선 개설(B=25m, L=1,709m)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분</th> <th>당초</th> <th>금회 신청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도로 폭</td> <td>30m</td> <td>25m</td> </tr> <tr> <td>옹벽</td> <td>H 3~18m : 400m H 3~6m : 40m H 6~9m : 60m</td> <td>절토량 감소 및 자연사면처리</td> </tr> <tr> <td>덧개형 터널</td> <td>-</td> <td>240m</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금회 신청사항	도로 폭	30m	25m	옹벽	H 3~18m : 400m H 3~6m : 40m H 6~9m : 60m	절토량 감소 및 자연사면처리	덧개형 터널	-	24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구분	당초	금회 신청사항												
도로 폭	30m	25m												
옹벽	H 3~18m : 400m H 3~6m : 40m H 6~9m : 60m	절토량 감소 및 자연사면처리												
덧개형 터널	-	240m												

건 명	내 용	결 과																		
3. 당진 솔피마을 김대건신부 유적 주변 기념탑 및 시설물 설치	<p>○ 위치 : 충남 당진시 우강면 송산리 106-8(문화재구역으로부터 70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376 1120 741"> <tr> <td>구분</td> <td>1차('16.6월) / 보류</td> <td>2차('16.7월) / 부결</td> <td>3차('16.8월) / 금회신청</td> </tr> <tr> <td>기념탑</td> <td>길이 15.4m, 높이 4.7m</td> <td>길이 14.5m, 높이 3.7m</td> <td>좌동</td> </tr> <tr> <td>건축물</td> <td>면적 194.12㎡, 높이 3.65~5.45m</td> <td>면적 194.12㎡, 높이 2.65~4.45m</td> <td>좌동 (돌담은 수목 식재로 대체)</td> </tr> <tr> <td>주변 정비</td> <td>소나무 이식</td> <td>소나무 이식, 주변 동선 정리</td> <td>좌동</td> </tr> </table>	구분	1차('16.6월) / 보류	2차('16.7월) / 부결	3차('16.8월) / 금회신청	기념탑	길이 15.4m, 높이 4.7m	길이 14.5m, 높이 3.7m	좌동	건축물	면적 194.12㎡, 높이 3.65~5.45m	면적 194.12㎡, 높이 2.65~4.45m	좌동 (돌담은 수목 식재로 대체)	주변 정비	소나무 이식	소나무 이식, 주변 동선 정리	좌동	<p>○ 조건부가결</p> <p>- 기동 숫자 축소</p>		
구분	1차('16.6월) / 보류	2차('16.7월) / 부결	3차('16.8월) / 금회신청																	
기념탑	길이 15.4m, 높이 4.7m	길이 14.5m, 높이 3.7m	좌동																	
건축물	면적 194.12㎡, 높이 3.65~5.45m	면적 194.12㎡, 높이 2.65~4.45m	좌동 (돌담은 수목 식재로 대체)																	
주변 정비	소나무 이식	소나무 이식, 주변 동선 정리	좌동																	
4. 광주 신창동 유적 주변 건물 신축	<p>○ 위치 :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1083-46(문화재구역으로부터 115m 이격/2-1구역)</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875 1120 1081"> <tr> <td>구분</td> <td>대지면적</td> <td>건물규모</td> <td>건축면적</td> <td>연면적</td> <td>최고높이</td> </tr> <tr> <td>당초 신청</td> <td>1,987㎡</td> <td>지상 3층</td> <td>392.37㎡</td> <td>996.81㎡</td> <td>14.55m</td> </tr> <tr> <td>금회 신청</td> <td>상동</td> <td>상동</td> <td>상동</td> <td>상동</td> <td>12.60m (1.95m 감소)</td> </tr> </table>	구분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당초 신청	1,987㎡	지상 3층	392.37㎡	996.81㎡	14.55m	금회 신청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60m (1.95m 감소)	<p>○ 조건부가결</p> <p>- 시굴조사 실시 필요</p>
구분	대지면적	건물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최고높이															
당초 신청	1,987㎡	지상 3층	392.37㎡	996.81㎡	14.55m															
금회 신청	상동	상동	상동	상동	12.60m (1.95m 감소)															
5. 경주 오릉 주변 농업용 지하수 개발	<p>○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195-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19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착깊이 : 100m(굴착공경 150mm) - 구조물 공 : 관정보호맨홀 1개소(가로 1.0 × 세로 1.0 × 높이 1.0m) 	<p>○ 조건부가결</p> <p>- 시굴조사 실시 필요</p>																		
6.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축사 신축	<p>○ 위치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16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82m 이격/1구역)</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 396㎡ - 건축구조 : 강파이프구조(지붕 : 칼라강판) - 규모 : 지상1층, 높이 5.8m - 성토 : 1.2~2m, 절토 : 최대 3.5m 	<p>○ 조건부가결</p> <p>- 약취 저감 시설 설치</p>																		
7. 공주 석장리 유적 주변 컨테이너 설치	<p>○ 위치 : 충남 공주시 석장리동 92-1번지(1구역)</p> <p>○ 수량 및 크기 : 1동(3.5m×2.5m×2.5m/8.75㎡)</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용 도구 및 농작물 임시보관을 위한 임시 설치(주택 건축 불가능에 따른 해당필지를 농지로 활용예정임) · 경작 농지 위치 : 신청 지번(공주시 석장리동 92-1번지) - 건축 구조 및 규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테이너박스 / 3.5m x 2.5m x 2.5m - 설치기간 : 2016. 8. 25. ~ 2017. 7.31 	<p>○ 원안가결</p>																		

건 명	내 용	결 과																								
8. 강화산성 주변 진입로 개설 및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0-1 외 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 이격/1구역) ○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890㎡ - 건축면적 / 연면적 : 99.56㎡ / 99.56㎡ - 층수 / 높이 : 지상 1층 / 5.5m - 구조 / 지붕 : 목구조 /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9.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627-2(문화재구역으로부터 4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11 640 1120 730"> <thead> <tr> <th>높이</th> <th>대지면적</th> <th>부지/연면적</th> <th>제외지</th> </tr> </thead> <tbody> <tr> <td>5.4m</td> <td>338㎡</td> <td>303㎡/89.19㎡</td> <td>35㎡(도로편입)</td> </tr> </tbody> </table>	높이	대지면적	부지/연면적	제외지	5.4m	338㎡	303㎡/89.19㎡	35㎡(도로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 2차 현지조사 후 재검토 																
높이	대지면적	부지/연면적	제외지																							
5.4m	338㎡	303㎡/89.19㎡	35㎡(도로편입)																							
10. 강화 외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및 진입로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불은면 오두리 88-4(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0m 이격/1구역) <table border="1" data-bbox="411 819 1120 1088"> <thead> <tr> <th>구분</th> <th>기 허가 사항</th> <th>신규 허가 사항</th> <th>증감</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11,395</td> <td>1,434</td> <td></td> </tr> <tr> <td>건축면적(㎡)</td> <td>89.58</td> <td>161.25</td> <td>+71.67</td> </tr> <tr> <td>건물높이m</td> <td>5.45</td> <td>5.45</td> <td></td> </tr> <tr> <td>진입로 길이m</td> <td>145</td> <td>145</td> <td></td> </tr> <tr> <td>기타</td> <td></td> <td>조경석 쌓기 2m</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 허가 사항	신규 허가 사항	증감	대지면적(㎡)	11,395	1,434		건축면적(㎡)	89.58	161.25	+71.67	건물높이m	5.45	5.45		진입로 길이m	145	145		기타		조경석 쌓기 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류 - 자료보완 후 검토
구분	기 허가 사항	신규 허가 사항	증감																							
대지면적(㎡)	11,395	1,434																								
건축면적(㎡)	89.58	161.25	+71.67																							
건물높이m	5.45	5.45																								
진입로 길이m	145	145																								
기타		조경석 쌓기 2m																								
11. 고양 서오릉 주변 과수원 부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61번지(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4,100㎡ - 과수식재 : 배나무(수고:1m×뿌리둘레3cm) 130주 식재 - 시설정비 : 웅스(높이 : 1.2m) 289m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12. 남양주 순강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 178-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275m 이격/3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632㎡ - 건축면적 / 연면적 : 247.8㎡ / 495.6㎡ - 건축규모 : 1동 (지상2층, 높이 10.9m, 평지붕)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기타시설 : 콘크리트 포장(372㎡), PE이중벽관 설치(240m), 웅스(높이1.2m×7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3. 파주 소령원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7-23(문화재구역으로부터 3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30.0㎡ - 건축면적 : 89.52㎡ - 연면적 : 153.66㎡ - 건축동수 : 1개동(지하1층/지상2층) - 최고높이 : 8.3m - 용벽 : 보강토용벽(H0.5~1.5m/L=22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건 명	내 용	결 과																																
14. 남양주 휘경원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야영장부지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p>○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66 외 3필지 (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2구역,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만 허용))</p> <p>○ 사업내용</p> <table border="1" data-bbox="411 416 1123 920"> <thead> <tr> <th data-bbox="411 416 539 495">구 분</th> <th data-bbox="539 416 743 495">허가사항 ('15. 8)</th> <th data-bbox="743 416 986 495">변경사항(금회)</th> <th data-bbox="986 416 1123 49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11 495 539 544">신청인</td> <td data-bbox="539 495 743 544">□□□</td> <td data-bbox="743 495 986 544">○○○</td> <td data-bbox="986 495 1123 544">-</td> </tr> <tr> <td data-bbox="411 544 539 663">사업목적</td> <td data-bbox="539 544 743 663">근린생활시설 신축</td> <td data-bbox="743 544 986 663">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관광농원(야영지)부지 조성</td> <td data-bbox="986 544 1123 663">-</td> </tr> <tr> <td data-bbox="411 663 539 712">사업면적</td> <td data-bbox="539 663 743 712">969㎡</td> <td data-bbox="743 663 986 712">5,485㎡</td> <td data-bbox="986 663 1123 712">증 4,516㎡</td> </tr> <tr> <td data-bbox="411 712 539 761">건축면적</td> <td data-bbox="539 712 743 761">108㎡</td> <td data-bbox="743 712 986 761">108㎡</td> <td data-bbox="986 712 1123 761">-</td> </tr> <tr> <td data-bbox="411 761 539 810">건축위치</td> <td data-bbox="539 761 743 810">허용기준 2구역</td> <td data-bbox="743 761 986 810">허용기준 1구역</td> <td data-bbox="986 761 1123 810">위치변경</td> </tr> <tr> <td data-bbox="411 810 539 860">건축구조</td> <td data-bbox="539 810 743 860">철골조</td> <td data-bbox="743 810 986 860">철골조</td> <td data-bbox="986 810 1123 860">-</td> </tr> <tr> <td data-bbox="411 860 539 920">건축규모</td> <td data-bbox="539 860 743 920">높이5.98m (1동,1층,평지붕)</td> <td data-bbox="743 860 986 920">높이5.98m(1동,1층, 평지붕)</td> <td data-bbox="986 860 1123 920">-</td> </tr> </tbody> </table>	구 분	허가사항 ('15. 8)	변경사항(금회)	비고	신청인	□□□	○○○	-	사업목적	근린생활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관광농원(야영지)부지 조성	-	사업면적	969㎡	5,485㎡	증 4,516㎡	건축면적	108㎡	108㎡	-	건축위치	허용기준 2구역	허용기준 1구역	위치변경	건축구조	철골조	철골조	-	건축규모	높이5.98m (1동,1층,평지붕)	높이5.98m(1동,1층, 평지붕)	-	<p>○ 조건부가결</p> <p>- 화재·냄새 등을 고려할 때, 문화재 연접지는 농장으로 하고, 그 밖을 야영장으로 조성</p>
구 분	허가사항 ('15. 8)	변경사항(금회)	비고																															
신청인	□□□	○○○	-																															
사업목적	근린생활시설 신축	근린생활시설 신축 및 관광농원(야영지)부지 조성	-																															
사업면적	969㎡	5,485㎡	증 4,516㎡																															
건축면적	108㎡	108㎡	-																															
건축위치	허용기준 2구역	허용기준 1구역	위치변경																															
건축구조	철골조	철골조	-																															
건축규모	높이5.98m (1동,1층,평지붕)	높이5.98m(1동,1층, 평지붕)	-																															
15. 울주 언양읍성 주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신축	<p>○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51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130m 이격/8구역)</p> <p>○ 건축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250.00㎡ - 연면적/건축면적 : 503.55㎡/174.47㎡ - 높이/규모 : 15.0m/ 지상4층, 	<p>○ 부결</p> <p>- 주변 건축물에 비해 규모 과다</p>																																
16.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p>○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399-7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30m 이격)</p> <p>○ 건축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48.00㎡ - 연면적/건축면적 : 97.16㎡/70.40㎡ - 높이/규모 : 7.70m/ 지상2층, 	<p>○ 조건부가결</p> <p>- 시굴조사 실시 필요</p>																																
17. 수원 화성 주변 경찰서 신축	<p>○ 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237-24 외(문화재 구역과 연접/2구역, 4구역)</p> <p>○ 건축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5,773㎡ - 건축면적 / 연면적 : 2,360㎡ / 11,792㎡ - 층수 / 높이 · 본관동 : 지하층 미정, 지상 5층 / 37m(건물 27m + 통신탑 10m) · 민원동 : 지하층 미정, 지상 2층 - 지붕 : 평지붕 	<p>○ 부결</p> <p>-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p>																																

건 명	내 용	결 과																				
18.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 328-3번지 외(문화재구역 으로부터 270m 이격/1구역) ○ 건축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817㎡ - 건축면적 / 연면적 : 428.04㎡ / 728.26㎡ - 층수 / 높이 : 지상 2층 / 7.3m - 규모/구조/지붕 : 6동/철근콘크리트구조/경사지붕 - 변경사항 : 1동 및 1동 진입도로부분을 성토하여 도로 와 부지를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19. 연천 은대리성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30번지(문화재 보호구역과 연접/1구역) ○ 건축개요 <table border="1" data-bbox="411 719 1121 104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1차(2016.7.27.)</th> <th style="width: 25%;">금회신청</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799㎡</td> <td>799㎡</td> <td>변경없음</td> </tr> <tr> <td>건축면적/ 연면적</td> <td>118.08㎡/118.08㎡</td> <td>97.56㎡/97.56㎡</td> <td>20.52㎡ 감소</td> </tr> <tr> <td>층수/높이</td> <td>지상1층/7.01m</td> <td>지상1층/5.60m</td> <td>높이 1.41m 감소</td> </tr> <tr> <td>구조/지붕</td> <td>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td> <td>벽돌구조/경사 지붕</td> <td>구조 변경</td> </tr> </tbody> </table> 	구분	1차(2016.7.27.)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799㎡	799㎡	변경없음	건축면적/ 연면적	118.08㎡/118.08㎡	97.56㎡/97.56㎡	20.52㎡ 감소	층수/높이	지상1층/7.01m	지상1층/5.60m	높이 1.41m 감소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벽돌구조/경사 지붕	구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구분	1차(2016.7.27.)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799㎡	799㎡	변경없음																			
건축면적/ 연면적	118.08㎡/118.08㎡	97.56㎡/97.56㎡	20.52㎡ 감소																			
층수/높이	지상1층/7.01m	지상1층/5.60m	높이 1.41m 감소																			
구조/지붕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벽돌구조/경사 지붕	구조 변경																			
20. 진천 김유신 탄생지와 태실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계리 288(문화재구역으로 부터 15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1,788㎡ - 건축면적 : 77.2㎡ (19.3㎡×4동) - 규 모 : 지상1층(최고높이 3.8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동의 건물 중 높은 곳에 배치한 2동은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1. 고령 주산성 주변 현창비 이전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40-3(문화재구역 으로부터 1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창비 규모 : 가로 2.4m, 세로 2.7m, 높이 2.4m - 성토 : 가로 6m, 세로 2m, 높이 0.5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22.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 요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고령군 성산면 사부리 153, 154번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190m 이격/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data-bbox="411 1597 1121 1926"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25%;">당초 (조건부허가 '16.5.25)</th> <th style="width: 25%;">금회신청</th> <th style="width: 3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건축구조</td> <td>조적구조, 지붕(칼라 아스팔트형글-경사식)</td> <td>좌동</td> <td></td> </tr> <tr> <td>건축규모</td> <td>지상 1층, 2동</td> <td>지상1층, 3동</td> <td>증 1동</td> </tr> <tr> <td>최고높이</td> <td>4.60m, 5.65m</td> <td>5.8m</td> <td>증 0.15m</td> </tr> <tr> <td>연면적 합계</td> <td>211.24㎡</td> <td>148.23㎡</td> <td>감 63.01㎡</td> </tr> </tbody> </table> 	구분	당초 (조건부허가 '16.5.25)	금회신청	비고	건축구조	조적구조, 지붕(칼라 아스팔트형글-경사식)	좌동		건축규모	지상 1층, 2동	지상1층, 3동	증 1동	최고높이	4.60m, 5.65m	5.8m	증 0.15m	연면적 합계	211.24㎡	148.23㎡	감 63.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건부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굴조사 실시 필요
구분	당초 (조건부허가 '16.5.25)	금회신청	비고																			
건축구조	조적구조, 지붕(칼라 아스팔트형글-경사식)	좌동																				
건축규모	지상 1층, 2동	지상1층, 3동	증 1동																			
최고높이	4.60m, 5.65m	5.8m	증 0.15m																			
연면적 합계	211.24㎡	148.23㎡	감 63.01㎡																			

건 명	내 용	결 과																
23.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674번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0m,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0m 이격)/1구역)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416㎡(연면적/건축면적 : 787.92㎡/835.92㎡) - 높이/규모 : 6.3m/ 지상 1층, 8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4.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2159-10(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2구역)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91㎡(연면적/건축면적 : 156.00㎡/103.88㎡) - 높이/규모 : 9.3m/ 지상 2층,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25. 제주 향파두리 항몽 유적 주변 단독주택 단지 조성(허가사항 변경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685번지(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0m 이격, 보호구역으로부터 88m 이격 /1구역) ○ 사업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당초 신청 (‘16.4월)</th> <th>5월 허가 (‘16.5월)</th> <th>금번 신청</th> </tr> </thead> <tbody> <tr> <td>대지면적</td> <td>2,460㎡</td> <td>2,225㎡</td> <td>4,355㎡</td> </tr> <tr> <td>연면적/ 건축면적</td> <td>566.46㎡/ 2,460㎡</td> <td>594.36㎡/ 697.68㎡</td> <td>792.48㎡/ 930.24㎡</td> </tr> <tr> <td>높이/규모</td> <td>7.9m/ 지상2층(6동)</td> <td>5.87m/ 지상1층(6동)</td> <td>5.87m/ 지상1층(8동)</td> </tr> </tbody> </table>	구 분	당초 신청 (‘16.4월)	5월 허가 (‘16.5월)	금번 신청	대지면적	2,460㎡	2,225㎡	4,355㎡	연면적/ 건축면적	566.46㎡/ 2,460㎡	594.36㎡/ 697.68㎡	792.48㎡/ 930.24㎡	높이/규모	7.9m/ 지상2층(6동)	5.87m/ 지상1층(6동)	5.87m/ 지상1층(8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안가결
구 분	당초 신청 (‘16.4월)	5월 허가 (‘16.5월)	금번 신청															
대지면적	2,460㎡	2,225㎡	4,355㎡															
연면적/ 건축면적	566.46㎡/ 2,460㎡	594.36㎡/ 697.68㎡	792.48㎡/ 930.24㎡															
높이/규모	7.9m/ 지상2층(6동)	5.87m/ 지상1층(6동)	5.87m/ 지상1층(8동)															
26. 제주 고산리 유적 주변 단독주택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제주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424-1(문화재구역과 연접/1구역) ○ 건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4,040㎡(연면적/건축면적 : 506.88㎡/357.90㎡) - 높이/규모 : 8.2m/ 지상 2층, 경사지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2.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고양시 소재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주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등 18건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경기도 고양시	○○○	<p><서울~문산간 고속도로 건설(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일원 ○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율대로로의 진출로 폭 4m 확대 (L=190m), 권율대로에서의 진입로 폭 3m 확대(L=55m) ○ 변경사유 : 권율대로에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폭 확대 ○ 허가기간 : 2016.8.22.~2020.12.31. 	허가	'16.08.19
사적 제70호 부안 진서리 요지	전북 부안군	○○○	<p><지하 시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4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95m 이격/1구역) ○ 내용 : 지하해수 조사 시추(2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싱 250mm, 150mm - 시추 깊이 100m 	허가	'16.09.01
사적 제118호 진주성	경남 진주시	○○○	<p><2016 진주 남강 유등축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진주시 남성동 500-8 (진주성 주변)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 : 2016.10.01~10.16(16일간)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행사시간, 행사내용 등은 진주시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도록 함. - 행사 전 과정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함 - 행사 참가자들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대책을 조치한 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6.08.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시 울주군	○○○	<p><언양 서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25번지 일원(문화재구역으로부터 15m 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양 서부도시계획도로(소2-22호) 개설공사 - 1공구 L=115.0m, B=8.0m/2공구 L=119.0m, B=8.0m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굴조사를 선행할 것 * 기허가된 사항으로 기간 미연장으로 사업기간 만료되어 재신청한 건 	조건부 허가	'16.08.22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p><도로확장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및 가스판매소 등 철거 후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579-5 (4구역) ○ 사업내용 :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330.00㎡ - 건축면적/연면적 : 180.39㎡(근린생활시설 133.74㎡/가스판매소 29.47㎡/사무실 17.18㎡) - 건축구조 : 철골조 및 경량판넬/최고 높이(5.34m)/경사지붕 	허가	'16.08.29
사적 제236호 통영 충렬사	경남 통영시	○○○	<p><다가구주택 신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남 통영시 명정동 413-6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8m이격) ○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지면적 : 698.0㎡중 281.0㎡ 조성 - 건축면적/연면적 : 168.60㎡/476.25㎡ - 구조/지붕 :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 층수/높이 : 4층/14.54m ○ 참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4.28 동일 필지 내 1동 기허가 	허가	'16.08.18
사적 제273호 부산 북천동 고분군	부산시 동래구	○○○	<p><지하수(농업용수)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칠산동 48-27 (문화재구역으로부터 10m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개발을 위한 굴착행위 : 심도 200m, 구경 150mm굴착 - 상부보호공 1m, 세로 1m, 높이 1m * 사업해당지는 시굴조사를 실시한 지역으로 시굴조사 실시 미필요 	허가	'16.08.08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	<건물 보수> ○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83(문화재구역) ○ 내용 : 창고 건물 방수 - 터파기 및 퇴메우기 450㎡ - 잔디식재 240㎡ - 외벽방수 : 250㎡	허가	'16.08.30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	<건물 신축> ○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233-110-1(문화재구역으로부터 470m 이격/2구역) ○ 내용 : 건물 신축 2동 - A동 : 건축면적 89.82㎡(연면적 171.72㎡)/건물높이 : 8.2m - B동 : 건축면적 79.10㎡(연면적 151.30㎡)/건물높이 : 8.2m	허가	'16.08.18
사적 제309호 남원 실상사	전북 남원시	○○○	<주택 신축> ○ 위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 198-1(문화재구역으로부터 65m 이격 /1구역) ○ 내용 - 건축면적 65.34㎡ / 건물높이 6m	허가	'16.08.18
사적 제320호 울산경상좌도병영성	울산시 중구	○○○	<단독주택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울산시 중구 서동 154-26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20m이격) ○ 사업내용 - 연면적 : (기존)218.02㎡, (변경)221.82㎡ - 건축면적 : (기존)87.22㎡, (변경)86.44㎡ - 규모 및 높이 : (기존)3층/12m, (변경)3층/10.55m	허가	'16.08.22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교사내 승강기설치> ○ 위치 : 경남 김해시 구산동 199. 구봉초등학교 내(문화재구역으로부터 90m 이격) ○ 내용 - 설치 연면적 : 46.80㎡ - 층수/높이 : 4층/15.86m	허가	'16.08.19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제5회 한가위 김해시민 노래자랑> ○ 위치 : 김해 대성동 시민의 종 광장 ○ 내용 - 행사기간 : 2016.09.15 - 무대(15m*15m*1m), 천막설치 4개소 (6m*3m*2m), 음향, 조명, 발전기 등 ○ 허가조건 - 세부 행사시간, 행사내용 등은 김해시의 지도를 받아 결정하도록 함.	조건부 허가	'16.08.29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65호 남양주 성묘	경기도 남양주시	○○○	<p><숲가꾸기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산53-4(1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면적 : 8,727㎡(0.87ha) - 1ha 현황 본수 : 1,654본 - 1ha 제거 본수 : 724본(43.8%/제거율) 	허가	'16.08.30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경기도 여주시	○○○	<p><돈사 증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399-4 ○ 변경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계획 변경 : (당초) 2동, 2,408.57㎡, (변경) 7동, 3,927.36㎡ ○ 변경사유 : 사업계획 변경 ○ 허가기간 : 2016.8.19.~2017.12.31. 	허가	'16.08.19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제29회 울곡문화제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간 : 2016.10.8.~10.9. - 시설물 : 무대 및 무대장치 1식, 텐트 36동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대책 조치 후 진행 - 유적 및 관리시설 훼손 금지 - 질서 및 청결 유지, 사적 품격 훼손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 허가기간 : 2016.10.1.~2016.10.13. 	조건부 허가	'16.08.31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도 파주시	○○○	<p><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기간 : 2016.9.10. - 시설물 : 무대 및 무대장치 1식, 텐트 23동 ○ 허가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기 사용 금지 - 안전대책 조치 후 진행 - 유적 및 관리시설 훼손 금지 - 질서 및 청결 유지 ○ 허가기간 : 2016.9.8.~2016.9.13. 	조건부 허가	'16.08.3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경기도 양주시	○○○	<p><비닐하우스 및 농막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7-1(문화재구역으로부터 236m 이격)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 5m(폭)*20m(길이)*5.5m(높이) - 농막 : 3m(폭)*6m(길이)*3m(높이) ○ 허가기간 : 2016.8.19.~2017.8.18. 	허가	'16.08.19

다. 의결사항

- 원안집수